세법연구 20-05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 관련 소비세에 대한 연구

2020. 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 무 열 초빙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수 진 공인회계사

허 윤 영 선임연구원

목 차

Ⅰ. 서론 ····· 9

Ⅱ. 우리나라의 보험시장 개요 및 현황 ····· 12
1. 개요 ····· 12
가. 「보험업법」상 보험의 개념 ····· 12
나. 보험의 유형 ····· 13
다. 보험료 ····· 17
라. 보험급여 ····· 19
2. 우리나라 보험시장과 세계 보험시장 현황 ····· 21
가. 우리나라 보험시장 ····· 21
나. 세계 보험시장 ····· 25

Ⅲ. 우리나라의 보험 관련 소비세 과세제도 ····· 29
1. 부가가치세 ····· 29
2.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 30
가. 교육세 ····· 30
나. 인지세 ····· 36

Ⅳ. 주요국의 보험 관련 소비세 과세제도 ····· 38
1. 유럽연합(EU) ····· 38

가. 부가가치세 ····· 38
나.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 43
2. 영국 ····· 50
가. 부가가치세 ····· 50
나.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 54
3. 독일 ····· 62
가. 부가가치세 ····· 62
나.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 65
4. 호주 ····· 72
가. 부가가치세 ····· 72
나.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 91
5. 미국 ····· 102
가. 부가가치세 ····· 102
나.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 104

Ⅴ. 국제비교와 결론 ····· 120
1. 국제비교 ····· 120
가. 부가가치세 ····· 120
나.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 122
다. 보험시장과 보험 관련 소비세 세수 현황 ····· 128
2. 결론 ····· 130

참고문헌 ····· 134

표 목차

〈표 Ⅱ-1〉「보험업법」상 보험업 비교 ····· 16
〈표 Ⅱ-2〉 연도별·보험유형별 보험업 규모 추이 ····· 23
〈표 Ⅱ-3〉 연도별·보험유형별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추이 ····· 24
〈표 Ⅱ-4〉 해외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모 비교(2018년 기준) ····· 25

〈표 Ⅳ-1〉 EU 회원국별 보험 계약 또는 보험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 현황 (2019년 기준) ····· 46
〈표 Ⅳ-2〉 영국 보험세 적용세율 연혁 ····· 58
〈표 Ⅳ-3〉 영국 면세 적용 손해보험과 생명보험(FSMA) ····· 60
〈표 Ⅳ-4〉 독일 보험세와 소방세 적용세율 연혁 ····· 68
〈표 Ⅳ-5〉 보험 유형별 독일 보험세·소방세의 적용세율 및 면세 ····· 69
〈표 Ⅳ-6〉 호주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에 의한 GST 감소조정 ····· 87
〈표 Ⅳ-7〉 호주 연도별 총징수실적 대비 주요 세목 비중 ····· 88
〈표 Ⅳ-8〉 호주 산업별 총징수실적 대비 GST 비중(2017~2018년 기준) ····· 89
〈표 Ⅳ-9〉 호주 금융 및 보험서비스 세부 업종별 GST 신고 현황 (2017~2018년 기준) ····· 90
〈표 Ⅳ-10〉 호주 보험유형별 인지세 과세여부 및 세율(2020년 8월 기준) ····· 93
〈표 Ⅳ-11〉 호주 손해보험 유형별 인지세율 ····· 98
〈표 Ⅳ-12〉 호주 생명보험 유형별 인지세율 ····· 98
〈표 Ⅳ-13〉 호주 연도별 주 및 지방정부 보험 관련 세수 비중 ····· 101

〈표 Ⅳ-14〉 미국 주정부별·유형별 기본 보험세율 ····· 106
〈표 Ⅳ-15〉 미국 주정부별 연금보험 과세 현황 ····· 110
〈표 Ⅳ-16〉 미국 텍사스주의 보험유형별 적용 세율(2020년 기준) ····· 116
〈표 Ⅳ-17〉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의 보험세 비교 ····· 117
〈표 Ⅳ-18〉 미국 주정부 세수실적 대비 보험세 비중 ····· 118
〈표 Ⅳ-19〉 미국 주정부별 세수실적 대비 보험세 비중(2019년 기준) ····· 119

〈표 Ⅴ-1〉 조사국별 보험용역에 대한 VAT·GST·SUT 규정 ····· 122
〈표 Ⅴ-2〉 조사국별 보험 관련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과세 현황
(중앙정부·연방정부) ····· 123
〈표 Ⅴ-3〉 조사국별 보험 관련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과세 현황(주정부) ····· 124
〈표 Ⅴ-4〉 조사국별 부가가치세 외 보험 관련 소비세 면세 대상 현황
(중앙정부·연방정부) ····· 126
〈표 Ⅴ-5〉 조사국별 부가가치세 외 보험 관련 소비세 면세 대상 현황(주정부) ····· 127
〈표 Ⅴ-6〉 조사국별 보험시장 현황(2018년 기준) ····· 129

그림 목차

[그림 Ⅱ-1] 보험의 구성체계 ····· 19
[그림 Ⅱ-2] 세계 보험시장 현황(2018년 기준) ····· 26
[그림 Ⅱ-3] 세계 보험시장의 생명보험 현황(2018년 기준) ····· 27
[그림 Ⅱ-4] 세계 보험시장의 손해보험 현황(2018년 기준) ····· 28

[그림 Ⅲ-1] 전체 국세 세수 대비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비중 ····· 35
[그림 Ⅲ-2] 세원별 교육세 세수 현황 ····· 36

[그림 Ⅳ-1] 영국 보험세 수입 현황 ····· 61
[그림 Ⅳ-2] 전체 세수 대비 영국 보험세 비중 ····· 62
[그림 Ⅳ-3] 독일 보험세와 소방세 수입 현황 ····· 71
[그림 Ⅳ-4] 전체 세수 대비 독일 보험세와 소방세 비중 ····· 72
[그림 Ⅳ-5] 호주 피보험자 유형별 GST 과세체계(원안) ····· 78
[그림 Ⅳ-6] 호주 피보험자 유형별 GST 과세체계(수정안) ····· 81
[그림 Ⅳ-7] 호주 주정부별 보험세수 비중 비교(2018~2019년도 기준) ····· 102

[그림 Ⅴ-8] 조사국별 부가가치세 외 보험 관련 소비세 세수기여도 현황
(2015~2017년) ····· 130

Ⅰ. 서론

□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징세 기술상 어려움을 이유로 금융용역과 함께 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 유럽연합(EU)은 부가가치세가 최초 도입된 1977년부터 금융과 보험용역에 대한 면세를 적용하였는데, 당시 과세표준 결정과 징세 기술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비자 신용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보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대부분 국가는 다른 산업과 보험산업 간의 조세 공평성을 실현하고 조세수입 확보를 위해 소비세 형태의 보험세를 부과하는 현상이 관찰됨

○ 보험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일부 국가(뉴질랜드, 호주, 멕시코, 이스라엘, 인도, 중국)도 등장함

□ 금융회사와 보험회사의 수익금액에 대해 5‰(1천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세는 보험 관련 소비세로 볼 수 있는데, 보험 관련 소비세제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의 세수기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1)]

○ 전체 세수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가 차지하는 평균 세수기여도(2015~2018년)는 0.23%임

○ 국세의 형태로 보험세를 운용하고 있는 유럽 국가의 세수기여도를 살펴보면 독일(1.13%), 프랑스(1.03%), 네덜란드(0.9%), 오스트리아(0.75%), 영국(0.71%), 이탈

1) 우리나라 교육세 및 해외 보험 관련 소비세의 세수기여도는 OECD Revenue Statistic에서 제공하는 조세수입 정보를 이용함(OECD Revenue Statistic, “Comparative table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 검색일자: 2020. 10. 12.)

리아(0.56%) 순임

○ 지방세의 형태로 보험세를 운용하는 미국과 호주는 각각 0.47%, 1.36%의 세수기여도를 보임

□ 현재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2]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보험 관련 소비세의 세수기여도가 낮은 것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세(1977년)나 교육세(1982년)의 도입 당시보다 우리나라 경제와 보험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함에 따라 보험용역에 대한 세수기여도 수준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보험시장 성숙도가 높은 미국, 영국, 독일과 보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호주를 조사국으로 선정하여 보험 관련 소비세 제도를 문헌조사의 방법으로 살펴봄[3]

○ 본 연구는 보험과 관련된 주요 소비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보험산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제도와 보험(업) 관련 준조세는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본 보고서는 제Ⅰ장의 서론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Ⅱ장은 우리나라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보험에 대한 일반 사항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보험시장과 세계 보험시장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봄

○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개관과 함께 보험 관련 소비세제로 볼 수 있는 교육세와 인지세를 조사함

○ 제Ⅳ장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에 대한 유럽연합(EU) 규정과 영국, 독일, 호주, 미국의 소비세제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보험세를 중심으로 과

---

2) 보험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총보험료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88개국 중에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다음으로 7위를 차지함.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는 각각 1.2%와 3,465달러로 88개국 중에서 각각 5위와 17위를 차지함. 상세 내용은 본문 제Ⅱ장의 2절을 참조할 것(Swiss Re Institute, 2019, pp. 36~43.)

3) 미국, 영국, 독일의 전체 보험시장 규모는 2018년 총보험료 기준으로 88개국 각각 1위, 4위, 6위를 차지하고 호주는 13위를 차지함(Swiss Re Institute, 2019, pp. 36~41.)

세요건과 현황을 조사함

- 호주와 미국의 경우 보험 관련 세제가 연방정부 단계가 아닌 주정부 단계에서 부과되므로 일부 주정부의 세제를 중심으로 조사함

○ 제Ⅴ장은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및 조사국의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보험 관련 소비세제를 국제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Ⅱ. 우리나라의 보험시장 개요 및 현황

1. 개요

가. 「보험업법」상 보험의 개념

□ 보험은 손실위험을 보험회사에게 이전(transfer)함으로써 미래의 재정적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경제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음[4)]

○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상품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규정함[5)6)]

□ 보험계약의 체결로 인해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당사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있음[7)]

○ 보험회사(the insurer)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보험 체결로 인하여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됨

- 여기서 보험업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

---

4) Ron Shanovich, *Taxation of Insurance Companies*, Wisconsin Legislative Fiscal Bureau 2003, p. 1.
5)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6) 「상법」 제638조에서는 보험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규정함
7) 이상엽·박수진·이은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 13.

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음[8)]

- 보험업이 영위하는 업무는 보험계약 체결 중개·대리업무, 자산운용업무, 보험료수수 및 지급업무, 보험계리·손해사정·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이 포함됨

○ 보험계약자(policyholder)는 자기 명의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음

○ 피보험자(the insured)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로 사망, 장해 또는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자를 말함

○ 보험수익자(beneficiary)는 보험기간 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약정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를 말함

나. 보험의 유형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9)]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은 보험회사가 다루는 보험상품에 따라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됨[10)11)]

○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하지만 제3보험은 그러하지 않음[12)]

□ 생명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임[13)]

---

8) 「보험업법」 제2조 제2호
9)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제2호
10)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11) 「상법」에서는 보험을 손해보험(화재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과 인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3보험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음
12) 「보험업법」 제10조
13)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 생명보험상품으로는 크게 생명보험계약과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이 있음[14]

- 주로 전자는 사람의 생존 또는 생존을 보험사고의 대상으로 하고, 후자는 사람의 생존 또는 퇴직을 보험사고 대상으로 함

○ 그리고 주계약(기본보장계약)의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다시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15]

-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 놓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과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으로 나뉨
-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했을 때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연금보험이나 교육보험이 그에 해당함
- 생사혼합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했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과 만기까지 생존했을 때에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을 혼합한 보험임

□ 손해보험상품은 재산에 대한 손실위험 또는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질병·상해 및 간병을 제외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임[16]

○ 손해보험상품은 보장되는 사고에 따라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이 있음[17]

- 화재보험: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 해상보험: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

14)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15) 생명보험협회, 『2020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생명보험협회, 2019, pp. 222~223.
16)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나목
17)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제2호

-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
-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
-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 기술보험: 기계설비 및 장치, 전자기기, 조립공사, 건설공사 등 이와 유사한 목적물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 권리보험: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 도난보험: 도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 유리보험: 유리파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 동물보험: 동물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 원자력보험: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 비용보험: 상금, 상품, 소송비용, 기타비용을 발생시키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 날씨보험: 날씨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 그리고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 등 기타 급여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보험자에 전가하는 보험인 재보험이 있음

□ 제3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임[18)]

○ 제3보험은 생명보험의 정책보상적 특성과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음[19)]

- 질병보장상품의 경우 사람을 보험대상으로 하므로 생명보험으로 볼 수 있으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보장, 각종 질병치료비의 실손보상 등으로 인해 손

18)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다목
19) 오병국·김동겸·이경아·왕양비, 『포커스·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2』, 보험연구원, 2012, p. 281.

해보험으로도 볼 수 있음

○ 제3보험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있음[20)21)]

-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따른 사망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으로, 일반 상해보험, 재해보험 등이 있음
- 질병보험은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으로, 암보험과 건강보험, 치아보험 등의 상품이 있음[22)]
- 간병보험은 치매 또는 일상생활장해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으로 장기간병보험, 치매보험 등이 있음

〈표 Ⅱ-1〉 보험업법상 보험업 비교

구분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	손해보험업
취급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보험 대상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	재산상의 손해
보험종목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포함)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유리·동물·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
보험금 지급방식	정액 보상	정액 보상 또는 실손 보상	실손 보상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	보험사고의 대상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장기	단기 또는 장기	일반적으로 단기

자료: 생명보험협회, 2019, p. 250.

20)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제2호
21) 생명보험협회, 2019, p. 250.
22)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함

2) 보험가입 목적에 따른 분류

□ 보험계약은 가입목적에 따라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23)]

○ 보장성보험이란 기준연령 요건[24)]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함

-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보험이 있음

○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함

- 연금보험, 교육보험, 연금저축보험이 대표적인 보험상품임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의 보험계약을 보장성보험으로 정의함[25)]

다. 보험료

□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주요 수익이고, 보험계약자에게는 위험보장에 대한 대가로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계약과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음[26)]

○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공평한 위험분담을 위해 대수의 법칙(principle of large numbers)[27)]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생명표와 수지상등의 원칙[28)]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됨

---

23)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24) 전기납 및 월납 조건으로 남자가 만 40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말함

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26) 이상엽·박수진·이은별, 2015, p. 24; p. 28.

27) 개개인의 우연한 사고의 발생가능성이나 발생시기 등은 불확실하지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관찰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의 특정사고의 발생률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 함(장연호, 「현행 보험권 예금보험료 산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월간손해보험』, 1월호, 손해보험협회, 2019, p. 64 재인용)

28) 대수의 법칙에 따라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라 지급

○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의해 산출된 보험사고의 발생빈도와 보험사고 한 건당 평균지급액을 기초로 산출하거나 보험금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예정손해율, 예정사업비율, 이익률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출함

□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수취하는 총보험료(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됨[29)]

○ 순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등과 같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예정위험률[30)]과 예정이율[31)] 등 다양한 가격요소를 반영하여 산출된 보험료임[32)]

-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생존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저축보험료로 구성됨

○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과 적정 이윤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보험료로, 예정사업비율에 기초함

□ 일반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수취하는 총보험료(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에 부가보험료를 반영하여 산출되며,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어 있음[33)]

○ 순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며, 순보험요율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음

○ 부가보험료는 영업보험료 중에서 사업경비 등에 충당되는 부분으로서, 예정사업

하는 총보험금이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되는 것으로, 이를 수지상등의 원칙이라 함

29) 보험료는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이외에도 계약유지율, 판매량, 투자수익률 등 다양한 가격요소를 반영하여 산출되며, 이를 현금흐름방식이라 함

30) 예정위험률이란 사망 혹은 생존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사용되는 생명표의 사망률을 말함

31) 예정이율이란 비교적 장기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고려하여야 하며,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가입초기에 예정이율을 결정함

32) 생명보험협회, 2019, p. 39.

33)「보험업감독규정」제7-77조

[그림 Ⅱ-1] 보험의 구성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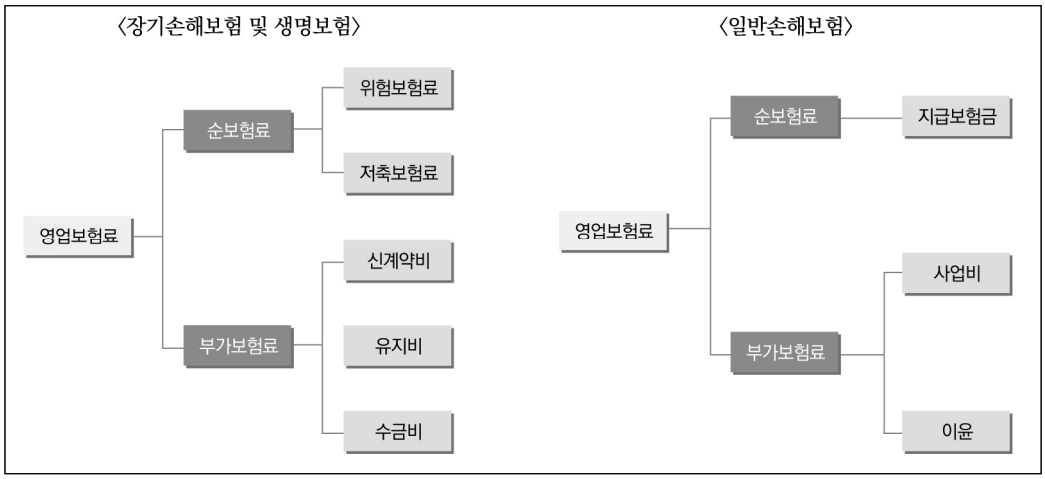

자료: 오병국·김동겸·이경아·왕양비, 2013, p. 252.

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성된 부가보험요율에 의하여 산출됨

라. 보험급여[34]

□ 보험사건의 발생이나 보험계약의 해지 등을 원인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benefits), 환급금(surrender value), 배당금을 보험계약자(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함

□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으로 구분됨[35]

○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 사망, 장해, 퇴직, 생존 시에 지급하는 금액임[36]

- 사망의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을 사망보험금(death benefit)이라고 함
-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만큼의 사망위험만을 부담

34) 이 부분은 이상엽·박수진·이은별, 2015, pp. 28~29을 요약·정리하여 반영함
35)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
36) 김두철·서병남, 『생명보험 LIFE INSURANCE』, 형설출판사, 2015, p. 394.

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부분을 위험보험금이라고 함

○ 환급금은 보험계약의 해지, 효력 상실에 대한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금액으로 해약환급금(surrender value)이라고도 함

- 해약환급금은 보험회사 내부에서 적립한 보험금적립금(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 해약 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함

○ 배당금은 금리차보장금, 위험률차배당금, 이차배당금 등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임

□ 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원수보험금과 보험환급금이 있음

○ 원수보험금은 주로 원보험계약의 보험사고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에 해당함

○ 보험환급금은 만기환급금, 개인연금지급금, 계약자배당금, 장기해지환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37]

- 만기환급금은 저축성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도 또는 만료 시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고, 장기저축성보험계약의 중도 해지 시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장기해지환급금이 있음
- 개인연금지급금은 개인연금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임
- 계약자배당금은 장기저축성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임

□ 한편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금액을 책임준비금 등으로 계상하여야 함[38]

○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의 금액

---

37)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 조석희, 『국제회계기준(IFRS) 하에서의 보험회계』, 신영사, 2015, p. 249.

38)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2. 우리나라 보험시장과 세계 보험시장 현황

가. 우리나라 보험시장

□ 보험업종별, 총자산 규모별, 수입보험료 규모별로 구분하여 보험시장의 성장성과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Ⅱ-2〉와 같음

□ 우선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총자산은 2019년 기준 약 1,238.9조원으로 2012년 기준 약 726.3조에서 70.6% 증가하였고, 수입보험료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212.7조원으로 2012년의 약 170.6조에서 24.7% 증가함

○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총자산 규모의 연평균성장률은 7.9%로 나타나며, 수입보험료는 3.2%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생명보험업의 경우 총자산 규모는 2012년 약 569.8조원에서 2019년 약 918.2조원으로 61.1% 증가하였고, 수입보험료 규모는 2012년 약 107.1조에서 2019년 약 117.3조원으로 9.5% 증가함

○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생명보험업의 총자산 규모는 연평균성장률 7.1%로 나

타나며, 수입보험료는 1.3%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손해보험업에서의 총자산 규모는 2012년 약 156.4조에서 2019년 약 320.7조원으로 105% 증가하고, 수입보험료 규모는 2012년 약 63.4조원에서 2019년 약 95.5조원으로 50.5% 증가함

○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손해보험업의 총자산 규모는 연평균성장률 10.8%로 나타나며, 수입보험료는 6.0%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손해보험업의 총자산과 수입보험료 규모의 연평균성장률은 생명보험업에 비해 각각 3.7%p, 4.7%p로 높게 나타나 외형적으로 더 크게 성장한 것으로 관찰됨

□ 이와 같이 보험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저성장·저금리·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그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음

○ 특히 생명보험업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2016년 이후로 감소하다가 2019년 전년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업의 보험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총자산 규모는 약 918.2조원으로 전체 보험시장에서 7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수입보험료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17.3조원으로 전체 보험시장에서 55.1%의 비중을 차지함

○ 총자산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569.8조원, 78.5%에서 4.4%p 감소하고, 수입보험료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107.1조원, 62.8%에서 7.7%p 감소함

□ 손해보험업의 보험시장 점유율은 2019년 총자산 규모가 약 320.7조원으로 전체 보험시장에서 2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수입보험료 규모는 약 95.5조원으로 44.9%의 비중을 차지함

○ 총자산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156.5조원, 21.5%에서 4.4%p 증가하고, 수입보험료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약 63.4조원 37.2%의 비중에서 7.7%p 증가함

□ 전체 보험시장에서 손해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Ⅱ-2〉 연도별·보험유형별 보험업 규모 추이

(단위: 십억원, %)

연도	총자산			수입보험료		
	생명보험	손해보험	총합계	생명보험	손해보험	총합계
2012	569,837	156,461	726,298	107,127	63,455	170,582
	(78.5)	(21.5)	(100.0)	(62.8)	(37.2)	(100.0)
2013	597,480	170,554	768,034	108,559	65,690	174,249
	(77.8)	(22.2)	(100.0)	(62.3)	(37.7)	(100.0)
2014	662,075	200,305	862,380	110,575	68,909	179,484
	(76.8)	(23.2)	(100.0)	(61.6)	(38.4)	(100.0)
2015	724,901	226,059	950,960	117,214	72,354	189,568
	(76.2)	(23.8)	(100.0)	(61.8)	(38.2)	(100.0)
2016	782,149	252,003	1,034,152	119,811	75,476	195,287
	(75.6)	(24.4)	(100.0)	(61.4)	(38.6)	(100.0)
2017	832,827	277,205	1,110,032	113,974	88,335	202,309
	(75.0)	(25.0)	(100.0)	(56.3)	(43.7)	(100.0)
2018	857,198	298,041	1,155,239	110,843	91,066	201,909
	(74.2)	(25.8)	(100.0)	(54.9)	(45.1)	(100.0)
2019	918,166	320,751	1,238,917	117,262	95,498	212,760
	(74.1)	(25.9)	(100.0)	(55.1)	(44.9)	(100.0)
연평균 증가율	7.1	10.8	7.9	1.3	6.0	3.2

주: 1. 생명보험은 수입보험료, 손해보험은 2012~2016년은 보유보험료, 2017년 이후로는 원수보험료임
2. ( ) 안은 비중임
3. 각 연도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중 가장 최근의 수치로 업데이트함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보도자료, 2014~2019, 검색일자: 2020. 8. 26.

□ 보험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보험침투도[39]는 2019

39)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는 명목 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로 산출되며, 국가경제에서 보험시장이 차지하는 정도를 의미함

년 11.1%로 2012년의 11.8%와 대비하여 0.7p% 감소함

○ 생명보험의 보험침투도는 2012년 7.4%에서 2019년 6.1%로 1.3%p가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은 2012년 4.4%에서 2019년 5.0%로 0.6%p 증가함

□ 한편 국민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지표인 보험밀도[40]는 2019년 기준 약 412만원으로 2012년의 약 340만원과 대비하여 21.1%의 증가율을 보임

○ 생명보험의 보험밀도는 2012년 약 213만원에서 2019년 약 227만원으로 6.3% 증가하고, 손해보험은 2012년 약 126만원에서 2019년 약 185만원으로 46.1% 증가함

〈표 Ⅱ-3〉 연도별·보험유형별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추이

(단위: %, 천원)

연도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2012	7.4	4.4	11.8	2,134	1,264	3,398
2013	7.2	4.4	11.6	2,153	1,303	3,455
2014	7.1	4.4	11.5	2,179	1,358	3,537
2015	7.1	4.4	11.4	2,298	1,418	3,716
2016	6.9	4.3	11.2	2,339	1,474	3,813
2017	6.2	4.8	11.0	2,219	1,720	3,939
2018	5.8	4.8	10.6	2,148	1,765	3,912
2019	6.1	5.0	11.1	2,268	1,847	4,115

주: 1.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 GDP, 총인구수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생명보험은 수입보험료, 손해보험은 2012~2016년은 보유보험료, 2017년 이후로는 원수보험료임
3. 보험침투도(=수입(원수)보험료/명목GDP), 보험밀도(=수입(원수)보험료/총인구수)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보도자료, 2014~2019, 검색일자: 2020. 8. 2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내총생산(명목, 원화표시)」, https://ecos.bok.or.kr/, 검색일자: 2020. 8. 13.; e-나라지표, 「총인구, 인구성장률」,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09, 검색일자: 2020. 8. 13.

40)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수입보험료를 총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국민 1인당 보험료를 의미함

나. 세계 보험시장

□ 2018년 전체 총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보험시장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28.4%), 중국(11.1%), 일본(8.5%)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47.7%에 이르고 영국(6.5%), 프랑스(5.0%), 독일(4.7%), 우리나라(3.5%)가 세 국가의 뒤를 이음(〈표 Ⅱ-4〉 참조)

○ 생명보험의 경우 미국(21.1%), 중국(11.1%), 일본(11.9%)의 순이며,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미국(37.1%), 중국(11.1%), 독일(6.1%)의 순으로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2018년 전체 총보험료 기준 약 1,790억 미국달러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보험시장 점유율은 3.5%임

〈표 Ⅱ-4〉 해외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모 비교(2018년 기준)

(단위: 백만달러, %)

국가	순위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총보험료	시장점유율	총보험료	시장점유율	총보험료	시장점유율
미국	1	1,469,375	28.4	593,391	21.1	875,984	37.1
중국	2	574,877	11.1	313,365	11.1	261,512	11.1
일본	3	440,648	8.5	334,243	11.9	106,405	4.5
영국	4	336,510	6.5	235,501	8.4	101,009	4.3
프랑스	5	257,963	5.0	165,075	5.9	92,888	3.9
독일	6	241,485	4.7	96,439	3.4	145,046	6.1
대한민국	**7**	**179,024**	**3.5**	**98,072**	**3.5**	**80,951**	**3.4**
이탈리아	8	170,273	3.3	125,341	4.5	44,933	1.9
캐나다	9	127,903	2.5	54,070	1.9	73,833	3.1
대만	10	121,908	2.4	102,044	3.6	19,864	0.8
인도	11	99,838	1.9	73,735	2.6	26,102	1.1
네덜란드	12	84,348	1.6	15,743	0.6	68,605	2.9
호주	13	79,098	1.5	30,115	1.1	48,983	2.1
스페인	14	74,062	1.4	34,118	1.2	39,945	1.7
아일랜드	15	73,162	1.4	63,424	2.3	9,738	0.4
브라질	16	72,840	1.4	39,251	1.4	33,589	1.4

〈표 Ⅱ-4〉의 계속

국가	순위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총보험료	시장점유율	총보험료	시장점유율	총보험료	시장점유율
홍콩	17	65,912	1.3	61,013	2.2	4,899	0.2
스위스	18	59,384	1.1	30,444	1.1	28,940	1.2
남아프리카공화국	19	48,269	0.9	38,475	1.4	9,794	0.4
벨기에	20	37,253	0.7	18,712	0.7	18,540	0.8

주: 1. 8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순위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한 전체 보험료 기준임
자료: Swiss Re Institute, 2019, pp. 36~41.

□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모두 고려한 세계 보험시장의 보험침투도는 대만(20.9%), 홍콩(18.2%), 케이맨제도(17.5%)의 순으로 높고, 보험밀도는 케이맨제도(11,642달러), 홍콩(8,863달러), 스위스(6,934달러)의 순으로 높음([그림 Ⅱ-2] 참조)

○ 우리나라의 보험침투도는 11.2%로 88개국 중 5위를 차지하고, 보험밀도는 3,465달러로 17위를 차지함

[그림 Ⅱ-2] 세계 보험시장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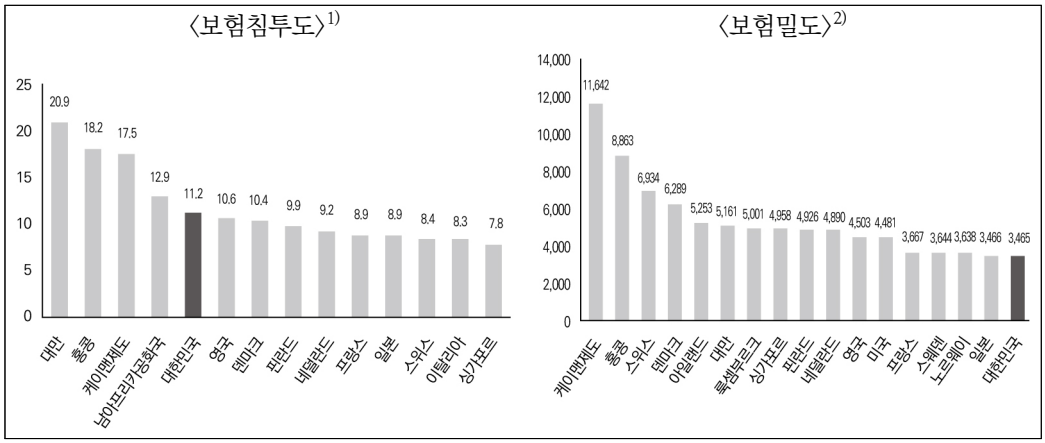

주: 1) 보험침투도(=보험료/명목GDP)
2) 보험밀도(=보험료/총인구수)
자료: Swiss Re Institute, 2019, pp. 42~43.

□ 세계 보험시장 중에서 생명보험업의 보험침투도는 대만(17.5%), 홍콩(16.8%), 남아프리카공화국(10.3%)의 순이며, 보험밀도는 홍콩(8,204달러), 덴마크(4,590달러), 아일랜드(4,356달러)의 순임([그림 Ⅱ-3] 참조)

○ 우리나라의 보험침투도는 6.1%로 88개국 중에서 10위를 차지하고, 보험밀도는 1,898달러로 15위를 차지함

[그림 Ⅱ-3] 세계 보험시장의 생명보험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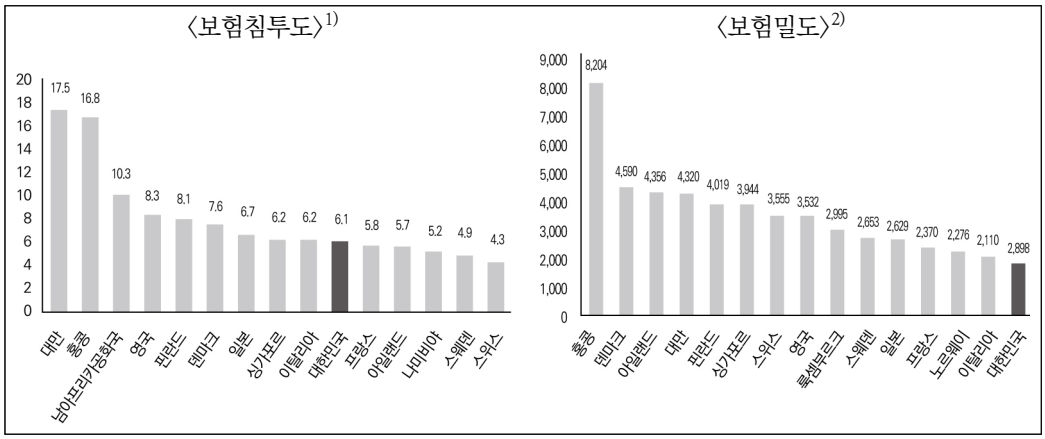

주: 1) 보험침투도(=보험료/명목GDP)
2) 보험밀도(=보험료/총인구수)

자료: Swiss Re Institute, 2019, pp. 42~43.

□ 세계 보험시장 중에서 손해보험업의 보험침투도는 케이맨제도(16.8%), 네덜란드(7.5%), 우리나라(5.1%)의 순이며, 보험밀도는 케이맨제도(11,179달러), 네덜란드(3,977달러), 스위스(3,379달러)의 순임([그림 Ⅱ-4] 참조)

○ 우리나라 손해보험의 보험침투도는 5.1%로, 2018년 기준 조사대상국 88개국 중 3위이며, 보험밀도는 1,567달러로 11위를 차지함

[그림 Ⅱ-4] 세계 보험시장의 손해보험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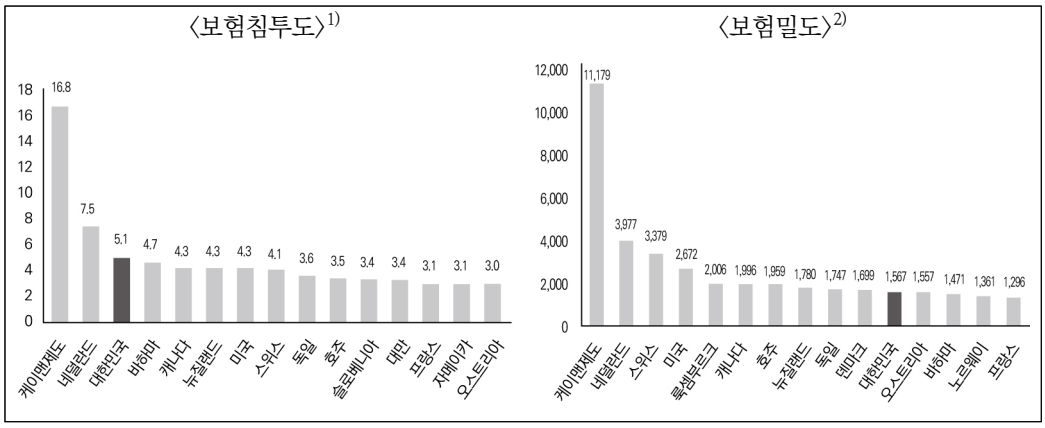

주: 1) 보험침투도(=보험료/명목GDP)
2) 보험밀도(=보험료/총인구수)

자료: Swiss Re Institute, 2019, pp. 42~43.

Ⅲ. 우리나라의 보험 관련 소비세 과세제도

1. 부가가치세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1976년 12월 22일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어 1977년부터 시행됨

○ 초기에는 13%의 기본세율과 함께 3%p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988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기본세율을 10%로 하향 조정하고 탄력세율제도는 폐지됨

○ 현행 부가가치세는 10%의 단일세율로 운영됨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과됨[41)]

□ 부가가치세가 최초 시행될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험용역은 금융용역과 함께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됨[42)]

○ 이 외에도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부가가치의 생산요소, 사회·문화·공익목적, 그리고 조세행정의 측면이나 사회 정책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특정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함

---

41)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조

42)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함임. 금융과 보험용역에 대한 면세는 생산요소를 구성하는 측면 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개별적인 금융거래에 의한 부가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임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보험용역은 다음과 같음[43]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44]

○ 보험업이 영위하는 업무

- 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 없는 사용인(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이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험모집용역[45]
-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보험료의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46]
-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보험의 보상금 결정에 관련된 업무[47]

○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용역 계약부터 면세 적용을 배제함[48]

2.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가. 교육세[49]

□ 국세인 교육세는 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목적세로 1982년에 한시적으로 신설되었다가, 1991년에 영구세로 전환됨

○ 최초 도입 당시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기한을 두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

4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4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은 생명보험(생명보험, 연금보험), 손해보험(화재·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제3보험업(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으로 분류됨

45)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40-2【금융·보험용역 과세 또는 면세 판정 사례】

46)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40-1【금융·보험용역의 면세 범위】③항

47)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40-1【금융·보험용역의 면세 범위】⑥항

48) 보험계리용역은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보고용역은 2001년 세법 개정 시 보험계리용역과 함께 면세 대상으로 포함되었다가 2015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개정 시 과세대상 용역으로 전환됨

49)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를 소득에 대한 과세로 보는 의견(안종석·박정수, 『교육재정의 구조와 재원확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6)이 있음

기한의 연장 끝에 1991년부터 영구세로 전환됨[50]

□ 현행 교육세 과세표준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으로 구성됨[51]

○ 1982년 도입 당시 교육세 과세표준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 외에도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항목인 이자·배당소득,[52] 「주세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담배전매법」에 의한 제조담배의 매도가격을 대상으로 함[53]

○ 현행 교육세 세율은 과세표준별로 달리 적용됨[54]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5(0.5%)
- 개별소비세액에 대해서는 30% 또는 15%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대해서는 15%
- 주세액에 대해서는 10% 또는 30%

□ 이하에서는 금융업·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교육세를 중심으로 과세요건과 세수 현황을 살펴봄

1) 과세요건

□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금융·보험업자)는 금융업·보험업의 수익금액에 대해 5‰(1천분의 5)의 세율로 교육세를 납부해야 함[55]

---

50) 안종석·박정수, 1996, p. 85.
51)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52) 1990년부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53) 입법 당시 정부 최종안에는 교육세 과세표준에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과세표준 항목으로 포함된 재산세 대신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이 포함되었다는 보고가 있음(이만우·전형준·박기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7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06, p. 45.)
54)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55) 「교육세법」 제3조; 제5조 제1항, 이 외에도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

□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보험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외국보험사임[56][57]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를 의미함[58]

○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사는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는 제외함[59]

□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등 금액을 의미함[60]

○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임

○ 보험료는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 후 금액으로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61]

- ① 보험료·수재보험료·전기 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62]의 합계액

- ② 당기 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해약환급금·출재보험료의 합

무자, 주세 납세의무자에게 세율과 과세표준을 달리하여 교육세가 부과됨

56)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

57)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업자는 다음과 같음(「교육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 6호)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

58) 보험업법 제2조 제6호; 제4조

59)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

60)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61)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62)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계액으로 당기 중에 다음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 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함

㉠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 기타[63]

- 수입할인료,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신탁보수, 대여료, 파생상품 등 순손익과 외환 매매손익,[64] 수입임대료, 고정자산처분익,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은 다음과 같음[65]

○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포함한 다음 금액은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부채의 평가익
-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 완성익

---

6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64)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동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동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과 외환(파생상품 등은 제외한다) 매매손익

65)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출재보험 수수료·출재이익 수수료·이재조사비

□ 한편 금융·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비과세함[66]

□ 교육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4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함[67]
○ 다른 교육세와 달리 금융·보험업자에게는 교육세 중간예납 의무가 부여됨
- 금융·보험업자는 당해 과세 연도 기간 동안 세 차례의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함[68]
- 중간예납기간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 후 최초 3개월(제1차 중간예납기간), 제1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제2차 중간예납기간), 제2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제3차 중간예납기간)로 구분됨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2) 세수 현황

□ 2018년 현재 전체 국세 세수에서 교육세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74%, 0.37%이며, 5개년 평균 각각 2.02%, 0.41%의 비중을 보임

---

66) 「교육세법」 제4조
67) 「교육세법」 제9조 제1항
68) 「교육세법」 제8조의2 제1항

[그림 Ⅲ-1] 전체 국세 세수 대비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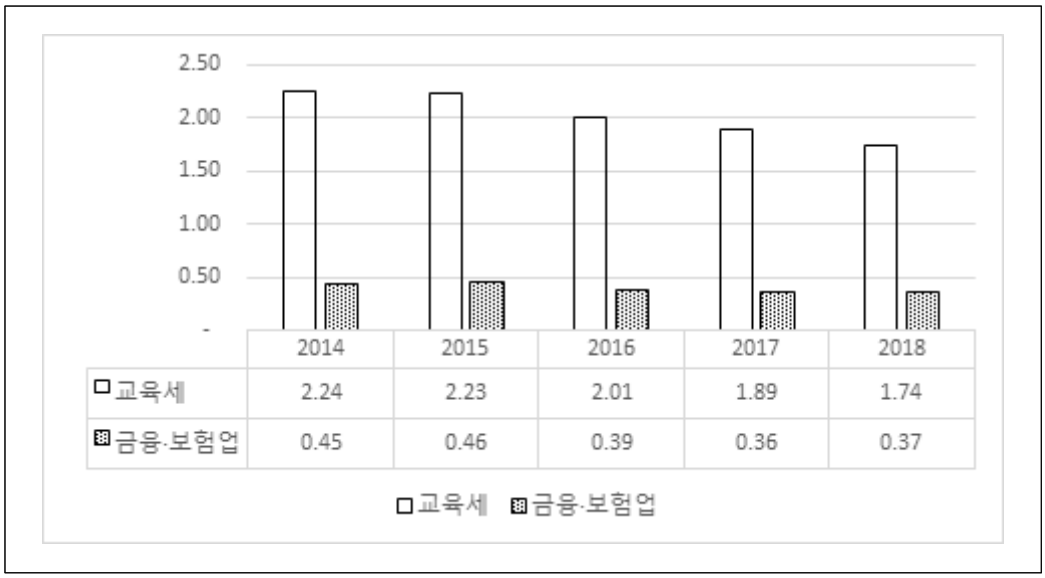

자료: 국세통계, 「교육세의 세원별 현황」, https://stats.nts.go.kr/national/major_detail.asp?year=2019&catecode=A11008#, 검색일자: 2020. 8. 24.

□ 교육세 세원별 세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교육세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가 교육세 세수총액에서 각각 45.18%, 21.41%의 비중을 차지함[69]

○ 2018년 현재 교육세 세수총액 5조 975억 7,300만원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교육세는 2조 3,029억 6,100만원,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는 1조 915억 2,500만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그 다음으로 주세에 대한 교육세 7,878억 500만원, 개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 5,451억 5,400만원으로 교육세 세수총액에서 각각 15.45%, 10.59%를 차지함

○ 최근 5개년(2014~2018년) 동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가 교육세 세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97%(2014년), 20.61%(2015

69) 국세통계 11-11.「교육세의 세원별 현황」(각 연도), https://stats.nts.go.kr/national/major_detail.asp?year=2019&catecode=A11008#, 검색일자: 2020. 8. 24.

[그림 Ⅲ-2] 세원별 교육세 세수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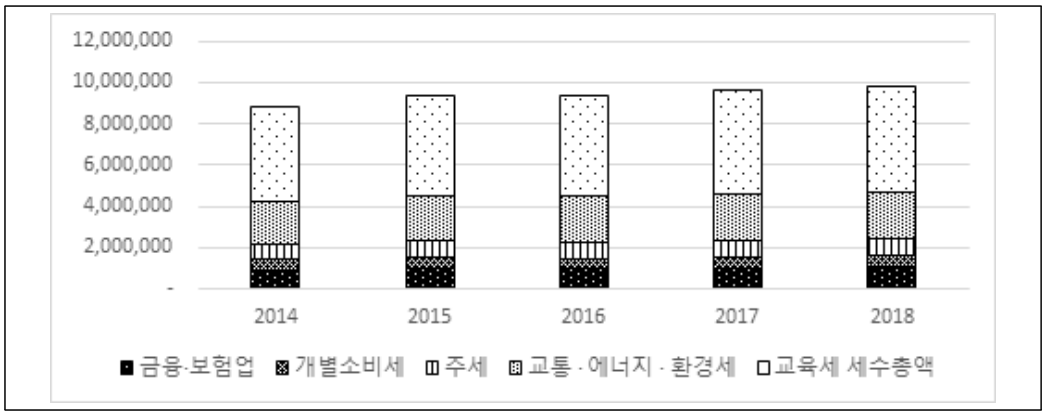

자료: 국세통계, 「교육세의 세원별 현황」, https://stats.nts.go.kr/national/major_detail.asp?year=2019&catecode=A11008#, 검색일자: 2020. 8. 24.

년), 19.49%(2016년), 19.15%(2017년), 21.41%(2018년)로 평균 약 20.13%임

나. 인지세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국내에서 다음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70]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71]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 이하인 경우: 15만원
-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다만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

70) 「인지세법」 제1조 재1항; 동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12호 다목; 동법 제2조의2 제12호

71) 금전소비대차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지 않으며(「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계약당사자와의 금액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문서에 포함되지 않음(「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지세가 비과세됨[72]

○ 보증보험증권: 200원/1통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73]

72)「인지세법」 제6조 제8호
73)「인지세법」 제1조 제2항

Ⅳ. 주요국의 보험 관련 소비세 과세제도

1. 유럽연합(EU)

가. 부가가치세

□ 현행 EU 부가가치세는 EU Council Directive 2006/112/EC[74](이하 2006 VAT 지침)에서 규정하는데,[75] 이 지침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한 일반과세로서 EU 내 생산되거나 공급되는 대부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적용됨(2006 VAT 지침 제1조(2항))

□ 부가가치세 면세는 대부분 금융과 보험용역을 포함하여 공익활동, 부동산(immovable property), 복권·도박·내기(gambling) 등이 관여된 거래에 적용됨(2006 VAT 지침 제135조)[76]

---

74) 본래 명칭은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OJ L 347, 11. 12. 2006)'이며, 복잡했던 EU 부가가치세 규정을 단일 규정으로 재정비하여 현행 EU VAT 규정으로서 효력을 가짐.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반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6년 11월 28일에 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Eur-Lex, "Document L:2006:347:TOC,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OJ%3AL%3A2006%3A347%3ATOC, 검색일자: 2020. 8. 11.)

75) 2006 VAT 지침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례에 따름

76) 본문에서는 보험용역을 중심으로 한 면세규정을 살펴보고 있으며, 기타 면세 범위에 대한 설명은 유럽위원회(EC) 웹사이트(EC, "Exemptions without the right to deduct,"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eu-vat-rules-topic/exemptions/exemptions-without-right-deduct, 검색일자: 2020. 8. 11.)를 참고할 것

□ 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은 EU의 Sixth Council Directive 77/388/EEC(제6차 VAT 지침)[77]에 의해 적용되었고, 현행 2006 VAT 지침이 그 내용을 승계함

○ 1977년 5월 17일자로 제정된 제6차 VAT 지침 제13조 (B)항에서 보험 및 재보험 거래에 대한 면세를 규정함

○ 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제 가능한 매입부가가치세의 결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금융과 보험용역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밝힘[78]

1) 금융과 보험용역에 대한 2006 VAT 면세 규정

□ 2006 VAT 지침 제135조 (1)항 (a)호부터 (g)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분 금융과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 보험과 재보험용역(제135조 (1)항 (a)호)

- 보험 브로커와 보험 에이전트에 의해 수행되는 관련 용역을 포함함

○ 신용의 공여(granting)와 인수·매입(negotiation)(제135조 (1)항 (b)호)

- 공여자에 의한 신용의 관리를 포함함

○ 신용보증(guarantees)과 자금에 대한 기타 담보(security)(제135조 (1)항 (c)호)

- 신용을 보증하는 자에 의한 신용보증의 관리를 포함함

○ 예치금과 당좌예금, 지급과 이체, 부채, 수표와 기타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s)과 관련된 무현금 거래(제135조 (1)항 (d)호)

- 위 예치금 등의 인수·매입과 관련된 거래는 포함함
- 다만 채권 추심활동은 제외함

---

77) Sixth Council Directive 77/388/EEC of 17 May 1977 on the harmoniz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turnover taxes – Common system of value-added tax: uniform basis of assessment, OJ L 145, 13 June 1977, pp. 1~40.

78) EC, "Update on the state of play of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and their VAT treatment," Group on the future of VAT, 2019. 4. 5., 원문은 'to alleviate the difficulties connected with determining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VAT deductible and to avoid an increase in the cost of consumer credit'임

○ 통화, 법정통화로 사용되는 은행권, 법정통화로서 사용되는 주화와 관련된 현금 거래(제135조 (1)항 (e)호)
- 통화, 은행권, 주화 등의 인수·매입 관련 거래는 포함함
- 다만 법정통화로 사용되지 않는 금, 은, 기타 주화, 은행권은 제외함

○ 주식, 회사나 조합 내 지분, 부채 및 기타 증권과 관련된 거래(제135조 (1)항 (f)호)
- 주식 등의 인수·매입 관련 거래는 포함함
- 재화의 점유나 부동산 이용에 대한 소유자의 대물적 권리 또는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자의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증권에 대한 보관 및 관리 거래는 제외함(제135조 (1)항 (f)호, 제15조 (2)항)

○ 특정 투자펀드의 관리(제135조 (1)항 (g)호)

□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면세의 공급을 위해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음

○ 영세율(zero-rating)의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의 매입 부가가치세는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credit) 가능함

○ 면세의 적용은 최종 소비에 대한 과세 대신 면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생산에 대한 또 다른 과세로 작동하여 최종 소비에 과세원칙과 중립성이 저해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면세 적용의 부작용을 경감하기 위해 EU 회원국에는 일부 금융과 보험용역에 대해 면세 대신 부가가치세 과세의 적용을 채택할 수 있음(「2006 VAT 지침」 제137조 (1)항 (a)호)[79]

○ 보험과 재보험 거래(제135조 (1)항 (a)호)를 제외한 금융과 보험용역(제135조

79) 부가가치세 과세의 채택(option to tax) 외에도 면세의 부작용을 경감하기 위해 EU 내에서의 VAT 연결제도(VAT grouping scheme, 2006 VAT 지침 제11조)와 비용분담면세제도(Cost sharing exemption, 2006 VAT 지침 제132조 (1), (f)호)가 운용 중임.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van Doesum and G.van Norden, “Chapter 19: Financial Services in Improving VAT/GST-Designing a Simple and Fraud-Proof Tax System,” M. Lang & I. Lejeune eds., Books IBFD, 2014, pp. 569~572.를 참조할 것.

(1)항 (b)호부터 (g)호)을 대상으로 함

○ 부가가치세 과세의 채택 규정은 일부 회원국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됨[80]

-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의 적용을 채택한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리투아니아 등 일부이며, 회원국별로 관련 세부사항을 둘 수 있음(「2006 VAT 지침」 제137조 (2)항)
- 예를 들어 거래를 기준으로 하거나(독일), 과세 대상자별로 적용하거나(프랑스), 지급과 수령과 관련된 특정 금융용역에 한해 적용함(벨기에)

○ 최종 소비자(B2C) 공급에서 발생하는 매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의 추가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회원국에서는 최종 소비자에 대한 금융용역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면세함

2) 보험과 재보험용역

□ 보험과 재보험용역은 2006 VAT 지침 제135조 (1)항 (a)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됨

○ 면세가 적용되는 보험과 재보험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투입된 재화와 용역의 매입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없음

○ 그러나 유럽 공동체 외에 소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거나 수출재화와 관련된 보험이나 재보험용역의 경우, 공급 과정에서 발생된 재화나 용역의 매입 부가가치세는 2006 VAT 지침 제169조 (c)호에 따라 공제(또는 환급)할 수 있음

□ 2006 VAT 지침은 보험이나 재보험용역의 면세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례를 살펴봄

□ '보험 거래(insurance transaction)'는 일반적으로 '미리 지급한 프리미엄의 대가

80) A.van Doesum and G.van Norden, 2014, p. 577.

로 피보험 위험이 구체화되는 경우 보험사(the insurer)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보험용역을 피보험자(the insured)에게 제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함[81]

○ 보험용역은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음[82]

○ 보험 거래는 반드시 보험용역의 공급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계약 관계(contractual relationship)를 기반으로 함[83]

○ 보험사(insurers)가 재보험사(reinsurers)에 지불하는 재보험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됨[84]

- 해당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을 발행한 당사자인 경우에 한함

□ 보험 브로커와 보험 에이전트[85]가 수행하는 보험과 재보험 관련 용역도 면세가 적용되는 보험과 재보험용역의 범위에 속함

○ 그리고 보험계약 당사자(보험사와 피보험자) 중 어느 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 브로커와 보험 에이전트는 다른 중개인을 통한 보험

---

81) 원문은 'that the insurer undertakes, in return for a prior payment of a premium, to provide the insured in the event of materialization of the risk covered, with the service agreed when the contract was concluded.'임. ECJ 판례에 대한 내용은 A.van Doesum and G.van Norden, 2014, p. 536, 각주 17을 참조할 것; ECJ, 25 Feb. 1999, Case C-349/96, Card Protection Plan Ltd (CPP) v. Commissioners of Customs &Excise [1999] ECR I-973, ECJ, 8 Mar. 2001, Case C-240/99, Försäkringsaktiebolaget Skandia (publ) [2001] ECR I-1951, ECJ, 20 Nov. 2003, Case C-8/01, Assurandør-Societetet, acting on behalf of Taksatorringen v. Skatteministeriet [2003] ECR I-13711 and ECJ, 2 Oct. 2009, Case C-242/08, Swiss Re Germany Holding GmbH v. Finanzamt München für Körperschaften [2009] ECR I-10099.

82) A.van Doesum and G.van Norden, 2014, p. 536; ECJ, 7 Dec. 2006, Case C-13 / 06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v. Hellenic Republic [2006] ECR I-11563.

83) A.van Doesum and G.van Norden, 2014, p. 536; ECJ, Mar 8. 2001, Case C-240 / 99 , Försäkringsaktiebolaget Skandia (publ) [2001] ECR I-1951.

84) A.van Doesum and G.van Norden, 2014, p. 536; ECJ, 2 Oct. 2009, Case C-242/08, Swiss Re Germany Holding GmbH v. Finanzamt München für Körperschaften [2009] ECR I-10099.

85) 보험 브로커와 보험 에이전트는 모두 보험자와 (잠재적) 피보험자 사이에 중개자(intermediary) 역할을 하는 자로, 보험계약 공급망 어딘가에서 중개역할(intermediary capacity)을 수행함. 전자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협상 시 피보험자(또는 잠재적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행위하고, 후자는 일반적으로 특정 보험사와 연결되어 그 보험사를 대신하여 보험정책을 처리함(HMRC, *Guidance Insurance(VAT Notice 701/36)*, 2019, HRMC, p. 27.)

관련 용역에서도 면세가 적용됨[86]

□ 그러나 보험사에 대한 비영업 부서(back-office) 관련 용역[87]의 제공이나 손해사정(damage assessment),[88] 보험계리(actuarial)[89] 관련 용역은 면세가 적용되는 보험 중개 용역으로 보지 않음

나.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90]

□ 2006 VAT 지침은 보험용역에 대한 VAT 면세를 규정함과 동시에 '보험 계약에 대해 회원국은 매출세(turnover tax)에 해당되지 않는 조세를 도입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EU 회원국의 보험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를 허용함[91]

○ ECJ는 보험세가 매출세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판시하여[92] 현행 EU 보험세의 적법성을 인정함[93]

- ECJ 판례에서 제시된 매출세의 특징은 ①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대상으로 ② 거래 횟수와 관계없이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비례하여 ③ 생산과 유통의 각

86) ECJ, Apr. 3. 2008, Case C-124/07, JCM Beheer BV v. Staatssecretaris van Financiën, [2008] ECR I-2101.
87) ECJ, Mar 3. 2005, Case C-472/03, Staatssecretaris van Financiën v. Arthur Andersen &Co. Accountants cs [2005] ECR I-1719.
88) ECJ, Nov 20. 2003, Case C-8/01(Assurandør-Societetet, acting on behalfof Taksatorringen v Skatteministeriet), [2006] BVC 199.
89) EC, "GUIDELINES RESULTING FROM MEETINGSOF THE VAT COMMITTEE Up until 3 November 2020," VAT Committee, 2020, p. 53.
90) 본문에서는 보험용역을 중심으로 살펴봄. 보험이 아닌 주류(alcohol), 담배(Tobacco), 에너지와 같은 특정 재화와 용역에 대해 EU Council Directive 2008/118/EC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있음 (EC, "Common Excise Duty Provisions,"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excise-duties-alcohol-tobacco-energy/general-overview/common-provisions_en, 검색일자: 2020. 8. 18.)
91) 「2006 VAT 지침」 제401조
92) ECJ, April 29. 2004, Case C-308/01, GIL Insurance Ltd and Others v Commissioners of Customs &Excise, [2006] BVC 3; Insurance Premium Tax a user's guide, Spirmus Press Ltd, 2019, p. 6.
93) Chesham, 2019, pp. 6~8.

단계에 부과되고 ④ 이전 단계에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므로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측면임

- ECJ는 당시 영국 보험세에 대해 보험세가 모든 경제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일반세(general tax)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 보험용역의 공급에만 부과되고, 보험 프리미엄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고 생산과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과되지 않으므로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보험세가 매출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판결함

□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험세는 1988년 Second Council Directive 88/357/EEC[94]에 따라 허용되었고,[95] 현재는 EU Directive 2009/138/EC(이하 솔벤시(Solvency) Ⅱ)[96]의 제157조에서 그 내용을 승계함

□ EU 회원국[97]과 영국이 도입한 보험세(IPT)의 현황을 다음에서 간략하게 살펴봄

---

94) 생명보험 외 직접 보험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행정 규칙의 조정에 관한 지침으로 본래 명칭은 'Second Council Directive 88/357/EEC of 22 June 1988 on the coordin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relating to direct insurance other than life assurance and laying down provisions to facilitate the effective exercise of freedom to provide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73/239/EEC'임. 이 지침의 제25조에서 보험 프리미엄에 대한 간접세(indirect tax)의 부과를 규정하는데, 본문은 'every insurance contract concluded by way of provision of services shall be subject exclusively to the indirect taxes and parafiscal charges on insurance premiums in the Member State'임(Eur-Lex, "31988L0357 Second Council Directive 88/357/EEC of 22 June 1988 on the coordin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relating to direct insurance other than life assurance and laying down provisions to facilitate the effective exercise of freedom to provide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73/239/EEC,"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88L0357:EN:HTML, 검색일자: 2020. 8. 18.)

95) Mark Chesham, "Insurance Premium Tax a user's guide," Spirmus Press Ltd, 2019, p. 6.

96) 본래 명칭은 'Directive 2009/13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09 on the taking-up and pursuit of the business of Insurance and Reinsurance(Solvency Ⅱ)'이며, 보험산업의 자본 건전성과 고객 보호 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97) EU 회원국은 Austria, Belgium, Bulgaria, Croatia, Republic of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표 Ⅳ-1〉 참조)

○ 대부분 EU 회원국과 영국은 보험 프리미엄(총액)에 대해 일정 세율을 적용한 보험세(insurance premium tax)를 과세함[98]

○ 아일랜드, 체코공화국, 몰타, 포르투갈, 폴란드에서는 인지세(Stamp Duties, SD)의 형태로 보험계약 또는 프리미엄에 대한 소비세제를 도입함[99]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보험 관련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음[100]

□ EU 솔벤시 Ⅱ에 따라 보험 계약의 유형은 생명(life)보험과 생명보험이 아닌(non-life) 보험(손해보험과 실손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험 관련 소비세제 과세대상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후자를 중심으로 함

□ 보험세 세율의 수준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세율과 그 수준을 맞추거나 부가가치세보다 낮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로 구분됨

○ 네덜란드(21%), 영국(20%), 독일(19%), 핀란드(24%)는 부가가치세 표준세율과 보험세 표준세율의 수준이 동일함

○ 키프로스(1.5%), 덴마크(1.1%), 불가리아(2%), 룩셈부르크(4%), 루마니아(0.15~4.5%)의 보험세 세율은 부가가치세 표준세율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 그리고 대부분 EU 회원국과 영국의 보험세율은 단일세율 또는 둘이나 세 개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루마니아는 다중의 세율을 적용함

Slovenia, Spain, Sweden(27개국)임

98) Airmic Limited, "An overview of insurance premium taxation across Europe," https://www.airmic.com/news/guest-stories/overview-insurance-premium-taxation-across-europe, 검색일자: 2020. 8. 18.

99) 또는 일부 준조세(parafiscal tax)가 부과되기도 함

100) 그리고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경제지역(EEA)에 속하는 노르웨이도 그러함(Insurance Europe, *Indirect Taxation on Insurance Contract in Europe*, 2019. p. 7)

〈표 Ⅳ-1〉 EU 회원국별 보험 계약 또는 보험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 현황(2019년 기준)

EU 회원국과 영국	과세방안[1] (IPT/SD)	보험세(IPT) 일반사항				준조세(parafiscal tax) 과세
		납세의무자 (납부의무자)[2]	보험 종류	표준세율(%)	면세(exempt)/경감세율	
오스트리아	IPT	보험사 보험중개인 (보험계약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11	면세: 법정 노령연금, 수출신용, 재보험 경감: 농업(0.2‰), 건강(1%), 직장 퇴직 연금(2.5%), 사고(4%)	화재보험에 대해 준조세 부과
벨기에	IPT	보험사 보험중개인, 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 보험계약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9.25	면세: 특정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수출신용, 해양보험, 재보험 경감: 생명보험(2%, 4.4%), 특정 자동차보험(1.4%), 집단산업재해(4.4%), 운송중 재화(1.4%)	자동차, 화재, 산재보험에 대해 준조세 부과
불가리아	IPT	보험사 보험중개인	생명보험 손해보험	2	면세: 재보험, 생명보험(투자펀드 포함), 임대차보험, 국제운송 관련 보험, 항공 및 선박 관련 책임보험	-
크로아티아	IPT	보험사	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10, 15	면세: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생명보험, 재보험, 건강보험 등)	자동차, 화재, 손해, 선체 및 기체 보험, 여행자보험 등에 대해 4%, 5%, 0.1615%의 준조세 부과
키프로스	SD IPT	-	생명보험	1.5	-	자동차보험에 대해 5%의 준조세 부과
체코공화국	-	-	-	-	-	자동차보험에 대해 3% 준조세 부과
덴마크	IPT	보험사, 피보험자 (세무대리인)	생명보험, 손해보험	1.1	면세: 생명보험, 자동차, 요트선체, 모기지, 재보험	화재보험에 대해 60DKK 추가 부과 면세 버스 자동차보험과 기타 차량보험에 대해 34.4%, 42.9% 기타 준조세 부과

〈표 Ⅳ-1〉의 계속

EU 회원국과 영국	과세방안[1] (IPT/SD)	보험세(IPT) 일반사항				준조세(parafiscal tax) 과세
		납세의무자 (납부의무자)[2]	보험 종류	표준세율(%)	면세(exempt)/경감세율	
에스토니아	-	-	-	-	-	-
핀란드	IPT	보험사 (피보험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24	면세: 생명보험, 사고 및 건강보험, 신용보험, 재보험, 국제운송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해 각각 3%, 1% 준조세 부과
프랑스	IPT	보험사, 보험중개인, 보험계약자 (세무대리인)	생명보험 손해보험	9, 13.4, 15, 19, 24, 30	면세: 생명·연금, 농업, 특정 자동차, 항공, 수출 신용, 건강, 장기요양, 재보험	면세 대상인 건강보험에 대해 보험 내용별 6.27%, 7%, 13.27%, 14%, 20.27%의 추가 준조세 부과
독일	IPT	보험사,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3, 19, 22	면세: 생명보험, 건강보험, 재보험 경감: 화재보험(프리미엄의 60%에 대해 22%), 주택물(프리미엄의 86%에 대해 19%), 주택 기자재(프리미엄의 85%에 대해 19%), 선체(3%)	소방 관련 준조세 19%, 22% 부과
그리스	IPT	보험사, 세무대리인	생명보험 손해보험	4, 15, 20	면세: 장기(10년 이상) 생명보험, 재보험, 해양보험 경감: 10년 미만 생명보험(4%)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건강보험에 대해 각각 2%, 0.8%(천재지변 등 화재보험 0.4%), 0.4%의 준조세 부과
헝가리	IPT	보험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10, 15, 23	면세: 생명보험, 건강보험, 농업보험, 재보험	-
아일랜드	SD	-	-	-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항해, 항공, 운송 제외)에 대해 각각 1%, 5%의 준조세 부과

〈표 Ⅳ-1〉의 계속

EU 회원국과 영국	과세방안[1] (IPT/SD)	보험세(IPT) 일반사항				준조세(parafiscal tax) 과세
		납세의무자 (납부의무자)[2]	보험 종류	표준세율(%)	면세(exempt)/경감세율	
이탈리아	IPT	보험사, 세무대리인 (피보험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2.5, 7.5, 10, 12.5, 21.25	면세: 생명보험, 재보험 경감: 민간 원자력 에너지(2.5%), 사적 사고/건강(2.5%), 운송(선박 및 항공 7.5%, 철도 12.5%), 농업(가축 등 2.5%, 책임 및 화재 12.5%), 신용 및 보증(12.5%), 자동차 12.5%	책임, 원자력 에너지, 자동차, 화재, 도난, 농업(책임 및 화재)에 대해 1%의 준조세 부과,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해 2.5%의 준조세 부과, 수렵책임에 10%의 준조세 부과
라트비아	-	-	-	-	-	
리투아니아		-	-	-	-	
룩셈부르크	IPT	보험사 (보험사, 보험계약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4	면세: 생명 및 연금보험, 장애보험	화재보험과 제3자 보험에 대해 6%, 3%의 준조세 추가 부과
몰타	SD	-	-	-	-	
네덜란드	IPT	보험사, 보험중개인 (법률대리인, 보험중개인, 세무대리인)	생명보험 손해보험	21	면세: 생명보험, 해양보험, 건강보험, 여행보험, 수출신용, 재보험, 고용보험	-
폴란드	-	-	-	-	-	화재보험에 대해 10% 준조세 부과
포르투갈	SD	-	-	-	-	재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해 다양한 준조세 부과

〈표 Ⅳ-1〉의 계속

EU 회원국과 영국	과세방안[1] (IPT/SD)	보험세(IPT) 일반사항				준조세(parafiscal tax) 과세
		납세의무자 (납부의무자)[2]	보험 종류	표준세율(%)	면세(exempt)/경감세율	
루마니아	IPT	보험사	손해보험	0.15, 0.25, 0.3, 0.4, 1, 4.5	경감: 감리활동 관련 손해보험(일반 0.4%, 생명 0.3%), 정리기금(생명 0.25%, 손해 0.4%), 보증기금(생명 0.4%), 보호펀드(0.15%)	-
슬로바키아	IPT	보험사	손해보험	8	-	제3자 보험에 대해 8%의 준조세 부과
슬로베니아	IPT	보험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8.5	면세: 특정 건강보험, 의무사회보험, 재보험	화재 관련 보험에 대해 5%, 1%의 준조세 부과
스페인	IPT	보험사 (보험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6	면세: 생명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의무적 사회보험, 국제운송, 선체, 농업보험, 보증보험, 수출신용, 재보험	화재 관련 보험 2.5%(5%)의 준조세 부과, 여행자보험에 대해 5%의 준조세 부과, 생명보험을 제외한 기타 보험에 대해 0.15%의 준조세 부과,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해 1.5%의 준조세 부과
스웨덴	IPT	보험사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45, 32	면세: 외국보험사 체결 그룹생명보험,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기타 보험	-
영국	IPT	보험사, 보험중개인 (보험사, 보험중개인)	생명보험 손해보험	12, 20	면세: 생명보험, 항해 및 항공, 운송보험, 수출신용, 재보험	화재 관련 보험에 대해 준조세 부과(피보험 재화가액 100만 파운드당 35파운드)

주: 1) 보험 프리미엄 또는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험세(IPT)와 인지세(SD)로 구분함
2) 국내 소재하지 않는 외국 보험사와 보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납부의무자를 의미함.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국내 보험업의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 )를 표시하지 않음

자료: Insurance Europe, 2019, pp. 9~105.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2. 영국

가. 부가가치세[101]

1) 개요

□ 영국은 「1972년 재정법(Finance Act 1972)」의 도입을 통해 1973년부터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가 적용됨

○ 1973년 영국은 EU에 가입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매입세(purchase tax)와 고용세(selective employment tax)를 대체하여 부가가치세를 도입함[102]

○ 영국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한 간접세이며,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됨

□ (과세대상) 영국 내 사업자가 사업의 과정 또는 목적으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에 대해 과세됨

○ 재화와 용역의 공급, EU 회원국으로부터 재화의 취득(acquisition), EU 회원국 외의 국가로부터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함

□ (세율) 영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표준세율(20%)과 경감세율(5%)을 적용하고 재화의 수출 등에 대해 영세율(0%)를 적용함

○ 대부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20%의 표준세율이 적용됨

○ 특정 여객 수송 공급, 특정 이동식 주택과 선상가옥(Caravans and houseboats), 자선단체, 자녀 카시트, 주거·자선용 건물 개조, 특정 의약품, 에너지 절감 설비, 연료와 전력,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이동보조 장치 등에 대해 5%의 경감세율이

---

101) 영국 국세청, "Guidance VAT guide(VAT Notice 700)," https://www.gov.uk/guidance/vat-guide-notice-700#section3, 검색일자: 2020. 8. 12.

102) 박정수, 『주요국의 소비세제도(Ⅰ)-부가가치세 영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 3.

적용됨

○ 영세율(0%)은 재화의 수출, 기초생활필수품과 국민후생을 위한 재화와 용역 등에 적용됨[103]

- 재화의 수출
- 기초생활필수품: 식료품, 하수처리 및 수도용역, 이동식주택, 주거나 자선 목적의 건물 건설, 특정 여객운송용역
- 국민후생: 장애인 대상의 의약품 및 지원물품,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 기타: 지폐, 금, 특정 자선단체에서 공급 또는 자선단체에 공급, 영유아 의류, 장애인 지원, 특정 의약품 등

□ (면세) 영국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국민후생, 문화, 생산요소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적용되며, 면세 공급과 관련된 매입 부가가치세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104]

○ 영국「부가가치세법」부칙 9(schedule 9)에서는 면세 대상 재화와 용역을 자세히 규정하는데, 이는 총 15개 그룹으로 구분됨

- 국민후생 관련: 교육, 보건 및 복지, 스포츠 관련 교육, 장례
- 문화 관련: 문화 관련 서비스, 예술품, 스포츠(경기)
- 생산요소 관련: 토지, 금융과 보험용역
- 기타: 자선단체, 노동조합이나 전문가협회, 우편, 도박·게임·복권

□ (납세의무자) 영국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 협회 등임

---

103) 영국「1994년 부가가치세법」제30조 제8항; 영국「부가가치세법」제30조의 Schedule8 Index to zero-rated supplies of goods and services

104) 영국「1994년 부가가치세법」제31조 제1항;「부가가치세법」제31조의 Schedule9 Index to exempt supplies of goods and services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2) 보험용역에 대한 영국 부가가치세 적용[105]

□ 일반적으로 보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이때 재보험 거래는 역시 동일하게 취급됨

○ 다른 재화나 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보험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됨

□ 영국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보험'에 대한 정의는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금융시장법」[106]에 따라 보험사(insurer)로서 인가가 요구되는 활동을 「부가가치세법」 목적상 '보험'으로 봄[107]

○ 인가받지 못한 보험사의 활동에 대해서도 1997년 3월까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108] 이후 면세가 적용됨

□ 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역은 보험 관련 용역(insurance related services)으로 면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보험 브로커나 보험 에이전트에 의해 공급되는 보험 중개(intermediation) 용역으로 다음 용역을 포함함

- 보험 계약의 체결을 위한 사전 작업을 포함한 소개 용역
- 보험 계약의 관리와 이행을 위한 지원
- 클레임(claim)의 처리
- 보험 프리미엄의 징수

---

105) 영국 국세청, "Guidance Insurance(VAT Notice 701/36)," https://www.gov.uk/guidance/insurance-notice-70136, 검색일자: 2020. 8. 13.; 보험과 재보험용역에 대한 면세 규정은 EU의 2006 VAT 지침 제135조 (1)항 (a)호의 규정을 근거로 1994년 영국 「부가가치세법」 제31조로 입법화됨

106)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FSMA).

107) 다만 「금융시장법」에 따라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장례서비스 계약(certain funeral plan contracts)은 보험으로 봄

108) ECJ, Feb. 25. 1999, Case C-349/96, Card Protection Plan Ltd (CPP) v Commissioners of Customs & Excise, [1999] ECR P. I-00973.

○ 손해사정인, 해손청산인, 자동차사정인 등이 보험사의 중개인으로 공급하는 클레임의 처리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됨

□ 사업자의 재화나 용역과 제휴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보험은 면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피보험 위험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고객의 위험으로 하는 진성 보험(genuine insurance)에 따라 제공하는 보험용역

- 예를 들어, 임대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이 있는 건물손상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해당 보험은 과세됨
- 그러나 보험 공급이 보험사로부터 임대인을 거쳐 임차인으로 옮겨지는 가계보험(household insurance)과 같이 임차인의 위험을 보증하고 계약상 피보험 당사자로 명명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 블록 계약자(block policyholder)[109]가 고객에게 공급하는 보험용역

- 특정 조건에 따라 블록 계약자가 보험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보험사와 해당 계약자 간 보험계약에 따라,
- 블록 계약자 본인의 명의로 보험사로부터 제3자를 위한 보험 보장을 조달하고, 보험사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보험의 공급하는 경우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용역은 보험과 관련 없는 용역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을 배제함

○ 시장조사, 상품설계, 광고, 판촉 또는 이와 유사 용역, 해당 용역에 사용되는 정보의 수집, 대조, 제공

○ 평가 및 검사용역

○ 손해사정인(loss adjustors), 해손청산인(average adjuster), 자동차사정인(motor assessor), 부동산 감정인(surveyor) 등 전문가 용역

109) 블록 보험(block policy)은 제3자가 운송·보관 중인 재화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모든 위험 보험정책(risk insurance policy)으로, 재산 피해 보상을 위해 설계됨. 블록 계약자는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보험사와 제3자 간에서 보험 보장을 주선함(HMRC, 2019, p. 4.)

□ (매입부가가치세에 대한 예외적인 처리) 영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면세 보험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매입한 재화와 용역의 매입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지만 다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110][111]

○ 국외 또는 EU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고객(the insured party)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공급

○ 영국 또는 EU 내에서 국외 또는 EU 이외 지역으로 수출하는 재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보험의 공급

- 보험 수익자(the recipient of the insurance)가 수출하는 재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보험임
- 해당 보험은 재화를 소유하거나 수출에 책임이 있는 자(person)의 위험을 보장하여야 함

나.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112]

1) 개요

□ 영국은 세수 확대, 부가가치세 과세범위의 확대, 제조업 등 다른 경제 영역과 금융 영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됨[113]

□ 영국 보험세는 1993년에 제정되고 199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도입 초기에는 보험 프리미엄(총액)에 대해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함

○ 당초에는 관련 비용의 공제 후 순가치에 대해 3%의 세율이 적용하는 것으로 제

110) HMRC, 2019, pp. 17~18.; p. 37.
111) The VAT(Input Tax)(Specified Supplies) Order 1999 'certain 'specified supplies'
112) 보험세 외 화재 관련 보험에 대해 피보험 재화가액 100만파운드당 35파운드의 준조세(fire brigade charge)가 있음. 이 준조세는 그레이트 런던(the Greater London) 지역의 자치구 내에 소재한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을 체결하는 모든 보험회사에 적용됨(Insurance Europe, 2019, p. 100)
113) HC Deb 30 Number 1993 c 932

안되었지만, 세무행정상 이유로 보험 프리미엄(총액)에 대해 2.5%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됨[114]

□ 영국 보험세제는 낮은 세율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두고 있음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보험을 통해 부가가치세 회피 행위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고세율이 1997년에 도입됨

○ 세율이 변경될 때 적용되는 3개월의 경과 규정(transitional arrangement)을 이용한 보험세 회피행위를 막기 위해 사전 납부 방지 규정(anti-forestalling provisin)을 둠

2) 과세요건

□ (과세대상) 보험세 면세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보험계약[115]은 과세대상 보험 계약으로 보고, 보험 프리미엄에 대해 보험세가 부과됨

---

114) Chesham, 2019, p. 1.

115) 보험세 목적상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the insured party)는 보험 이권(insurable interest)을 보유하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함
① 보험사(the insurer)와 피보험자 간 법률상 이행 가능한 계약이 있고, 보험 대상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②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보험사는 손실을 배상하거나 손해를 보상하거나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함(손실 또는 손해는 피보험자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특정 사건으로 인해 발생함)
③ 보험 프리미엄은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해당 위험 풀(the pooling of risks)을 보장하기 위해 징수한 보험 프리미엄 풀(a pool of premiums)에서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계산함
④ 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사가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도록 피보험자에게 요구하는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 중 하나이며, 피보험자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해당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선언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⑤ 피보험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에 따른 청구 여부와 이후의 청구에 대한 위반 여부에 관계 없이 위반 날짜로부터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인 계약법보다 엄격하게 적용됨
⑥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에 따라 지불 또는 지원에 대한 절대적 권리가 있음
영국 국세청, "Notice IPTI: Insurance Premium Tax,"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otice-ipt-1-insurance-premium-tax/notice-ipt1-insurance-premium-tax, 검색일자: 2020. 8. 20.

□ 과세대상 요소와 면세가 포함된 혼합 보험(mixed insurance policy)인 경우 최소 기준 원칙(De minimis policies)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험세가 과세되지 않음[116]

○ 혼합 보험의 총 보험 프리미엄이 50만파운드 이하이고, 동시에 과세대상 보험 위험과 관련된 부분이 총보험 프리미엄의 10%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보험사가 과세대상 보험 계약에 따라 수령하거나(또는 제3자가 보험사를 대신하여 수령하는) 보험 프리미엄이 과세표준임

○ 보험 프리미엄이 비금전적인 대가를 포함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불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 기준(arm's length basis)에 따른 금액에 대해 보험세가 부과됨[117]

○ 보험 프리미엄은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수령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의미하며, 제3자가 보험사를 대신하여 수령한 보험 계약에 따른 지급금도 보험사가 수령한 것으로 취급함[118]

- 보험사가 수령하는 금액에는 일반적으로 보험 위험, 보험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행정비용, 중개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세금, 할부나 이연 납부에 부과되는 신용 약정에 따른 이자 등과 관련하여 금액이 포함됨

□ 보험사는 보험 프리미엄의 산정을 위해 현금주의 회계(cash receipt method)와 특별회계(special accounting method)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119]

○ 전자의 경우 보험사가 과세대상 보험 프리미엄을 수령하거나 또는 보험사를 대신하여 수령하는 날을 과세시점으로 하여 보험 프리미엄을 계산함

○ 후자(특별회계 방식)는 보험사가 보험 프리미엄의 만기일(the date as at which

---

116) 영국 국세청, "Notice IPTI: Insurance Premium Tax,"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otice-ipt-1-insurance-premium-tax/notice-ipt1-insurance-premium-tax, 검색일자: 2020. 8. 20.

117) Chesham, 2019, p. 10.

118) 보험중개인(a broker or intermediary)이 보험사를 대신하여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 프리미엄을 수령하고, 해당 보험 프리미엄에서 관련 수수료를 공제한 후 보험사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해당 보험 프리미엄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함(Chesham, 2019, p. 9.)

119) 제3자가 보험사를 대신해 수령하는 보험 프리미엄의 시기와 가치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으로 인해 실무상 과반수(70%) 이상의 보험사는 특별회계제도를 채택함(Chesham, 2019, pp. 68~70.)

the premium is due)로 표시하는 날을 과세시점으로 함(법정 과세시점)

- 대체적인 방안으로 보험사는 기장일(the date of entry)을 과세시점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특별회계 방식을 채택한 경우 보험 프리미엄의 조정(adjustment)에 대해 별도 규정이 있음

- 추가 보험 프리미엄(additional premium)은 법정 과세시점과 관계없이 기장일을 과세시점으로 보고 보험세를 산출함
- 환급되는 보험 프리미엄(return premium)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보험 프리미엄은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처리함

□ (세율) 현행 영국 보험세의 세율은 표준세율(12%)과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반영한 20%의 고세율(higher rate)로 구분됨[120]

○ 1994년 도입 초기에는 단일세율이 적용되었지만, 1997년 4월부터는 세율을 이원화하여 적용함

□ 표준세율은 1994년 당시 2.5%의 낮은 세율로 도입되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 조정됨

○ 개정을 통해 4%(1997년 4월 1일~1999년 6월 30일), 5%(1999년 7월 1일~2011년 1월 3일), 6%(2011년 1월 4일~2015년 10월 31일), 9.5%(2015년 11월 1일~2016년 9월 30일), 10%(2016년 10월 1일~2017년 5월 31일)로 인상 조정됨

○ 2017년 6월 1일부터 12%의 세율이 현재까지 적용됨

□ 20%의 고세율은 저율의 보험세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됨[121]

---

120) 영국 국세청, “Notice IPTI: Insurance Premium Tax,”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otice-ipt-1-insurance-premium-tax/notice-ipt1-insurance-premium-tax, 검색일자: 2020. 8. 20.

121) Chesham, 2019, p. 9; p. 15.

○ 다음 특정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되는 보험은 1997년 4월 1일부터 고세율이 적용됨

- 자동차·오토바이의 공급자(제조, 판매, 리스)와 특수 관계가 있는 보험사가 자동차 등과 함께 공급하는 보험 또는 자동차 등을 보증하는 보험
- 가전제품(domestic application)[122]의 공급자와 특수 관계가 있는 보험사가 해당 가전 제품 등과 함께 공급하는 보험 또는 가전 제품 등을 보증하는 보험

○ 여행과 관련된 보험의 경우에는 1998년 8월 1일부터 고세율이 적용됨[123]

- 여행 위험과 다른 위험이 혼합된 보험의 경우 여행 관련 보험 프리미엄이 총 보험료의 10%를 초과하고, 여행 위험 요소[124] 중 두 개 이상을 보상하는 경우에 한함

〈표 Ⅳ-2〉 영국 보험세 적용세율 연혁

(단위: %)

적용연도	표준세율	최고세율
1994년 10월~1997년 3월 31일	2.5	-
1997년 4월 1일~1999년 6월 30일	4	17.5
1999년 7월 1일~2011년 1월 3일	5	
2011년 1월 4일~2015년 10월 31일	6	20
2015년 11월 1일~2016년 9월 30일	9.5	
2016년 10월 1일~2017년 5월 31일	10	
2017년 6월 1일~현재	12	

자료: Chesham, 2019, p. 79.

□ (면세) 해외에 소재한 위험을 대상으로 하거나, 생명보험과 같은 장기 보험, 국제 운송 및 재보험과 관련된 보험은 영국 보험세 면세가 적용됨[125]

○ 영국 밖에 소재한 위험(risks outside the UK)[126]

---

122) 예를 들어 카메라, 중앙난방시스템, 시계, TV, 컴퓨터, 전자책, 게임콘솔, 가스레인지, 노래방 기계, 노트북, 전기 악기, 전동공구, 프린트, 전화 및 팩스 자동 응답기, 진공 청소기, 세탁기 등이 있음

123) Chesham, 2019, p. 19.; 영국 국세청, "Notice IPTI: Insurance Premium Tax,"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otice-ipt-1-insurance-premium-tax/notice-ipt1-insurance-premium-tax, 검색일자: 2020. 8. 20.

124) 여기서 여행 위험 요소는 여행 취소 또는 관련 숙박 시설의 취소, 지연 또는 취소, 여행 또는 여행 관련 숙박시설 사용의 축소, 수하물 분실 및 지연 도착, 개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귀국비용이 있음

125) 「1994 영국 재정법(Finance Act 1994)」, Schedule 7A; Chesham, 2019, pp. 41~59.

126) 다음 경우에 위험이 영국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재보험(reinsurance)
○ 장기 보험(long-term insurance contract)
○ 상업용 선박
○ 채널 터널과 관련된 계약
○ 구명정 및 구명정 장비
○ 상업용 항공기
○ 국제 철도 철도 차량(international railway rolling stock)
○ 외국 또는 국제 운송 재화
○ 수출 금융 관련 보험
○ 장애인용 자동차 관련 계약(이동성)
○ 우주선

□ 그리고 손해보험과 장기보험 (long-term insurance) 등 일부 면세 항목은 FSMA에서 정하는 보험 등급에서 따라 정해짐(〈표 Ⅳ-3〉 참조)[127]

① 건물과(또는) 그 기자재와 관련이 있고 건물이 영국에 소재함 ② 영국에 등록된 모든 유형의 차량과 관련됨(차량에는 자동차, 선박, 요트 및 항공기가 포함됨) ③ 영국에서 보험(policy)이 체결될 때 해당 보험이 최대 4개월의 기간 동안 여행 또는 휴가 위험을 보장함 ④ 이외에도 보험 계약자가 계약 체결일에 영국에 항상 거주하는 개인이거나 보험과 관련된 기업 및 고정시설이 영국에 소재함(영국 국세청, "Notice IPTI: Insurance Premium Tax,"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otice-ipt-1-insurance-premium-tax/notice-ipt1-insurance-premium-tax, 검색일자: 2020. 8. 20.)

127) FSMA (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RAO), Schedule 1.

〈표 Ⅳ-3〉 영국 면세 적용 손해보험과 생명보험(FSMA)

<table>
<tr><th>구분</th><th colspan="4">면세 적용 보험 항목</th></tr>
<tr><td>손해
보험</td><td colspan="4"><table>
<tr><th>No</th><th>적요</th><th>No</th><th>적요</th></tr>
<tr><td>1</td><td>사고(Accident)</td><td>10</td><td>자동차책임(Motor vehicle liability)</td></tr>
<tr><td>2</td><td>병(sick)</td><td>11</td><td>항공기책임(aircraft liability)</td></tr>
<tr><td>3</td><td>육상 차량(land vehicles)</td><td>12</td><td>선박책임(liability of ships)</td></tr>
<tr><td>4</td><td>철도 차량(Railway rolling stock)</td><td>13</td><td>일반책임(general liability)</td></tr>
<tr><td>5</td><td>항공기(aircraft)</td><td>14</td><td>신용(credit)</td></tr>
<tr><td>6</td><td>선박(ships)</td><td>15</td><td>보증(suretyship)</td></tr>
<tr><td>7</td><td>운송재화(goods in transit)</td><td>16</td><td>기타 재정손실
(miscellaneous financial loss)</td></tr>
<tr><td>8</td><td>화재와 자연재해
(Fire and natural forces)</td><td>17</td><td>법률비용(legal expenses)</td></tr>
<tr><td>9</td><td>재산피해(Damage to property)</td><td>18</td><td>지원(assistance)</td></tr>
</table></td></tr>
<tr><td>장기
보험</td><td colspan="4"><table>
<tr><th>No</th><th>적요</th><th>No</th><th>적요</th></tr>
<tr><td>Ⅰ</td><td>생명과 연금(Life and annuity)</td><td>Ⅵ</td><td>자본상환(Capital Redemption)</td></tr>
<tr><td>Ⅱ</td><td>결혼과 출생(Marriage and birth)</td><td>Ⅶ</td><td>계약(Contracts)</td></tr>
<tr><td>Ⅲ</td><td>연계된 장기(Linked long term)</td><td>Ⅷ</td><td>연금펀드관리
(Pension Fund management)</td></tr>
<tr><td>Ⅳ</td><td>영구적 건강(Permanent health)</td><td>Ⅹ</td><td>단체보험, 사회보험(Collective insurance, social insurance)</td></tr>
<tr><td>Ⅴ</td><td>톤틴식 연금(Tontines)</td><td></td><td>-</td></tr>
</table></td></tr>
</table>

자료: 영국 국세청, “Notice IPTI: Insurance Premium Tax,”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otice-ipt-1-insurance-premium-tax/notice-ipt1-insurance-premium-tax, 검색일자: 2020. 8. 20.

□ (납세의무자) 영국 보험세 납세의무는 보험사(insurer)에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보험세 납부의무가 부여될 수 있음[128)]

○ 영국, EU 또는 세액의 환급을 위해 특별 조약을 체결한 과세관할권 내에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지 않은 외국 보험사의 경우, 관련 피보험자에게 보험세 납부의무가 부여됨

○ 이 경우 피보험자는 관할 당국으로부터 보험세 납부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함

128) 「1994 영국 재정법」 section 51; section 52; section 52A

□ (조세행정) 과세대상 보험 사업의 과정에서 과세대상 보험 프리미엄을 수령하는 자(person)는 보험세 목적상 등록의무가 부여됨[129)]

□ 보험사는 분기별로 보험세 세무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지만, 회계기간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과세기간을 신청할 수 있음

3) 세수 현황

□ 2018년 기준 영국 보험세 수입은 61억 9,600파운드이며, 2015년 세율 인상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그림 Ⅳ-1] 영국 보험세 수입 현황

(단위: 10억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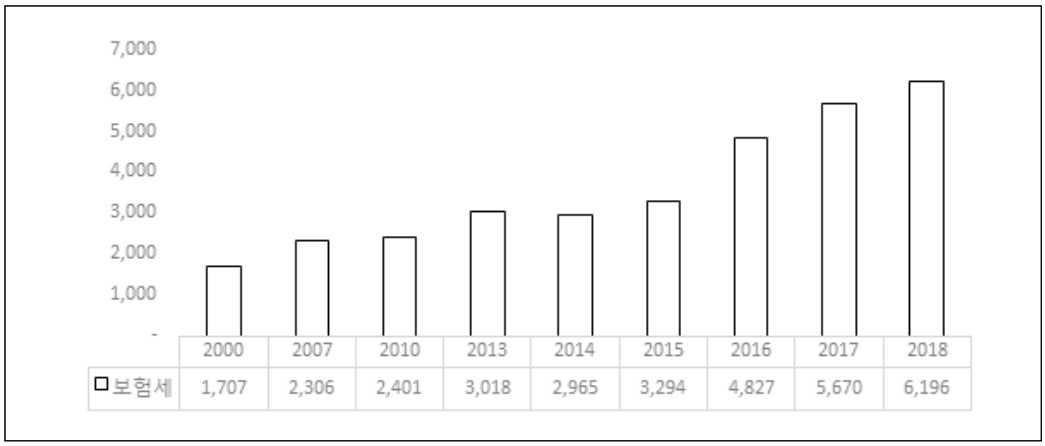

	2000	2007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보험세	1,707	2,306	2,401	3,018	2,965	3,294	4,827	5,670	6,196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 검색일자: 2020. 8. 19.

□ 2018년 기준 영국 보험세가 전체 영국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7%이며, 최근 5년 평균 0.70%의 비중을 보임

129) Chesham, 2019, p. 60.

[그림 Ⅳ-2] 전체 세수 대비 영국 보험세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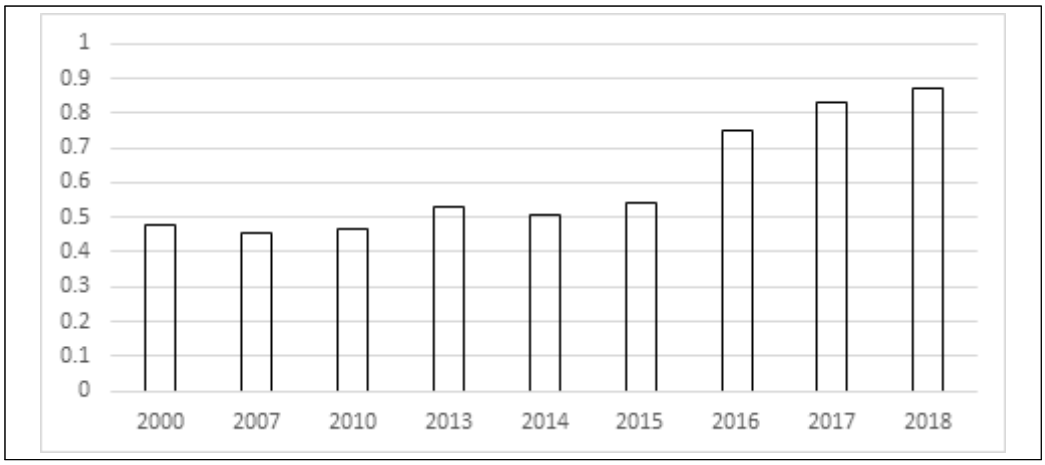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 검색일자: 2020. 8. 19.

3. 독일

가. 부가가치세

1) 개요

□ 독일 부가가치세(Umsatzsteuer)는 196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행 독일 「부가가치세법」은 1993년에 제정된 법과 시행령을 근간으로 함[130]

○ 독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으로 운영됨[131]

○ 독일 부가가치세는 연방정부와 함께 주정부, 기초자치단체에도 정해진 비율에

130) 독일은 1977년 5월 17일 통과된 EU의 「제6차 VAT 지침(Directive 77/388/EU)」을 1980년 1월 1일자로 국내법으로 입법화함(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소비세제도(Ⅰ)-부가가치세 독일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 4)

131) 김유찬·이유향, 2019, p. 3.

따라 귀속되는 공동세에 해당함

□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국내 재화와 용역의 공급(유상, 무상), 제3국(EU 역외 국가)으로부터 재화의 수입, EU 역내 국가로부터 재화의 매입, 재화와 용역의 자가공급, 특정 용역의 수입[132]임[133]

□ (세율) 독일은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표준세율(19%)과 경감세율(7%)을 적용하고 재화의 수출 등에 대해 영세율(0%)을 적용함

○ 대부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19%의 세율을 적용함

○ 도서와 신문, 문화 활동, 식품, 특정 여객운송, 농산품, 호텔숙박 등 특정 항목에 대해 7%의 경감세율을 적용함[134]

○ 영세율(0%)은 수출재화, 국외 운송용역,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등에 적용됨[135]

- 수출재화: 재화의 수출(임가공수출 포함), EU 역내 재화의 공급, EU 역외 소재하는 자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특정 금융용역의 공급, 제3국 거주 소비자에 대한 수입재화의 공급, 보세창고 보관 재화
- 국외 운송용역: 특정 해상운송업 및 국외 운송

□ (면세) 독일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국민후생, 문화, 생산요소, 공익활동 관련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적용되며, 면세 공급과 관련된 매입 부가가치세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음[136]

○ 국민후생 관련: 의료 활동과 부수 용역, 환자·부상자의 운송 용역, 의료용역, 교육용역 등

---

132) 독일에 소재하지 않는 국외 사업자로부터 특정 용역의 공급(독일「부가가치세법」제13b조)
133) 독일「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
134) EY,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20, p. 491.
135) 독일「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호~제7호; 제13조 제3항
136) 독일「부가가치세법」제4조; 김유찬·이유향, 2019, p. 47.

○ 문화 관련: 정부 운영하의 문화시설
○ 생산요소 관련: 금융과 보험용역, 토지 등의 공급
○ 공익활동 관련: 독일 유스호스텔협회 등, 사회복지사업, 종교단체 지원활동
○ 기타: 부동산취득세 부과대상 매출, 사회보험공단, 우정사업 등

□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임[137]
○ 사업자는 수입의 획득을 목적으로 영업이나 직업을 독자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의미함[138]

2) 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독일「부가가치세법」에서는 보험용역에 대해 면세를 적용함[139]
○ 「보험세법」에 따른 보험계약 관계에서의 보험용역이나 기타 대인보험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보장용역의 공급
○ 보험 대리인이나 보험 중개인으로서 활동하여 발생한 매출액

□ 그러나 다음 용역은 보험과 관련없는 용역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을 배제함
○ 보험료 징수 및 영업 처리와 관련된 활동[140]
○ 보험사에 제공하는 보험중개인 또는 대리인의 지원부서 활동

---

137) 독일「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 제1호 이하; 제15조
138) 독일「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139) 독일「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0호; 제11호
140) 독일 재무부, "Umsatzsteuer-Anwendungserlass vom 1. Oktober 2010, BStBl I S. 846-aktuelle Version(Stand 1. Oktober 2020) – nach dem Stand zum 31. Dezember 20191, geändert durch,"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Steuerarten/Umsatzsteuer/Umsatzsteuer-Anwendungserlass/Umsatzsteuer-Anwendungserlass-aktuell-Stand-2020-05-07.pdf?__blob=publicationFile&v=31, 검색일자: 2020. 11. 2.)

나.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1) 개요

□ 독일 「보험세법」(Versicherungsteuergesetz)은 1996년 1월 10일자로 최초 공표되었으며, 화재 예방과 관련하여 「소방세법」(Feuerschutzsteuergesetz)을 별도로 두고 있음[141]

○ 소방세는 보험세에 부가하여 징수되며, 본문은 보험세를 중심으로 설명함

2) 과세요건

□ (과세대상) 보험세는 계약 등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 관계(insurance relationship)[142]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의 프리미엄 지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적용됨[143]

○ 구조물이나 시설물 등과 같은 부동산, 독일 내에 소재하는 것이 전제 조건인 경우 상업상 운송 중인 재화를 제외한 내용물(contents)과 관련된 위험

○ 독일 내 공인 등록부에 등록되거나 또는 등록되어야 하는, 등록 판(registration plate)이 있는 모든 유형의 차량과 관련된 위험

○ 독일 내 4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험 관계를 기초로 하는 여행이나 휴가와 관련된 위험

○ 기타 위험이나 대상에 대한 보장

---

141) 독일 국세청, “Information on insurance tax and fire protection tax for insurers established in the European Economic Area,” https://www.bzst.de/SharedDocs/Downloads/EN/Insurance_Tax_Fire_Protection_Tax/EU_EEA_Insurers.pdf?__blob=publicationFile&v=4, 검색일자: 2020. 8. 19.

142) 보험 관계에는 공동의 손실이나 손해(common losses or damage)를 보장하기 위한 단체와의 보험계약은 포함되며, 보증(suretyship) 또는 기타 보안(security)을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은 그러하지 않음(독일 「보험세법」 제2조 제1항; 제2항)

143) 독일 「보험세법」 제1조 제1항

- 이 경우는 독일 내에 주소, 거소, 등록된 사무소가 있거나(개인 보험계약자), 등록사무소, 고정사무소 등이 소재한 경우(법인인 보험계약자)에 한함

□ 소방세는 화재로 인한 사업 중단에 대비한 보험, 주거용 건물이나 가재도구와 관련된 보험을 포함한 화재 예방을 위한 모든 보험을 대상으로 함[144]

□ (과세표준) 보험세 과세표준에는 보험 관계를 체결하고 유지하기 위해 보험사(insurer)에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유형의 지급금이 포함됨[145]

○ 예시적으로 지급금에는 '보험 프리미엄(premiums), 부담금(contributions), 선급부담금(advance contributions), 선급금(advances), 추가 지급금(additional payments), 부과금(charges), 보험 계약의 초안 수수료 및 기타 부수적 비용(policy drafting fees and other ancillary costs)'을 들 수 있음

○ 다만 보험사가 공급하는 특정 용역에 대해 지불해야 하거나 개별적인 보험계약자의 행위에 기인한 지급금은 포함되지 않음

- 예시적으로 대체 서류 발급 비용이나 지급 독촉 비용이 있음

○ 배당(dividend)이 정기적인 프리미엄 지급금과 상계되고 오직 그 차액만을 보험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이 보험 프리미엄에 해당함

○ 보험 프리미엄이나 피보험금액이 감액되어 보험 프리미엄이 환급되는 경우에는 관련 보험세액은 신청에 한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됨[146]

- 그러나 보험 프리미엄의 환급이 명시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147]

□ 일반적으로 보험 프리미엄(총액)이 과세표준으로 산정되지만, 특정 유형의 보험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

○ 우박, 홍수 등 기상과 관련된 자연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피보험대상 토양

---

144) 독일 내 보험계약자가 보험 관계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법률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145) 독일「보험세법」제3조
146) 독일「보험세법」제9조 제1항
147) 독일「보험세법」제9조 제2항

생산물에 대한 손해와 토양 생산물의 보호를 위한 초목의 농업 및 원예업에서 발생하는 기상 관련 피해를 대비한 보험: 보험가입 기간에 대한 피보험금액

○ 「소방세법」상 화재 관련 보험

- 「소방세법」 화재로 인한 사업 중단을 대비한 화재보험과 보험: 보험 프리미엄의 60%
- 주거용 건물보험: 보험 프리미엄의 86%
- 주택 가재도구 보험: 보험 프리미엄의 85%

□ 보험 프리미엄은 현금주의 회계(cash accounting scheme)에 따른 실제 수령액이나 발생주의 회계(accrual accounting scheme)에 따른 과세기간 동안 보험 프리미엄 수령 예상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음[148)]

○ 발생주의 회계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과세 기간별 보험 프리미엄 납부액(the insurance premium due)을 과세표준으로 함

- 미수 프리미엄에 대해 이미 납부된 세액은 보험사가 보험이 종료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현금주의 회계를 이용하는 경우로 수취인(payee)에게 보험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149)]에는 보험 프리미엄의 지급(payment of the insurance premium)에 따라 보험세를 계산하고, 그 외에는 보험 프리미엄의 수령(receipt of the insurance premium)을 과세표준으로 함

□ (세율) 일반적으로는 19%의 표준세율이 적용되며, 특정 보험 유형별로 증감세율이 적용됨

○ 사업 중단과 관련된 화재 보험: 22%

○ 주거용 건물이나 주택 가재도구와 관련된 보험: 19%

○ 우박, 폭풍, 심한 서리, 폭우 및 홍수로 인한 피해 보장 보험: 0.3‰(0.3 per mille)

148) 독일 「보험세법」 제5조

149) 독일 「보험세법」 제7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수취인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함

○ 해양선체보험(marine hull insurance): 3%
○ 보험료 환급(premium refund)이 있는 상해보험: 3.8%

□ 소방세는 화재 관련 보험 프리미엄(보험세 불포함)의 40%에 대해 표준세율 19%가 적용됨
○ 2010년 7월 1일부터 화재보험과 화재로 인한 사업 중단인 경우에는 22%의 세율이 적용됨[150]

〈표 Ⅳ-4〉 독일 보험세와 소방세 적용세율 연혁

(단위: %)

적용연도	보험세(표준세율)	소방세(표준세율)
1996~2001년	15	8
2002~2006년	16	8
2007~2009년	19	8
2010~현재	19	19

자료: GDV, *Statistical Yearbook of German Insurance 2018*, 2018, p. 27.

□ (면세) 생명보험, 재보험, 사회보장보험 등과 관련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세 면세가 적용됨
○ 재보험
○ 공법에 따른 보험
- (유족)연금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공법 기관의 단체(associations of public-law bodies)가 가입한 보험
-「사회보장법」 제7권에 따른 상해보험
-「사회보장법」 제3권에 따른 고용보험과「비용보상법」에 근거한 보험
-「퇴직연금법(Occupation pensions act of 19 December 1974)」의 제1장

150) GDV, *Statistical Yearbook of German Insurance 2018*, 2018, p. 27.

제4부에 기초한 보험

○ 생존(survival), 질병(sickness), 요양간호부양(nursing care dependency), 직업능력상실(occupational incapacity) 또는 소득감소, 노령, 사망의 경우 자본, 연금, 기타 지급액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보험
- 상해보험, 책임보험, 기타 손해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단체임금협약(collective wage agreement) 당사자가 설정한 임금균등화기금(a wage equalization fund)으로 지급하는 비용

○ 파업, 폐쇄, 징계 조치의 경우 전문협회로부터 법적 보호나 지원을 제공하는 「보험법」 제1조에 따른 공동계약

○ 국제 운송 재화에 대한 운송보험, 전쟁위험보험, 손해보험(책임보험 제외)

○ 기타
- 국가 외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 계약자의 보험(단, 상호주의인 경우에 한함)
- 축산보험(피보험액 한도 4천유로 이하)
- 공동사업 참여자에 부과하는 특정 수수료
- 화재지원사단(Brandunterstützungsverine)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청구에 대해 부과되는 기여금(5,500유로 한도)

〈표 Ⅳ-5〉 보험 유형별 독일 보험세·소방세의 적용세율 및 면세

(단위: %)

보험 또는 위험	보험세	소방세
화재 보험, 화재로 인한 사업 중단	22 (프리미엄의 60%에 대해)	22 (보험 프리미엄의 40%에 대해)
주거용 건물 보험	19 (보험 프리미엄의 86%에 대해)	19 (보험 프리미엄의 14%에 대해)
주택 가재도구 보험	19 (보험 프리미엄의 85%에 대해)	19 (보험 프리미엄의 15%에 대해)
사적 상해보험	19	-
사적 상해보험(환급형)	3.8	

〈표 Ⅳ-5〉의 계속

보험 또는 위험	보험세	소방세
독일 내 운송 재화 국제 운송 재화	19 면세	-
해양 선체 보험	3	-
우박보험과 관련 농업보험	각 보험기간에 대한 피보험액의 0.3	-
가축보험(피보험금액 4천유로 초과)	19	-
건강, 생명, 연금보험	면세	-
기타	19	-

자료: 독일「보험세법」제5조, 제6조; 독일「소방세법」제3조, 제4조; 독일 국세청, "Information un Insurance Tax and Fire Protection Tax for insurers established in the European Economic Area," https://www.bzst.de/SharedDocs/Downloads/EN/Insurance_Tax_Fire_Protection_Tax/EU_EEA_Insurers.pdf?__blob=publicationFile&v=4, 검색일자: 2020. 8. 19.

□ (납세의무자·납부의무자)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tax debtor)는 보험계약자(policyholder)이고, 납부의무자(tax payment debtor)는 보험사(the insurer)임[151]

○ 그러나 EU 또는 유럽경제지역에 보험사의 거소, 등록사무소, 고정사업장이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프리미엄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보험 에이전트, 세금납부 위임을 받은 세무 대리인이 납부의무자가 됨

- 보험사, 보험 에이전트 모두 EU나 유럽경제지역에 거소, 등록사무소, 고정사업장이 소재하지 않는 경우 보험 계약자가 납부의무자임

○ 위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험사, 보험 프리미엄을 수령받는 다른 자,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다른 이의 보험계약에 의해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the insured)가 납부의무자가 됨

○ 납세의무자, 납부의무자, 기타 모든 의무 당사자는 보험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

□ (조세행정) 납부의무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보험세 신고·납부

151) 독일「보험세법」제7조 제1항; 제2항

의무를 이행해야 함[152]

○ 보험세는 매월(the calender month) 신고해야 하지만, 직전 역년 기간의 보험세 총액이 6천유로(또는 1천유로) 미만인 경우 분기별 신고(또는 역년 신고)가 허용됨

○ 보험계약자가 납부의무자인 경우에는 보험 프리미엄을 지불한 달의 말일에서 15일 이내 보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함

○ 보험 프리미엄이 납부된 달의 말일에서 15일 이내 「보험세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세무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3) 세수 현황

□ 2018년 기준 독일 보험세 수입은 약 13억 7천유로이며 매년 3~4%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소방세 수입은 2018년 기준 4억 6,700유로로 매년 1~3%의 범위에서 증가됨

[그림 Ⅳ-3] 독일 보험세와 소방세 수입 현황

(단위: 백만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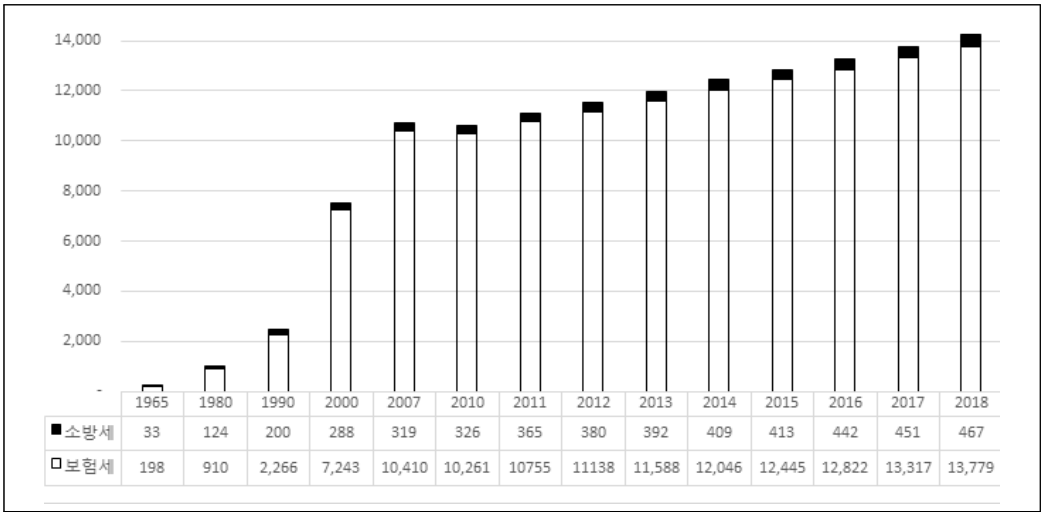

	1965	1980	1990	2000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방세	33	124	200	288	319	326	365	380	392	409	413	442	451	467
□보험세	198	910	2,266	7,243	10,410	10,261	10755	11138	11,588	12,046	12,445	12,822	13,317	13,779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 검색일자: 2020. 8. 19.

152) 독일 「보험세법」 제8조

□ 2018년 기준 독일 보험세와 소방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이며, 최근 5년 평균 1.1276%의 비중을 보임

[그림 Ⅳ-4] 전체 세수 대비 독일 보험세와 소방세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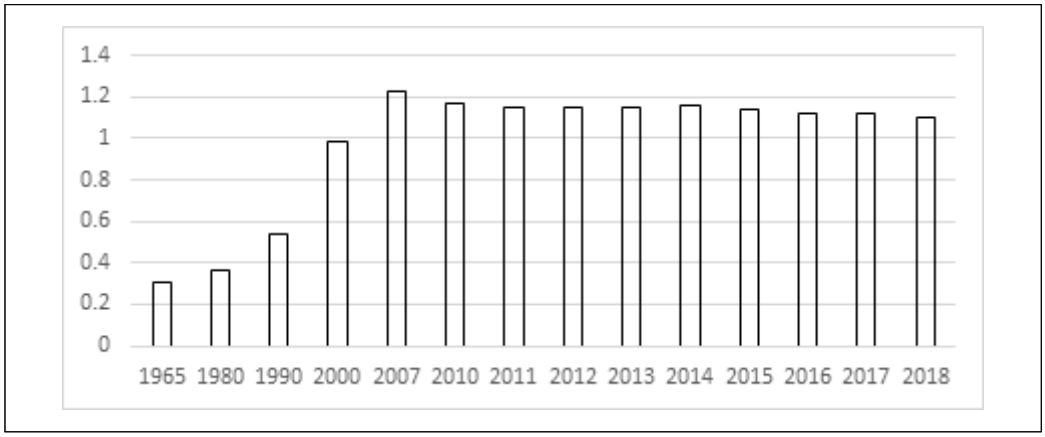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 검색일자: 2020. 8. 19.

4. 호주

가. 부가가치세

1) 개요

□ 호주는 2000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연방정부 도매판매세(Wholesale Tax)와 주정부의 9종의 간접세를 통폐합하여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이하 'GST'라 칭함)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153]

153) GST 도입에 대한 개혁 패키지의 일환으로 숙박세, 금융기관세 등 지방정부의 세금 및 부과금은 단계적으로 폐지되도록 설계하였음(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 -호주편-』, 한국조세연구원, 2012, p. 201.

○ (의의) GST는 최종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됨

○ (과세표준 및 세율) GST 등록사업자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GST를 납부함

○ (영세율) 수출, 건강 및 의료, 교육 및 보육, 식료품, 자선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국제운송 및 여행 등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154]

○ (면세) 금융용역, 주거용 주택의 임대, 주택의 판매 등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155]

- 금융용역 및 이에 따른 부수적인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75%에 대하여 '경감된 매입세액공제(reduced credit acquisitions)'를 적용받을 수 있음[156]
- 다만 금융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보험계리용역 등 정보 및 자문을 포함한 전문서비스에 대하여는 과세함[157]

2) 보험용역에 대한 호주 부가가치세 적용

□ 호주는 2000년 7월 1일부터 계약이나 법률상 손실, 손해, 상해, 위험에 대한 보

⒜ 숙박세(Bed tax): 숙박비에 부과하는 세금
⒝ 금융기관세(Financial institution duty): 금융기관 계좌로의 입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정부 세목으로, 세율은 각 주의 규정에 따름
⒞ 인지세(Stamp duty): 유가증권거래
⒟ 은행이용세(Bank account debits tax): 금융기관세와 마찬가지로 주세이며, 수표인출 기능을 갖는 계좌로부터의 인출액 전체에 대하여 부과함
⒠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Conveyancing duty)
⒡ 사업 관련 인지세(Business stamp duty): 대출계약, 할부구매계약, 월세계약, 리스, 양도증서, 수표, 약속어음 등

154)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Division 38
155)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Division 40
156) 호주 「부가가치세 규정」(GST Regulations 2019) Section 70-5
157) 호주 「부가가치세 규정」(GST Regulations 2019) Section 40-5.12

험계약 등 손해보험용역에 대하여 GST를 과세함

○ 정책적 목적이나 가치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모든 보험 유형에 대하여 과세하지는 않음

- 세 가지 보험유형에 따라 과세, 영세율,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158)]

○ 보험용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역(insurance related service) 중 보험계리 용역 등 정보 및 자문을 포함한 전문서비스에 대하여는 과세함

□ 보험에 대한 GST 과세체계는 1999년 A New Tax System(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이하 'GST Act')의 Division 78에 규정되어 있음

○ 보험에 대한 GST 과세체계는 기본적으로 ① 보험료 납입과 ②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하 '정산(settlement)'이라 칭함)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 나뉨

- 보험료 납입 시에는 GST 일반규정을 적용하고,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시에는 Division 78에 특례를 두어 여러 유형의 조정 체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Division 78의 보험에 대한 특례규정은 보험사가 제공한 서비스의 가치(value)에 대하여 GST가 과세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159)]

- 보험서비스의 부가가치는 보험료 전부에 대하여 GST를 부과하고 추후 보험금 지급 시 감소조정(decreasing adjustment)[160)] 방식을 이용하여 보험사가 납부할 GST를 감소시킴으로써 측정됨

□ 즉 호주의 보험에 대한 GST 과세방식은 납입한 보험료 총액과 지급한 보험금 총액 사이의 마진(margin)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금흐름방식(cash flow method)에 기초하고 있음

○ GST는 보험회사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어야 하는바, 이는 징수된 보험료

158) 호주 재무부, "GST and general insurance,"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19-03/4gst.pdf, 검색일자: 2020. 6. 24.

159) GSTR 2006/10

160) GST 조정(adjustment)이란 GST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납부할 GST를 직접 조정하는 것으로 감소조정(decreasing adjustment)과 증가조정(increasing adjustment)이 있음

금액과 지급된 보험금의 차이로서 이는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에 해당함

가) 도입과정

□ 보험에 대한 GST 과세체계는 호주 보험업계의 도움을 받아 재무부가 개발하였으며, Division 78은 한 번의 중요한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기본적인 개념체계는 유지되고 있음

○ Division 78 원안에서는 과세대상 보험 공급 시 GST 과세방식에 대하여 뉴질랜드와 동일한 접근법을 채택하였음

- 뉴질랜드와 호주의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보험의 공급을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의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마진(margin)에 과세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음

○ 다음에서는 보험에 대한 GST 과세체계 도입 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원안과 수정안을 비교하여 설명함

(1) Original Division 78 of the GST Act

□ 보험사는 손해보험증권을 발행할 때 납입보험료에 대한 GST를 호주 과세당국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보험사의 순 GST는 피보험자의 사업자등록 및 매입세액공제 청구자격 여부에 따라 달라짐

□ 먼저 피보험자가 등록되어 있고 매입세액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금으로 인한 전체 GST 세수는 0임

○ 보험료 납입 단계에서는 보험사의 GST 납부세액과 피보험자의 매입세액공제액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GST 부담세액은 없게 됨

○ 추후 정산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등록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공급에 대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함

○ 따라서 피보험자는 지급된 보험금의 1/11에 해당하는 GST를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며 보험사는 지급된 보험금 관련 GST를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다음으로 피보험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미등록자이거나 최종소비자일 때 순 GST는 납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의 차이에 대하여 과세한 결과가 됨

○ 보험금 납입단계에서는 GST는 납입보험료 전부에 대하여 과세됨

- 이는 피보험자가 미등록자이거나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보험료로 납부한 GST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임

○ 추후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보험사 정산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공급에 대한 대가, 즉 공제받을 수 있는 취득(creditable acquisition)[161]으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액의 1/11에 상당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납입보험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보험금 지급액을 과세대상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간주하는 것은 GST를 보험사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냄

○ 다만 동 규정은 피보험자에 대한 현금지급(cash payouts)에만 적용됨[162]

○ 원안에 대한 예시는 [그림 Ⅳ-5]에서 제시하고 있음

□ [그림 Ⅳ-5]에서 피보험자가 전부 과세대상 등록사업자일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보험료 납입 시에는 보험사는 GST 50호주달러(=550호주달러의 1/11)를 과세당국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

161) - 공제받을 수 있는 목적(creditable purpose)을 위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취득한 경우
- 과세대상 공급일 경우
- 공급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경우
- 사업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

162) (1)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정산(settlement)하는 과정에서 교체나 수리서비스와 같은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취득한 경우, 보험사는 일반적인 GST 규칙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하게 됨
(2) 또한 피보험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후의 이전(transfer)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았음

○ 피보험자는 동 금액 50호주달러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
○ 보험료 납입 시 전체 GST 세수는 0호주달러(=GST 50−ITC 50)임

□ 추후 보험금 정산 시 보험사는 GST를 포함한 220호주달러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고, 피보험자는 간주공급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GST 20호주달러(=220호주달러의 1/11)를 과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함
○ 이때 보험사는 GST 20호주달러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
○ 또한 피보험자는 수리서비스를 공급한 수리업체에 GST를 포함한 공급대가 220호주달러를 지급하고, 동 GST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
- 수리업체는 20호주달러에 대하여 GST를 납부하여야 함
○ 보험금 지급 시 전체 GST 세수는 0호주달러(=GST 20+20−ITC 20+20)임

□ 다음으로 [그림 Ⅳ-5]에서 피보험자가 최종소비자이거나 매입세액공제 자격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보험료 납입 시에는 보험사는 동일하게 GST 50호주달러(=550호주달러의 1/11)를 과세당국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 피보험자가 최종소비자(또는 미등록사업자)일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음
○ 보험료 납입 시 전체 GST 세수는 50호주달러(=GST 50−ITC 0)임

□ 추후 보험금 정산 시 보험사는 GST를 포함한 220호주달러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고, 피보험자는 최종소비자이므로 GST를 납부할 의무는 없음
○ 이때 보험사는 GST 20호주달러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
○ 또한 피보험자는 수리서비스를 공급한 수리업체에 GST를 포함한 공급대가 220호주달러를 지급하나, 동 GST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자격은 없음
- 수리업체는 20호주달러에 대하여 GST를 납부하여야 함
○ 보험금 지급 시 전체 GST 세수는 0호주달러(=GST 20−ITC 20)임

[그림 Ⅳ-5] 호주 피보험자 유형별 GST 과세체계(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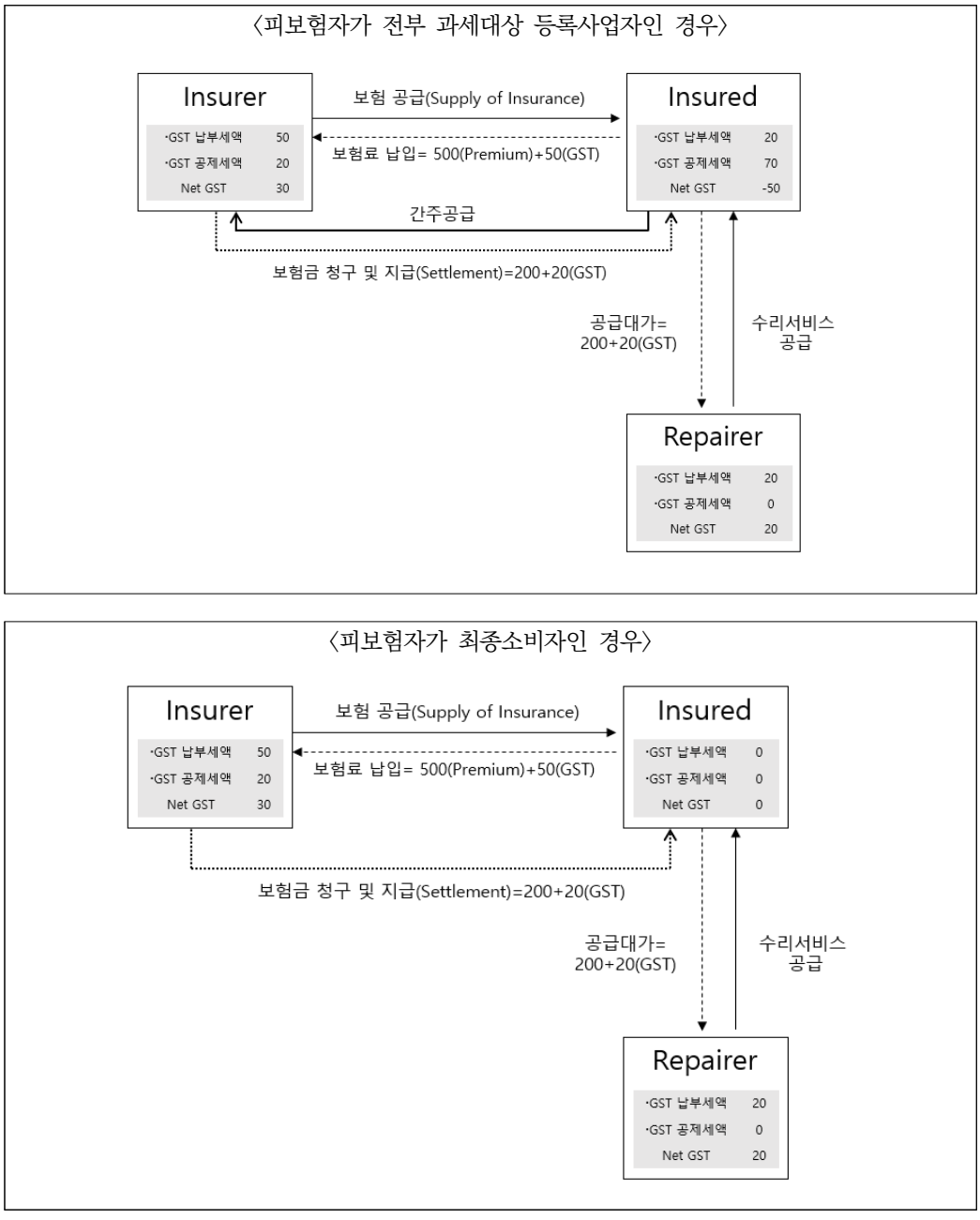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Amended Division 78 treatment

□ Division 78의 수정안에서는 기본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정적인 단순성(administrative simplicity)을 추구하기 위하여 감소조정 메커니즘(decreasing adjustment mechanism, DAM)을 적용하였음

○ 납입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액의 마진(margin)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점은 원안과 동일함

○ 수정된 Division 78의 주요 변경사항은 등록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더 이상 GST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보험사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임

○ 대신 보험금으로 지급된 GST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최종소비자이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액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순 GST 납부세액을 감소하는 조정을 할 수 있음

□ 원안과 수정안은 동일한 세부담 결과를 보여주나 등록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시 GST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개정안은 등록된 피보험자에게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게 됨

○ 수정안에 대한 예시는 [그림 Ⅳ-6]에서 제시하고 있음

□ [그림 Ⅳ-6]에서 먼저 피보험자가 전부 과세대상 등록사업자일 경우를 살펴보면, 보험료 납입 시에는 보험사는 GST 50호주달러(=550호주달러의 1/11)를 과세당국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 피보험자는 동 금액 50호주달러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

○ 보험료 납입 시 전체 GST 세수는 0호주달러(=GST 50−ITC 50)임

□ 추후 보험금 정산 시 보험사는 GST를 포함하지 않은 200호주달러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게 되고, 원안과는 달리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피보험자는 GST를 납

부할 의무가 없음

○ 이때 보험사도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음

○ 또한 피보험자는 수리서비스를 공급한 수리업체에 GST를 포함한 공급대가 220호주달러를 지급하고, 동 GST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

- 피보험자가 전부 매입세액공제 대상자일 경우 보험사의 감소조정은 없음
- 수리업체는 20호주달러에 대하여 GST를 납부하여야 함

○ 보험금 지급 시 전체 GST 세수는 0호주달러(=GST 20−ITC 20)임

□ 다음으로 [그림 Ⅳ-6]에서 피보험자가 최종소비자이거나 매입세액공제 자격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보험료 납입 시에는 보험사는 동일하게 GST 50호주달러(=550호주달러의 1/11)를 과세당국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 피보험자가 최종소비자(또는 미등록사업자)일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음

○ 보험료 납입 시 전체 GST 세수는 50호주달러(=GST 50−ITC 0)임

□ 추후 보험금 정산 시 보험사는 GST를 포함한 220호주달러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최종소비자이므로 GST를 납부할 의무는 없음

○ 이때 보험사는 GST 20호주달러(=1/11×220×(1−0))[163]에 대하여 감소조정(decreasing adjustment)을 통하여 순 GST를 감소시킴

○ 또한 피보험자는 수리서비스를 공급한 수리업체에 GST를 포함한 공급대가 220호주달러를 지급하나, 동 GST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자격은 없음

- 수리업체는 20호주달러에 대하여 GST를 납부하여야 함

○ 보험금 지급 시 전체 GST 세수는 0호주달러(=GST 20−DA 20)임

163) 계산방식은 pp. 83~88 '다) 납부세액의 계산' 참조

[그림 Ⅳ-6] 호주 피보험자 유형별 GST 과세체계(수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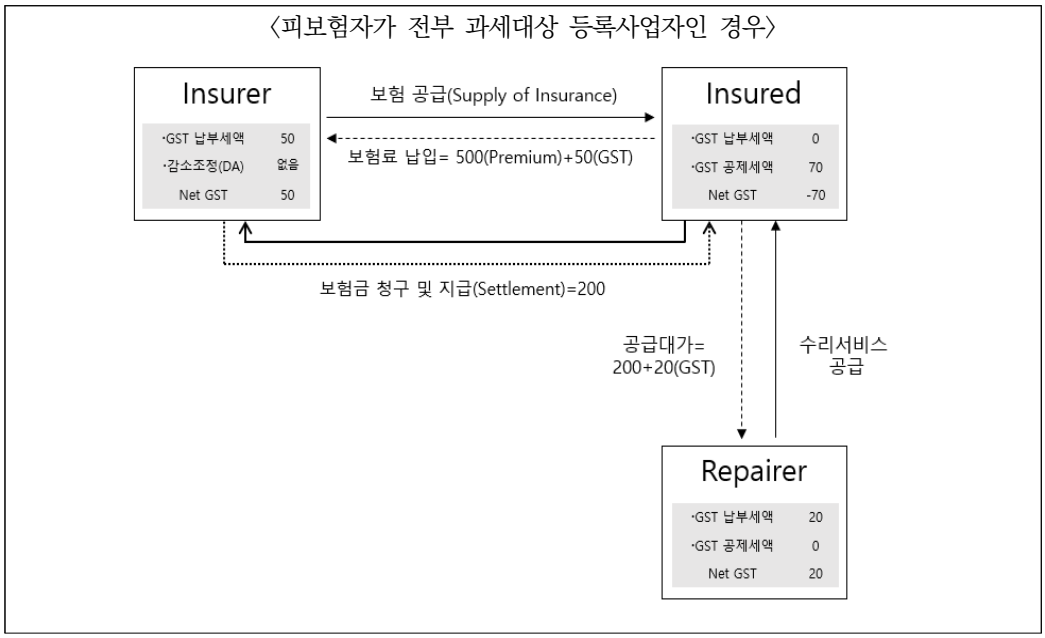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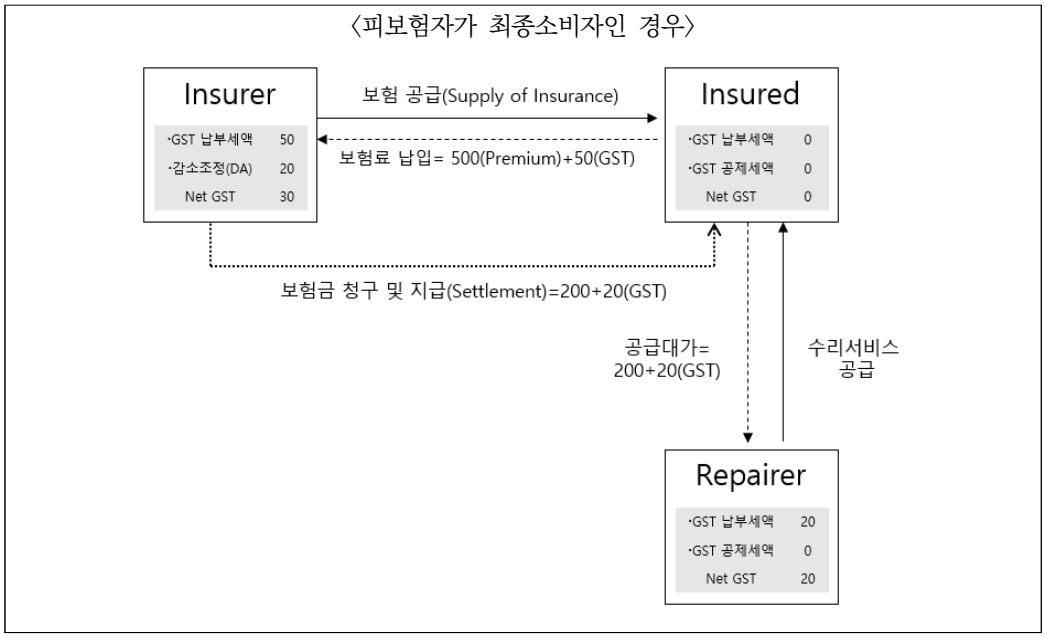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나) 과세요건

□ (과세대상) 호주의 「GST Act」상 보험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생명보험(life insurance)과 민간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 이외의 손해보험(general insurance)에 대하여는 전부(fully) 과세하고 있음

○ 「GST Act」상 보험계약(insurance policy)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어떠한 종류의 손실, 손해, 상해 또는 위험에 대한 보험(또는 재보험)에 대한 계약을 의미함[164]

○ 생명보험은 면세임

- 생명보험은 저축의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융서비스와 동일한 과세방식으로 취급됨[165][166]
- 생명보험 관련 재보험도 면세대상임

○ 민간건강보험[167]은 「GST Act」상 건강서비스(health services)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영세율을 적용함

---

164)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Section 195-1

165) 호주 재무부, "GST and general insurance,"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19-03/4gst.pdf, 검색일자: 2020. 6. 24.

166) 금융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GST 규정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금융서비스 공급을 면세로 열거하고 있음(호주 「부가가치세 규정」(GST Regulations 2019) Section 40-5.09)
- 은행 업무 과정에서 호주 공인 입금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계좌
- 신용장을 포함한 부채, 신용 약정 또는 신용권
-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에 대한 청구 또는 모기지
- 규제 연금기금, 승인된 예금기금, 공동연금, 연금신탁 또는 공공부문 연금, 연금제도 또는 퇴직저축계좌
- 연금 또는 배당연금
- 생명보험사업 및 관련 재보험
- 보증
- 제3자와 체결한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배상
-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상품(특정 상황)과 관련하여 대여 구매 계약에 따른 크레딧
- 호주통화, 외국통화
- 유가증권
- 파생상품 등

167) Private Health Insurance Act 2007의 Division 121에 정의되어 있음

- 응급차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 보험도 영세율임[168]
- 다만 Section 38-55에 따른 재보험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영세율 적용대상 보험에는 여행보험과 상품의 국제운송물품 운송에 대한 보험[169]이 포함됨

□ (과세표준과 세율) 보험료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10%의 세율이 적용됨[170]

다) 납부세액의 계산

□ 본 보고서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insured entities)가 동일한 경우의 납부세액의 계산에 대하여 (1) 보험료 납입 시와 (2)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시로 구분하여 정리함

(1) 보험료 납입 시

□ 보험료 납입 시에는 GST 일반규정을 적용함

○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 시 GST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피보험자가 등록되어 있고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GST를 포함한 납입보험료의 1/11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다만 피보험자가 면세 매출거래(input-taxed sales you make)를 하거나 개인 또는 가정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음[171]

---

168)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Section 38-55
169)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Section 38-355
170)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Section 78-5
171) 호주 국세청, "GST and insurance,"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Your-industry/Financial-services-and-insurance/GST-and-insurance/, 검색일자: 2020. 6. 24

□ 보험사 및 등록사업자는 GST 신고 및 납부를 위하여 기업활동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진행기준(progressive) 또는 정기적(periodic) 공급[172]에 해당되며, 정기적인 보험료의 납입은 각각 별도의 공급으로 취급됨

○ 현금기준(cash basis)일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에 납입된 실제 보험료의 1/11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반면 발생주의 기준(accruals basis)일 경우에는 월 단위로 납입 시 각각 별도의 공급으로 취급됨

(2)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시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시에는 GST Division 78 특례규정을 적용함

○ 보험금 청구로 인한 정산은 보험계약을 기초로 하며, 일반적으로 실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짐[173]

○ 먼저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 시 또는 그 이전에 보험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비율을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음

- 매입세액공제비율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 정산 시 GST를 납부할 수 있음[174]

□ 피보험자가 보험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자격을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자격요

---

172) 진행기준 또는 주기적으로 취급되는 공급 및 취득 유형의 예는 다음과 같음
- 임대 계약(lease agreements)
- 월 단위로 지불되는 연간 구독(annual subscriptions paid on a monthly basis)
- 매월 납입되는 연간 보험(annual insurance which is paid monthly
- 재산 유지 계약(property maintenance agreements)

173) 호주 국세청, “Settlements,”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Your-industry/Financial-services-and-insurance/GST-and-insurance/?anchor=Settlements#Settlements, 검색일자: 2020. 7. 23.

174)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Section 78-50.

건을 과소 통지한 경우에는 보험자에 의한 지급 또는 공급은 피보험자에 의한 공급에 대한 대가로 취급됨[175]

○ 피보험자에 의해 이루어진 공급은 사업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산 또는 보험사가 지급 또는 공급할 때 과세대상 공급으로 취급됨[176]

○ 이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금 정산 시 GST를 납부할 수 있음

□ 보험금 청구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에 의해 이루어진 지급(payment)이나 공급(supply)은 취득(acquisition)에 대한 대가(consideration)가 아니므로 보험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177]

○ 이때 보험계약에 따른 정산 시 보험사에 의한 공급(supply)은 과세대상 공급(taxable supply)이 아님[178]

○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지급 또는 공급에 대하여 피보험자도 GST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가) 감소조정(decreasing adjustments)

□ 보험사는 보험계약(insurance policy)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시 (1) 화폐의 지급(a payment of money),[179] (2) 디지털 화폐로의 지급(a payment of digital currency), (3) 공급(a supply)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고 다음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감소조정(decreasing adjustments)을 함[180]

○ 보험사(insurer)에 의한 보험계약의 공급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과세대상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

175)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Section 78-50
176)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Subsection 78-50(3)
177)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Section 78-20, Section 78-45
178)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Section 78-25
179) 통화(currency), 약속어음(promissory notes), 통화로 사용 또는 유통되는 것, 우편환(money orders),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을 통하여 지급되는 것 등을 포함함
180)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Section 78-10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자격이 없는 경우
- 매입세액공제 자격은 주어졌으나 매입세액공제 금액이 과세대상 공급에 대한 보험사의 GST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부분매입세액 공제 대상자인 경우)

○ 보험사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목적(creditable purpose)으로 보험금을 정산한 경우

○ 보험사가 사업자로 등록되거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

○ 정산이 하나 이상의 공제받을 수 없는 보험사건(non-creditable insurance events)[181]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 보험금 청구가 발생한 기간에 대하여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감소조정 금액은 정산금액의 11분의 1임[182]

○ 즉 피보험자(Insured entities)가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는 감액조정을 받을 수 있음

□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매입세액공제액이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납부할 GST 미만(부분매입세액 공제 대상자)인 경우 보험사는 감소조정을 받을 수 있음[183]

○ 즉 피보험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 보험사의 감소조정금액이 감소함[184]

$$\text{감소조정액} = \frac{1}{11} \times \text{정산금액} \times (1 - \text{매입세액공제율})$$

○ 이는 부분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목적으로 보험증권을 취득한 경우에 발생함

---

181) 보험계약의 공급이 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를 말함
182)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Section 78-15
183)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Subparagraph 78-10(2)(b)(ii)
184)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Subsection 78-15(2)

□ 한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전부 받는 경우 보험사는 감소조정이 없음

〈표 Ⅳ-6〉 호주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에 의한 GST 감소조정

보험계약자의 매입세액공제 비율	산식
전액 매입세액 공제	없음
부분매입세액 공제	$\frac{1}{11}$×정산금액×(1－매입세액공제율)
매입세액 불공제	$\frac{1}{11}$×정산금액

자료: 저자 작성

□ 정산금액은 다음과 같음

$$\text{정산금액} = \text{지급금액(또는 GST가 포함된 시장가치)} \times \frac{11}{11 - \text{매입세액 공제율}}$$

(나) 증가조정(increasing adjustment)

□ 보험사(insurer)는 다음의 경우에 증가조정(increasing adjustment)을 하여야 하며, 증가조정 금액은 초과지급 금액의 1/11임[185]

○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에게 초과지급을 하는 경우[186]

○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정산 시 지급(payment) 또는 공급(supply)을 하는 경우

○ 보험사가 직접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취득(수입)을 보험금 정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85)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Section 78-18

186) 보험증권에 따른 초과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말하며,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함

□ 또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게 직접 지급한 초과지급액(Payment of an excess)은 보험사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음[187]

○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 이외의 자(예: 수리서비스 업체)에게 초과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초과금액을 취득(acquisition)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

- 지급받은 자가 보험사의 대리인(agent)이 아닌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세수 현황

□ 호주의 총징수실적(Total collections) 대비 주요 세목 비중을 살펴보면, 2017~2018년 기준 개인소득세 51.3%, 법인세 20.9%, GST 15.6%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7〉 호주 연도별 총징수실적 대비 주요 세목 비중

(단위: 백만호주달러, %)

연도	개인	비중	법인	비중	GST	비중	총징수실적
2008~09	115,699	46.3	56,111	22.5	41,538	16.6	249,853
2009~10	120,326	47.5	50,265	19.9	44,910	17.7	253,091
2010~11	133,079	47.7	61,691	22.1	46,007	16.5	279,062
2011~12	144,776	48.0	64,152	21.3	46,807	15.5	301,464
2012~13	154,883	49.6	64,530	20.7	48,447	15.5	312,391
2013~14	166,197	50.6	66,887	20.4	51,738	15.8	328,471
2014~15	177,587	51.2	68,420	19.7	54,575	15.7	346,881
2015~16	186,283	52.7	66,663	18.9	57,302	16.2	353,318
2016~17	192,076	51.2	75,665	20.2	60,659	16.2	375,217
2017~18	209,107	51.3	85,224	20.9	63,454	15.6	407,905

자료: ATO, "Table 2: Taxation liabilities by industry, 2017-18 income year," https://data.gov.au/data/dataset/23b8c299-a85b-4fc0-a07d-5ed14e23a103/resource/54952043-7fc2-463a-b189-9cf84779e961/download/ts18snapshot04allsummarytables.xlsx, 검색일자: 2020. 6. 10.

187)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Section 78-55

□ 호주의 산업별 GST 비중을 살펴보면, 2017~2018년도 기준으로 금융 및 보험서비스가 GST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로, 이는 금융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보험계리용역 등 정보 및 자문을 포함한 전문적 용역을 비롯하여 손해보험용역에 대해서도 GST를 과세하고 있는 데 기인함

○ 한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27.9%인 도매업이며, 이어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각각 21.3%, 14.0%임

〈표 Ⅳ-8〉 호주 산업별 총징수실적 대비 GST 비중(2017~2018년 기준)

(단위: 백만호주달러, %)

산업별	GST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216	-0.3
광업	-6,461	-10.2
제조업	6,596	10.4
전기, 가스, 수도 및 폐기물 서비스	1,787	2.8
건설업	8,888	14.0
도매업	17,718	27.9
소매업	5,939	9.4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	4,686	7.4
운수, 우편 및 창고업	3,931	6.2
정보미디어 및 통신업	2,397	3.8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	4,364	6.9
임대, 부동산서비스업	4,341	6.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541	21.3
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4,642	7.3
공공행정 및 안전	-12,981	-20.5
교육 및 훈련	-287	-0.5
의료 및 사회복지	-2,940	-4.6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382	2.2
기타 서비스	2,029	3.2
기타	-38	-0.1
소계	59,318	93.5

〈표 Ⅳ-8〉의 계속

산업별	GST	비중
국세청 소관분(Total ATO collections)	59,318	93.5
내무부 소관분(Department of Home Affairs External Link collections)	4,136	6.5
총징수실적(Total collections)	63,454	100.0

자료: ATO, "Table 2: Taxation liability by industry, 2017-18 income year," https://www.ato.gov.au/About-ATO/Research-and-statistics/In-detail/Taxation-statistics/Taxation-statistics-2017-18/?anchor=alltaxreturns#Table2, 검색일자: 2020. 6. 10.

□ 금융 및 보험서비스 세부 업종별 GST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7~2018년도 기준으로 건강 및 손해보험업이 3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이어서 금융 및 투자 지원 서비스업이 35.6%를 차지하였음

〈표 Ⅳ-9〉 호주 금융 및 보험서비스 세부 업종별 GST 신고 현황(2017~2018년 기준)

(단위: 건수, 백만호주달러, %)

세부 업종	신고 건수	매출 세액	매입 세액	수입에 대한 GST 납부유예 납부액	납부세액	비중
중앙은행	23	16.0	35.7	-	-19.7	-0.5
예탁 금융 중개업	2,294	8,609.8	8,465.6	7.2	151.4	3.5
예탁 외 금융업	1,487	599.0	537.1	0.0	61.9	1.4
금융 자산 투자업	13,959	3,355.8	2,976.2	51.0	430.7	9.9
생명보험	**109**	**306.2**	**300.4**	**-**	**5.8**	**0.1**
건강 및 손해보험	**1,323**	**5,072.6**	**3,423.6**	**-**	**1,649.0**	**37.8**
연금 기금업	63,447	634.8	831.6	-	-196.8	-4.5
금융 및 투자 지원 서비스업	41,996	5,263.4	3,799.6	91.4	1,555.2	35.6
보험 지원 서비스업	4,414	1,351.1	636.4	0.4	715.1	16.4
기타	1,638	32.6	21.7	-	11.0	0.3
합계	130,690	25,241	21,028	150	4,364	100.0

주: 1.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활동내역서(BAS), GST 연간 신고서 신고내역임 기준
2.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수입에 대한 GST 납부유예 납부액

자료: ATO, "Table 2: Taxation liabilities by industry, 2017-18 income year," https://data.gov.au/data/dataset/23b8c299-a85b-4fc0-a07d-5ed14e23a103/resource/54952043-7fc2-463a-b189-9cf84779e961/download/ts18snapshot04allsummarytables.xlsx, 검색일자: 2020. 6. 10.

나.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1) 개요

□ 호주는 지방정부(States and Territories)별로 보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로 인지세(Stamp Duty, SD)와 응급 및 소방서비스세(Eemergency & Fire Services Levy)를 부과하고 있음

□ 호주는 호주 수도 테리토리(ACT)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보험계약(insurance policies)에 대하여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납세의무자) 보험회사(insurer), 보험브로커(broker), 보험대리인(agent)은 일반적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보험사가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과세대상) 일반적으로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함

○ (과세표준) 인지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은 보험료(premium), 생명보험은 보험금(sum insured)임

-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보험에 대해 보험사에 지급한(paid to) 금액으로, 응급서비스세 및 GST가 포함될 수 있음

○ (세율)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유형(insurance type) 및 지방정부(States and Territories)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됨

- 생명보험에 대한 인지세율은 주로 보험금 구간별로 적용되며, 남호주(SA)주에서는 보험료의 1.5%를 적용함
- 손해보험에 대한 세율은 5~11%임

○ (면제) 일부 유형의 보험 및 보험사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음

- 모든 주에서 재보험(reinsurance), 민간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음
- 또한 비영리 및 자선단체 등에 대하여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음

- 빅토리아주(VIC)[188]에서는 2014년 7월 1일 이후로, 노던테리토리(NT)[189]에서는 2015년 7월 1일 이후로 생명보험에 대하여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음[190]
- 뉴사우스웨일스(NSW)에서는 피보험자가 소기업에 대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 감면대상인 경우 상업용 차량 및 항공보험 등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음
- 퀸즈랜드(QL)주에서는 다른 주와 다르게 산재보험 및 연금보험에 대하여 모두 과세하고 있음
- 태즈매니아(TAS)주에서는 총보험료(sum insured)가 200호주달러 이하의 생명보험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음

○ 호주 수도테리토리(ACT)에서는 조세개혁(tax reform)의 일환으로 2016년 7월 1일 이후로 인지세를 폐지하였음[191]

- 이전에는 손해보험, 생명보험에 대하여 각각 10%, 5%를 부과하였음

188) 호주 빅토리아주 세입청, “History of state taxation,” https://www.sro.vic.gov.au/history-state-taxation, 검색일자: 2020. 7. 2.
189) 호주 노던테리토리 지방정부, “Examples of duty and rates,” https://nt.gov.au/employ/money-and-taxes/taxes,-royalties-and-grants/stamp-duty/examples-of-duty-and-rates, 검색일자: 2020. 7. 30.
190) 다만 생명보험에 대한 추가조항(rider)에 대하여는 과세함
191) 호주 수도테리토리 세입청, “Tax reform,” https://www.revenue.act.gov.au/tax-reform, 검색일자: 2020. 7. 30.

〈표 Ⅳ-10〉 호주 보험유형별 인지세 과세 여부 및 세율(2020년 8월 기준)

구분	과세 여부 및 세율					면제 (exemption)	비고
	생명보험[1]	연금보험	손해보험	제3자보험	산재보험		
NSW	-AUD 0~2,000: AUD 1.00 -AUD2,000초과 시: AUD1.00+초과하는 금액 AUD 200당 AUD0.2	X	5%, 9%	X	X	-연금보험, 산재보험, 자동차에 대한 제3자 보험, 해상보험, 화주보험, 민간건강보험 -비영리단체 -소기업면제 등	-정기·단체정기/외상·장애보험은 첫 해 보험료의 5%
VIC	X	X	10%	10%	X	-생명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재보험, 민간건강보험, 운송보험, 선체보험 -2017년 7월 1일부터 농작물 및 가죽, 농기계보험 면제	-2014년 7월 1일 생명보험 제외 -생명보험에 추가조항 rider) 있는 경우 과세
QL	-AUD 0~2,000: 0.05% -AUD 2,000초과 시: 0.05% + 초과하는 금액의 0.10%	-AUD 0-2,000: 0.05% -AUD 2,000초과 시: 0.05% + 초과하는 금액의 0.10%	9%	0.1 AUD	5%	-해상보험, 운송보험, 건강보험, 재보험 -자선 및 비영리단체	-정기보험은 첫 해 보험료의 5%
SA[1]	보험료의 1.5%	X	11%	11%	X	-재보험, 산재보험, 민간건강보험, 선체보험, 농작물보험, 연금보험	
WA	X	X	10%	10%	X	-산재보험, 재보험, 운송보험, 선체보험, 민간건강보험, 생명보험	-2004년 7월 1일 생명보험 제외
TAS	-AUD 0~2,000: AUD 1.00 -AUD 2,000초과 시: AUD1.00+초과하는 금액 AUD 200당 AUD 0.2	50AUD	10%	X	X	-산재보험, 운송보험, 재보험, 공공책임보험 등 -총보험료(sum insured)가 200호주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	-2012년 10월 1일 이전 손해보험 세율은 8%임 -정기보험은 첫 해 보험료의 5% -모기지보험은 총보험료의 2%

〈표 Ⅳ-10〉의 계속

구분	과세 여부 및 세율					면제 (exemption)	비고
	생명보험[1)]	연금보험	손해 보험	제3자 보험	산재 보험		
NT	X	X	10%	10%	X	-산재보험, 선체보험, 운송보험, 민간건강보험, 운임보험,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	-2015년 7월 1일 제외 -생명보험에 추가조항 rider) 있는 경우 과세
ACT	폐지						-2016년 7월 1일 폐지

주: 1) SA를 제외하고는 보험금액(sum insured) 기준

자료: 1) 뉴사우스웨일스(NSW), “Types of insurance,” https://www.revenue.nsw.gov.au/taxes-duties-levies-royalties/insurance-duty, 검색일자: 2020. 8. 14.
2) 빅토리아(VIC), “Insurance,” https://www.sro.vic.gov.au/insurance, 검색일자: 2020. 8. 14.
3) 퀸즈랜드(QL), “Insurance duty rates”, https://www.business.qld.gov.au/industries/service-industries-professionals/professional-financial-services/insurance-duty/calculating/rates, 검색일자: 2020. 8. 14.
4) 남호주(SA), “Stamp Duty on Insurance,” https://www.revenuesa.sa.gov.au/taxes-and-duties/stamp-duties/insurance, 검색일자: 2020. 8. 14.
5) 서호주(WA), “Self-assess and pay insurance duty,” https://www.wa.gov.au/service/financial-management/taxation-and-duty/self-assess-and-pay-insurance-duty, 검색일자: 2020. 8. 14.
6) 태즈매니아(TAS), “Insurance duty,” https://www.sro.tas.gov.au/insurance-duty, 검색일자: 2020. 8. 14.
7) 노던테리토리(NT), 「Examples of duty and rates」, https://nt.gov.au/employ/money-and-taxes/taxes,-royalties-and-grants/stamp-duty/examples-of-duty-and-rates, 검색일자: 2020. 8. 14.
8) 호주 수도테리토리(ACT), “Tax reform,” https://www.revenue.act.gov.au/tax-reform, 검색일자: 2020. 8. 14.

□ 한편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NSW)주와 태즈매니아(TAS)주에서는 보험사에 각각 응급서비스세(Eemergency Services Levy, ESL)와 소방서비스세(Fire Service levy)를 부과하고 있음

○ 빅토리아주에서는 2013년 7월 이후로 보험사에 부과하는 대신 화재 및 응급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로 대체하였음[192]

□ 이하에서는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이하 NSW)의 인지세와 응급서비스세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리함

2) 인지세(Stamp Duty, SD)[193]

□ (납세의무자) NSW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보험사(insurer)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보험사는(insurer)는 생명보험을 발행하는 생명보험사(life company)와 손해보험사(general insurer)임

- 손해보험사(general insurer)란 손해보험을 발행하고, 보험중개인(insurance intermediary) 이외의 Insurance Act 1973에 따라 손해보험사로서 인가받은 자(person)를 말함

□ (과세대상) NSW에서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대하여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손해보험에는 자동차, 주택보험(home and contents insurance)이 포함됨

□ 다음의 보험에 대하여는 인지세가 면제됨

---

192) 빅토리아주 세입청, “Fire Services Property Levy,” https://www.sro.vic.gov.au/fire-services-property-levy, 검색일자: 2020. 8. 21.

193) 뉴사우스웨일스주 세입청, “Insurance duty,” https://www.revenue.nsw.gov.au/taxes-duties-levies-royalties/insurance-duty, 검색일자: 2020. 7. 27.

○ 비영리 및 자선단체(Non-profit and charitable organisations)
- 자선, 자비, 자선 또는 애국적인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
- 빈곤 구제, 교육 촉진, 국방 또는 기타 애국적 대상 또는 자선이라고 간주하는 기타 목적을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사회 또는 기관

○ 농작물 및 가축보험(Crop and livestock insurance)
-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농작물 및 가축보험에 2.5%의 세율로 인지세가 적용되었음

○ 대출 모기지보험(Lenders mortgage insurance, LMI)
- 2017년 7월 1일 이후에 면제됨

○ 연금 수탁자(Trustees of superannuation plans)
- 퇴직연금의 수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단체연금투자증권으로서 퇴직연금 가입자 2인 이상을 위한 보험은 면제됨

○ 뉴사우스웨일스에 위치한 크라운(Crown)의 재산을 보장하는 보험

○ 소기업 면제(Small business exemption)[194]
- 피보험자가 CGT(capital gains tax) 소기업 대상[195]인 경우 다음의 보험에 대하여 면제함
  • 상업용 차량보험(commercial vehicle insurance)
  • 상업용 항공보험(commercial aviation insurance)
  • 전문면책배상보험(occupational indemnity insurance)
  • 제품책임보험(product and public liability insurance)

○ 이 외의 면제되는 보험
- 병원 또는 의료혜택 보험(hospital or medical benefits insurance)

---

194) 뉴사우스웨일스주 세입청, “Small business exemption,” https://www.revenue.nsw.gov.au/taxes-duties-levies-royalties/insurance-duty/small-business-exemption, 검색일자: 2020. 8. 13.

195) CGT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기업은 사업을 수행할 것
- 직전 연도 총매출액이 200만호주달러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 총매출액이 200만호주달러 미만일 경우

- 산재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
- 자동차에 대한 제3자의무보험(compulsory third party for motor vehicles)
- 선박보험(vessel insurance) 및 화물보험(cargo insurance)
- 보험금액이 12만 4천호주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융자에 대한 중복보험(redundancy insurance)
- 재보험(reinsurance)
- 연금(annuity)

□ (과세표준과 세율) NSW의 인지세는 보험을 설정하기 위해 보험회사, 보험중개인 또는 보험대리인이 받은(received) 보험료에 대하여 부과되며, 보험료란 보험에 대해 보험사에게 지불한 총액으로 여기에는 소방 및 응급서비스세, GST가 포함됨

○ 손해보험에 대한 세율은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장애소득보험 등에는 5%를 적용하며, 이외의 손해보험에는 보험에는 9%를 적용함
  - 농작물보험 및 가축보험은 2018년 1월 1일 이후로 면제임

○ 생명보험의 세율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바, 2천호주달러까지는 1호주달러가 적용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호주달러당 0.2호주달러를 적용함
  - 이 외의 정기보험 등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됨

○ 보험료가 반환되었을 때 인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표 Ⅳ-11〉 호주 손해보험 유형별 인지세율

유형	세부 내용	세율
A	- B와 C 유형 이외의 손해보험	보험료의 9%
B	- 자동차보험(motor vehicle insurance) - 항공보험(aviation insurance) - 장애소득보험(disability income insurance) - 전문면책배상보험(occupational indemnity insurance) - 입원 및 부수적 건강급부보험(hospital and ancillary health benefits insurance)	보험료의 5%
C	- 농작물보험(crop insurance) - 가축보험(livestock insurance)	-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보험료의 2.5% - 2018년 1월 1일 이후로 면제

자료: 뉴사우스웨일스주 세입청, “Types of insurance”, https://www.revenue.nsw.gov.au/taxes-duties-levies-royalties/insurance-duty/types-of-insurance, 검색일자: 2020. 7. 30.

〈표 Ⅳ-12〉 호주 생명보험 유형별 인지세율

유형	세율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0~2천호주달러: 1호주달러 - 2천호주달러 초과 시: 1호주달러 + 초과하는 금액 200호주달러당 0.2호주달러
임시 및 정기보험 (temporary or term insurance)	- 첫 해 보험료의 5%
단체정기보험 (group term insurance)	- 첫 해 보험료의 5% - 이후 연도에는 납부할 보험료의 5%
외상 또는 장애보험 (Trauma or disability insurance)	- 보험료의 5%

자료: 뉴사우스웨일스주 세입청, “Types of insurance”, https://www.revenue.nsw.gov.au/taxes-duties-levies-royalties/insurance-duty/types-of-insurance, 검색일자: 2020. 7. 30.

□ (신고 및 납부방법) NSW의 손해 및 생명보험사는 매월 21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와 가산세(penalty tax)가 부과됨

3) 응급서비스세(Eemergency Services Levy, ESL)[196]

□ (납세의무자) NSW에서는 「Emergency Services Levy Act 2017」에 따라 응급서비스세(Eemergency Services Levy, ESL)를 외국 보험사 및 외국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 손해 및 생명 보험사[197]에게 부과하고 있음

○ 매년 화재 및 응급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NSW에 있는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한 손해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보험사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 (과세표준) ESL의 과세표준은 보험자가 받거나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보험료(total premiums)이며, 보험증권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GST와 인지세를 포함하지 않음

□ (세율) ESL은 다음과 같이 Schedule 1에 명시된 보험증권의 유형에 따라 1~80%의 요율을 달리 적용함

○ 결과적 손실을 포함하되 Schedule 1에 명시된 보험 이외의 보험: 80%
○ 주거용 건물 및 주택 소유자: 50%
○ 개인 보석 및 의류, 개인소지품 및 예술작품: 10%
○ 자동차 및 오토바이: 2.5%
○ 해상 및 수하물: 1%
○ 작물 재배에 대한 화재 및 우박: 1%
○ 가축: 1%
○ 항공기: 없음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험은 해당 없음
  - 도난으로 인한 손실

---

196) 뉴사우스웨일스주 법령사이트, “Emergency Services Levy Act 2017 No 32”, https://www.legislation.nsw.gov.au/#/view/act/2017/32, 검색일자: 2020. 8. 3.
197) 등록 보험사가 아닌 자와 함께 피보험자로서 손해보험을 취득, 갱신하는 자 등 피보험자가 납부하는 경우도 있음

- 판유리(Plate glass)
- 기계적 고장 및 기계적 고장으로 인한 결과적 손실
- 보일러 및 압력 용기의 폭발 또는 붕괴-화재 이외의 손상으로 제한
- 내재적 또는 잠재적 결함-설계 결함, 제조 기술 또는 재료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 및 결과적 손실에 국한되지만 화재로 인한 손상 또는 결과적 손실은 제외

□ (신고 및 납부방법) 보험사(외국보험사 및 외국인 보험계약자 포함)는 매년 9월 30일까지 전년도 회계연도에 납입된 보험료 및 응급서비스세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납부액은 「응급서비스세법(Emergency Services Levy Act 2017)」에 따라 결정되어 통지함

4) 세수 현황

□ 지방정부 세수실적에서 보험 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19년도 기준 6.0%로, 2012~2013년도 7.3% 대비 1.3%p 감소함

○ 한편 2018~2019년 기준으로 보험 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호주(SA)주가 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주 수도테리토리(ACT)가 2.2%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Ⅳ-13〉 호주 연도별 주 및 지방정부 보험 관련 세수 비중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뉴사우스웨일스	보험세수[1)]	2,141	2,279	2,312	2,438	2,505	2,508	2,612
	주세수실적	25,719	27,816	30,350	33,426	35,150	35,661	36,062
	보험세수 비중	8.3	8.2	7.6	7.3	7.1	7.0	7.2
빅토리아	보험세수	1,628	1,067	1,088	1,151	1,218	1,299	1,373
	주세수실적	19,519	21,156	22,904	24,776	26,533	28,254	29,191
	보험세수 비중	8.3	5.0	4.8	4.6	4.6	4.6	4.7
퀸즈랜드	보험세수	670	819	875	866	905	944	1,003
	주세수실적	14,080	15,135	16,043	16,168	16,708	17,195	18,293
	보험세수 비중	4.8	5.4	5.5	5.4	5.4	5.5	5.5
남호주	보험세수	429	435	443	462	465	460	487
	주세수실적	5,350	5,412	5,765	5,871	5,935	6,130	6,207
	보험세수 비중	8.0	8.0	7.7	7.9	7.8	7.5	7.8
호주	보험세수	576	611	627	615	661	645	662
	주세수실적	9,885	10,446	10,784	11,150	10,757	10,839	11,005
	보험세수 비중	5.8	5.8	5.8	5.5	6.1	6.0	6.0
태즈메니아	보험세수	87	98	99	100	104	110	119
	주세수실적	1,247	1,294	1,360	1,428	1,477	1,547	1,604
	보험세수 비중	7.0	7.6	7.3	7.0	7.0	7.1	7.4
노던테리토리	보험세수	42	44	45	41	43	46	50
	주세수실적	588	671	828	729	737	770	801
	보험세수 비중	7.1	6.6	5.4	5.6	5.8	6.0	6.2
호주 수도테리토리	보험세수	65	52	54	44	42	43	43
	주세수실적	1,237	1,296	1,377	1,568	1,695	1,718	1,934
	보험세수 비중	5.3	4.0	3.9	2.8	2.5	2.5	2.2
합계	보험세수	5,638	5,405	5,542	5,718	5,943	6,054	6,348
	주세수실적	77,625	83,226	89,411	95,115	98,992	102,113	105,098
	보험세수 비중	7.3	6.5	6.2	6.0	6.0	5.9	6.0

주: 1) 보험세수는 응급 및 소방서비스세, 제3자에 대한 보험세, 기타 보험세로 구성됨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Tables 1-10, Taxation Revenue, Australia," 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government/taxation-revenue-australia/latest-release, 검색일자: 2020. 6. 10.

[그림 Ⅳ-7] 호주 주정부별 보험세수 비중 비교(2018~2019년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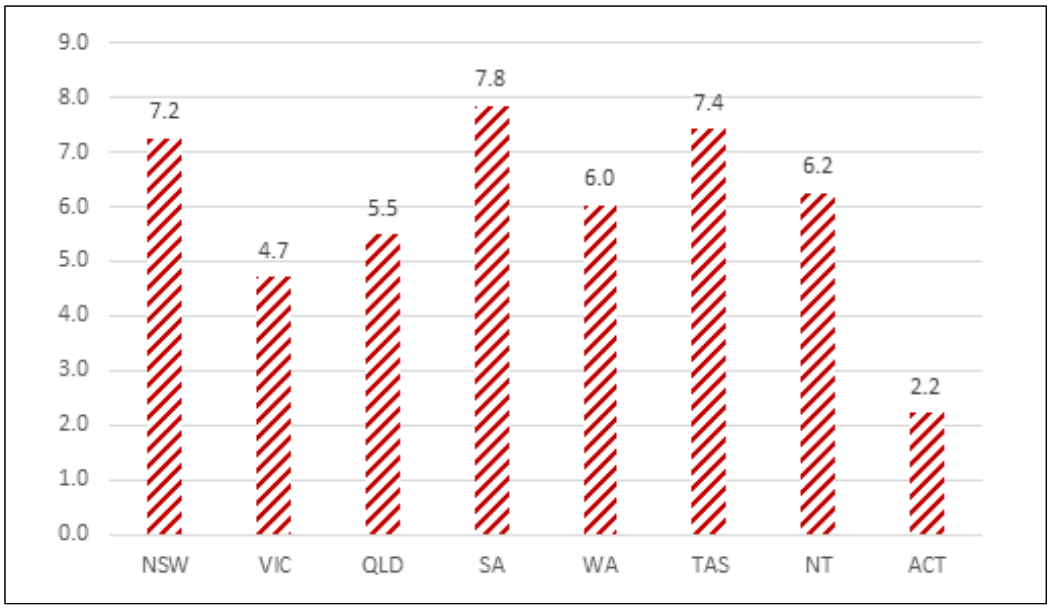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Tables 1-10, Taxation Revenue, Australia", 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government/taxation-revenue-australia/latest-release, 검색일자: 2020. 6. 10.

5. 미국

가. 부가가치세

□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대신 각 주(states)정부별로 판매 및 사용세(sales and use taxes)를 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음[198]

○ 판매 및 사용세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특정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종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함[199]

198) 미국 조세재단, "State and Local Sales Tax Rates, 2020", HYPERLINK "https//taxfoundation.org/2020-sales-taxes/https://taxfoundation.org/2020-sales-taxes/," 검색일자: 2020. 8. 25.

- 판매세는 일반적으로 유형 재화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과되지만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는 전문서비스 등에 대하여도 판매세를 적용하기도 함[200]

○ 2020년 기준으로 45개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the District of Columbia)에서 판매 및 사용세를 운용하고 있음

- 또한 주 수준의 판매 및 사용세 이외에도 38개 주에서 지역판매세(local sales tax)를 징수함

○ 주 및 지역판매세를 합친 평균세율이 가장 높은 5개 주는 테네시(9.53%), 루이지애나(9.52%), 아칸소(9.47%), 워싱턴(9.21%), 앨라배마(9.22%)임

□ 텍사스주에서는 보험 관련 용역에 대하여 판매 및 사용세를 부과하고 있음[201]

○ (납세의무자) 보험 관련 용역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음

- 독립손해사정인(independent insurance adjustor)
- 보험심사인(inspector)
- 보험계리인(actuarial analyst)
- 보험감정인(appraiser)
- 보험조사인(investigator)
- 클레임 처리인(claims processor)
- 손실방지 컨설턴트(loss prevention consultant)

○ (세율) 판매 및 사용세 세율은 6.25%이며, 지역별로 2%까지 추가해 최대 8.25% 부과할 수 있음

○ (과세대상) 과세대상 보험 관련 용역은 다음과 같음

- 클레임 조정 및 처리(Claims Adjustment or Processing)
- 위험 또는 재산가치 관련 평가(Inspections)
- 보험 손해 및 손실 평가용역(Insurance Damage and Loss Appraisals)

---

199) 서진욱 외, 『미국에서 사업하기: 창업, 세금, 법률가이드』, 국세청·뉴욕총영사관, 2012, p. 235.
200)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편(Ⅰ)-』, 한국조세제정연구원, 2019, p. 69.
201) 텍사스주 감사원, "Taxes," https://comptroller.texas.gov/taxes/publications/94-110.php, 검색일자: 2020. 8. 25.

- 보험조사용역(Investigations)
- 보험계리용역(Actuarial Analysis or Research)
- 보험손실방지용역(Insurance Loss Prevention Service)

나.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1) 개요

□ 미국의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는 보험세(Insurance Premium Taxes, IPTs)를 부과하고 있음

○ 보험회사가 징수한 보험료는 19세기 중반부터 미국에서 주정부 과세대상이 되어 왔음

- 최초의 보험세는 1836년 뉴욕주에서 처음 도입되었음

○ 또한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보험사의 세부담을 동일하게 할 목적으로 보복(retaliatory) 조항을 두어 보험세를 부과하고 있음

□ 보험세 과세체계는 크게 과세대상 보험료, 세율, 비과세 및 공제, 세액공제로 구분되며, 주정부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음

□ (과세표준) 보험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보험료에서 일반적으로 각종 수수료(fee), 부과금(charge) 등의 대가를 포함한 총보험료에서 보험계약의 취소로 인한 반환보험료(return premiums), 재보험료(reinsurance premiums),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함

○ 즉 보험계약의 초기 해약, 초과 납입, 오류, 보상범위의 축소 등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반환(returned or credited)되는 금액을 차감함

○ 다만 일부 주에서는 보험료가 아닌 과세표준에 대하여 보험세를 부과함

- 오리건주에서는 보험료(premium)가 아닌 순소득(net income)에 대하여 보험소비세(Insurance Excise Tax)를 부과함[202)]

□ (세율) 보험세는 일반적으로 보험유형 및 판매채널 등에 따라 주정부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함(〈표 Ⅳ-14〉 참조)

○ 상해 및 건강보험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0.4~4.265%를 적용하고 있음

- 세율이 가장 낮은 주는 0.4%인 일리노이주이며, 하와이주가 4.265%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함
- 유타주에서는 HMOs, 비영리 의료서비스법인 등 관련 건강보험(health care insurance)에 대하여는 보험세를 부과하지 않음

○ 생명보험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0.5~3.5%를 적용하고 있음

- 세율이 가장 낮은 주는 0.5%인 일리노이주이며, 네바다주가 3.5%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함

○ 대다수의 주에서는 연금보험은 저축상품과 동일하므로 과세하지 않음

- 다만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네바다주 등 7개주에서는 연금보험에 대한 보험세를 부과하고 있음
- 세율은 0.04~3.5%를 적용하고 있음
- 다만 연금보험에 대하여 보험세를 부과하는 대다수의 주에서도 적격연금(예: IRA, 401k, 403b)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손해보험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0.5~4.265%를 적용하고 있음

- 세율이 가장 낮은 주는 0.5%인 일리노이주이며, 하와이주가 4.265%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함

○ 서플라스 라인(surplus lines)[203]에 대하여는 주정부별로 1~6%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세율이 가장 낮은 주는 1%인 아이오와주이며, 앨라배마주, 캔자스주 등이 6%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함

---

202) 오리건주정부, "2019 Form OR-20-INS," https://www.oregon.gov/dor/forms/FormsPubs/form-or-20-ins_102-129_2019.pdf, 검색일자: 2020. 8. 28.

203) 서플러스 라인 보험회사란 규제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들이 인수하지 않는 리스크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보험회사를 의미함(경쟁도평가위원회, 『보험업 경쟁도 평가』, 보험연구원, 2018, p. 79)

〈표 Ⅳ-14〉 미국 주정부별·유형별 기본 보험세율[1)2)]

(단위: %)

주(State)	상해·건강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서플라스 라인	비고
Alabama	1.6	2.3	3.6	6.0	
Alaska	2.7	-10만달러 이하: 2.7 -10만달러 초과: 0.08	2.7	2.7+1(신고수수료)	
Arizona	1.8	1.8	1.8	3.0	-자동차보험: 0.4312% 추가 -ICA 납부하는 WC[4)]: 2.75
Arkansas	2.5	2.5	2.5	4.0	-AWCC 납부하는 WC: 최대 3
California	2.35	2.35	2.35	3.0	-2016.7.1.~2019.6.30.: 건강보험 0
Colorado	2.0	2.0	2.0	3.0	
Connecticut	1.5	1.5	1.5	4.0	
Delaware	2.0	2.0	2.0	3.0	
District of Columbia	2.0	1.7	1.7	2.0	
Florida	1.75	1.75	1.75	5+0.3(서비스수수료)	
Georgia	2.25	2.25	2.25	4.0	
Hawaii	4.265	2.75	4.265	4.68	
Idaho	1.5	1.5	1.5	1.5	
Illinois	0.4	0.5	0.5	3.5+1(소방세)	
Indiana	1.3	1.3	1.3	2.5	
Iowa	1.0	1.0	1.0	1.0	
Kansas	2.0	2.0	2.0	6.0	
Kentucky	2.0	1.5	2.0	3.0	

〈표 Ⅳ-14〉의 계속

주(State)	상해·건강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서플라스 라인	비고
Louisiana	-7천달러 이하: 140달러 -7천달러 초과: 1만달러당 225달러		-6천달러: 185달러 -6천달러 초과 시 1만달러당 300달러	4.85	-HMO: 1만달러당 550달러
Maine	2.0	2.0	2.0	3.0	-장기케어(Long-term Care): 1.0 -단체장애소득: 1.0 -대규모 보험사의 단체장애소득: 2.25
Maryland	2.0	2.0	2.0	3.0	
Massachusetts	2.28	2.0	2.28	4.0	-HMO: 2.28
Michigan	Max(미시건사업세(Michigan Business Tax, MBT),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CIT))			2+0.5(규제수수료)	-종속보험사 미적용 -MBT: 1.25 -CIT: 1.25(적격건강보험은 0.95)
Minnesota	2.0	1.5	2.0	3.0	
Mississippi	3.0	3.0	3.0	4.0	
Missouri	2.0	2.0	2.0	5.0	
Montana	2.75	2.75	2.75	2.75	-WC: 1.0
Nebraska	단체: 0.5	1.0	1.0	3.0 + 소방세	
Nevada	3.5	3.5	3.5	3.5	
New Hampshire	2.0	1.25	1.25	3.0	-최소납입액: 200달러 (생명보험, 손해보험, 화재보험, 권원보험
New Jersey	2.1 (단체: 1.05)	2.1	2.1	5.0	-WC: 추가 0.25 -HMO: 2.0

〈표 Ⅳ-14〉의 계속

주(State)	상해·건강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서플라스 라인	비고
New Mexico	3.003 + 1.0 (총건강보험료)	3.003	3.003	3.003	
New York	1.75	0.7	2.0	3.6	
North Carolina	1.9	1.9	1.9 + 0.74(재산보장계약)	5.0	-WC: 2.5 -HMO: 1.9
North Dakota	1.75	2.0	1.75	1.75	-최소납입액: 200달러 (상해·건강보험, 손해보험, 화재보험, 권원보험)
Ohio	-HIC: 1.0 -HIC 외:1.4	1.4	1.4	5.0	-최소세액(Minimum tax): 250달러
Oklahoma	2.25	2.25	2.25	6.0	
Oregon	-순소득(net income)에 따른 법인소비세(corporate excise tax) 부과			2.0 + 0.3(소방세)	
Pennsylvania	2.0	2.0	2.0	3.0	
Rhode Island	2.0	2.0	2.0	4.0	
South Carolina	1.25	0.75	1.25	6.0	-WC: 2.5
South Dakota	2.5	-10만달러 이하: 2.5 -10만달러 초과: 0.08	2.5	2.5 + 0.5(소방세)	
Tennessee	2.5	1.75	2.5	5.0	-최소세액: 150달러 -HMO: 6.0
Texas	1.75	-45만달러 이하: 0.875달러 -45만달러 초과: 1.75	1.6	4.85	-HMO는 생명보험과 동일

〈표 Ⅳ-14〉의 계속

주(State)	상해·건강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서플라스 라인	비고
Utah	0	-10만달러 이하: 2.25 -10만달러 초과: 0.08	2.25 + 0.01 추가(자동차보험)	4.25	
Vermont	2.0	2.0	2.0	3.0	
Virginia	2.25	2.25	2.25	2.25 + 0.1	
Washington	2.0	2.0	2.0	2.0	-권원보험은 보험료가 아닌 일반법의 적용을 받음
West Virginia	3.0	3.0	3+1(추가) + 0.55(부가금) + 0.5(소방세)	4.0 + 0.55(부가금)	
Wisconsin[3)]	-	-7억 5천만 달러 이하: 3.5 -7억 5천만 달러 초과 : 2.0	-	3.0	
Wyoming	0.75	0.75	0.75	3.0	-HMO: 0.75%

주: 1) 일반적으로 세율은 총보험료(gross premium) 기준이며, 오리건주는 순소득(net income)임
2) 해당 주의 법에 따라 조직된(organized) 보험사 기준임
3) 위스콘신주는 위스콘신법에 따라 조직된 건강 및 상해보험사와 일부 손해보험에 대하여는 총보험료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랜차이즈세(franchise tax) 7.9%를 부과함
4) WC: Workers'Compensation

자료: NAIC, "PREMIUM TAX RATE BY LINE," https://www.naic.org/prod_serv/RET-ZU-19-01.pdf, 검색일자: 2020. 6. 10.

〈표 Ⅳ-15〉 미국 주정부별 연금보험 과세 현황

(단위: %)

주(State)	연금보험	적격연금(IRA, 401k 등)
California	2.35	0.5
Florida	1.0	-
Maine	0.08	0.0
Nevada	3.50	0.0
South Dakota	50만달러 이하: 1.25 50만달러 초과: 0.08	50만달러 이하: 1.25 50만달러 초과: 0.08
West Virginia	1.0	1.0
Wyoming	0.04	0.0

자료: NAIC, "PREMIUM TAXATION OF ANNUITIES," https://www.naic.org/prod_serv/RET-ZU-19-01.pdf, 검색일자: 2020. 6. 10.

□ 특정 유형의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보험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으며, 보험세 계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특정 유형의 보험회사는 공제조합(fraternal benefit society), 손해보험보증협회(Property and Casualty Guaranty Association) 등이 있음

□ 1836년 뉴욕주에서 보험세가 처음 도입된 이후로 보험세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 보험세는 계산, 징수, 관리하기가 용이하므로 행정적 단순성(simplicity)을 추구할 수 있고, 세수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한편 보험사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주에서는 연금보험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어 저축성 요소에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주정부들 가운데 보험 세수규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를 선정하여 보험세 과세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봄

○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의 2019년 기준 보험세수는 각각 약 2,723억달러, 약 2,599억달러로[204] 주 세수실적 대비 보험세 비중은 각각 1.4%, 4.1%임(〈표 Ⅳ-19〉 참조)

2) 과세요건

가) 캘리포니아주[205]

□ 캘리포니아주의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CDI)에 의해 승인받은 인가보험사(admitted insurers)는 보험세(Insurance Tax), 보복세(retaliatory tax), 해상세(Ocean marine tax) 세 가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보험세는 일반적으로 총보험료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임

○ 보복세는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된 보험사에 더 높은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는 다른 주에 설립된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부과될 수 있음

○ 해상세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해상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보험사에 적용됨

□ 보험회사에 대한 과세는 다음의 4개 기관에서 담당하며 공동으로 관리함

○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CDTFA)

○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 BOE)

○ 캘리포니아 보험부(Department of Insurance, CDI)

○ 주정부 감사관실(State Controller Office, SCO)

□ 이하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국내 인가보험사(admitted insurers)의 보험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 및 정리함

□ (납세의무자) 보험세(Insurance Tax)는 일반적으로 보험료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insurer)는 보험세를 납부할

---

204) 미국 보험정보원, "Premium Taxes By State, Property/Casualty, Life/Annuity and Health Insurers, 2019," https://www.iii.org/table-archive/20447, 검색일자, 2020. 8. 26.

205) NAIC, *RETALIATION GUIDE*, CAI-16, 2019, pp. 65~80.

의무가 있음

○ 보험사(insurer)의 유형은 손해보험회사, 상해 및 건강보험을 포함한 생명보험회사, 권원보험회사, 서플러스 라인 브로커(Surplus Line Brokers) 등이 있음

- 개인(persons), 파트너십(partnerships), 협회(joint stock associations), 기업(companies and corporations)을 포함함

□ (과세대상) 보험세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자와 캘리포니아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보험료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다음의 보험 유형에 대하여 과세하며 연금보험을 포함함

○ 상해 및 건강보험(Accident and Health insurance)

○ 생명보험(Life insurance)

○ 연금보험(Annuity)

○ 손해보험(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 화재보험(Fire insurance)

○ 권원보험(Title insurance)

○ 해상보험(ocean marine insurance)

□ (과세표준) 해상보험과 권원보험을 제외한 보험세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매년 해당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당해 연도에 수령한(received) 총 보험료에서 반환보험료(return premiums)를 차감한 금액임

○ 할부수수료(Installment Fees),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서비스 부과금 등은 가산함

○ 총보험료(Gross premiums)에는 재보험(reinsurance)과 해상보험(ocean marine insurance)으로 받은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음

□ 권원보험사(title insurer)의 과세표준은 이자 및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투자자산 매각이익 및 투자소득을 제외한 캘리포니아에서 수행한 사업으로 인한 모든 소득이며, 해상보험의 과세표준은 보험영업이익(underwriting profit)임

□ (세율) 보험세 연간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적으로 2.35%임[206)207)]

○ 적격연금(Qualified annuity)에 대하여는 0.5%[208)]의 세율이 적용됨

- 적격연금이란 연방 적격퇴직연금(federal qualified retirement plans)을 말함

○ 또한 상해 및 건강보험(Accident and Health)은 2.35%의 세율이 적용되나, 2016년 7월 1일 이후 및 2019년 6월 30일까지 받은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에 대한 보험료는 0%의 세율을 적용함

○ 보험 판매채널 중 서플러스 라인(surplus lines)과 독립대리점(independently procured insurance)에 대하여는 3%의 세율을 적용함

□ (면제 및 세액공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제(fraternals)에 대하여는 비과세(exclusions)하며,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credits)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저소득주택세액공제(Low-Income Housing Tax Credit)

○ 대학진학 지원 세액공제(Collage Access Tax Credit)

○ 파일럿 프로젝트 보험 세액공제 (Pilot Project Insurance Tax Credit)

□ (신고 및 납부기한) 보험세 신고기한은 매년 4월 1일임

○ 직전 연도 납부한 보험세가 2만달러 이상인 경우 당해 연도 4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에 직전 연도 세금의 25%를 예납함

나) 텍사스주[209)210)]

□ 텍사스주에서는 보험업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보험세(Insurance Premium Taxes),

206) 1982~1985년에는 2.33%를 적용하였음

207) 해상보험은 보험영업이익(underwriting profit)의 5%를 적용함

208) **연금에 대한 연도별 세율**

(단위: %)

연도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1968	1969년 이후
세율	2.15	1.95	1.75	1.55	1.35	1.0	0.5

자료: 미국 캘리포니아주, 「보험세법(Tax on Insurers Law)」 제12202조

209) 텍사스주 감사원, “Taxes,” https://comptroller.texas.gov/taxes/insurance/, 검색일자: 2020. 8. 14.

210) NAIC, 2019, TX1-23, pp. 491~513.

보험유지세(Insurance Maintenance Taxes), 보복세(Retaliatory Tax)를 부과함

○ 보험유지세는 텍사스 보험국(Texas Department of Insurance)에서 인가를 받은 보험사의 사업 분야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음[211][212]

○ 보복세는 텍사스 보험국에서 인가를 받은 외국보험사(Foreign and alien insurers)[213]가 부담함

- 보험사가 설립되어 있는 다른 주정부에서 동일한 보험료에 대하여 부담하는 총세금(aggregate taxes), 수수료, 부담금이 텍사스주의 총부담액을 초과할 경우, 텍사스주는 그 차이와 동일한 금액을 보복세로 부과함[214]

○ 징수기관은 Tesxas Comptroller임

□ 이하에서는 텍사스주의 국내 인가보험사(admitted insurers)의 보험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 및 정리함

□ (납세의무자) 텍사스주에서 보험세는 보험료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텍사스주의 보험세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음

○ 텍사스 보험국에서 인가를 받은 모든 보험사 및 건강유지기구(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HMO)는 보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이 외에도 인가받은 종속보험사(licensed Captive Insurers), 서플라스 라인(surplus lines insurer), 독립대리점(Independently Procured),[215] 미인가보험사(unauthorized insurance company)는 보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211) 텍사스주 감사원, "INSURANCE MAINTENANCE TAXES FOR THE TEXAS DEPARTMENT OF INSURANCE," https://comptroller.texas.gov/taxes/insurance/tdi.php, 검색일자: 2020. 8. 14.

212) 인가받은 보험사 등이 산재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coverage)을 발행한 경우에도 보험유지세를 부담함

213) 미국 내에 있는 텍사스 이외의 주 또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함

214) 텍사스주 감사원, "RETALIATORY TAX," https://comptroller.texas.gov/taxes/insurance/ret-tax.php, 검색일자: 2020. 8. 14.

215) 비인가 보험사로부터 피보험자가 직접 가입하는 보험임

□ (과세대상) 텍사스주에서는 주로 다음의 보험유형에 대하여 보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금보험(Annuity)은 비과세됨

○ 상해 및 건강보험(Health and Accident insurance)

○ 생명보험(Life insurance)

- 연금보험(Annuity)은 과세되지 않음

○ 손해보험(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 화재보험(Fire insurance)

○ 권원보험(Title insurance)

○ 상호보험(Reciprocal or interinsurance exchanges)

○ 해상보험(Marine insurance)

□ (과세표준) 생명보험 및 HMO, 상해 및 건강보험, 손해보험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총보험료(gross direct written premiums)에서 비과세 보험료(non-taxable insurance premiums)를 차감한 과세대상 보험료임

○ 총보험료에는 일반적으로 보험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대가를 포함함

○ 취소된 계약으로 인한 반환보험료, 배당금 등 비과세 보험료와 재보험료는 총보험료에서 차감함

- HMO와 권원보험사는 재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음

○ 비과세 보험료는 다음과 같음

- 생명보험사, HMO, 상해 및 건강보험사의 종업원복지급부(employee benefit plans)
-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단체건강보험(Texas 65 Health Insurance Plans)
- 어린이 건강급여(Childrenn's health benefit plans) 등

□ (세율) 보험세 세율은 보험유형(insurance type) 및 판매채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표 Ⅳ-16〉 참조)[216][217]

---

216) 텍사스주 감사원 매뉴얼사이트, "Revenue Object 3201 – Insurance Premium Taxes – Insur

○ 상해 및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세율은 1.75%임

○ 생명보험사와 HMO에 의해 징수된 총보험료의 45만달러까지는 0.875%의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한 세율은 1.75%임

○ 손해보험에 대한 세율은 1.6%임

○ 이 외에 권원보험은 1.35%이며, 서플러스 라인 등에 대하여는 4.85%의 세율을 적용함

〈표 Ⅳ-16〉 미국 텍사스주의 보험유형별 적용 세율(2020년 기준)

(단위: %)

유형	세율
상해 및 건강보험	1.75
생명보험 및 HMO	- 45만달러 이하: 0.875 - 45만달러 초과: 1.75
연금보험	0.0
손해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1.6
권원보험	1.35
서플러스 라인 및 독립대리점	4.85

자료: 본문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면제 및 세액공제) 다음과 같은 특정한 유형의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보험세가 면제(exemption)됨

○ 공제조합(fraternal benefit society)

○ 농장상호보험회사(farm mutual insurance company)

○ 상호협회(mutual assessment association)

○ 지역공제협회(local mutual aid association) 등

---

ance Companies," HYPERLINK, https//fmcpa.cpa.state.tx.us/fiscalmoa/rev.jsp\?id=18729, 검색일자: 2020. 8. 17.

217) 이 외에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음
- 서플러스 라인보험(surplus lines insurance): 4.85%
- 독립적으로 조달된 보험(Independently Procured Insurance): 4.85%
- 비인가보험(Unauthorized Insurance): 4.85%
- 권원보험(Title insurers): 1.35%
- 상호보험(Reciprocal or Interinsurance exchanges): 1.7%

□ 보험세 계산 시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조사비용(Expenses of examinations)

○ 투자세액공제(Assessment and Investment in Certified Capital Company credits)

○ 적격 역사적 건축물 복원에 대한 세액공제(Historic Structure Credit) 등

□ (신고 및 납부기한) 보험사는 직전 연도(the previous calendar year)에 대한 보험세를 매년 3월 1일까지 신고하여야 함[218]

○ 직전연도 납부한 보험세가 1천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반기마다 직전 연도 총 납부세액의 50% 또는 당해 연도 추정납부세액의 50% 중 적은 금액을 미리 납부(prepayment)하여야 함

- 예납기한은 3월 1일과 8월 1일임

〈표 Ⅳ-17〉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의 보험세 비교

항목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납세의무자	일반적으로 보험사(insurer)	일반적으로 보험사(insurer)
과세대상 보험	건강·상해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손해보험, 화재보험, 권원보험, 해상보험	건강·상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화재보험, 권원보험, 해상보험
과세표준	- 수수료, 부과금 포함 - 총보험료에서 수수료 등을 포함하고 반환보험료, 배당금, 재보험료 차감	- 수수료, 부과금 포함 - 총보험료에서 수수료 등을 포함하고 반환보험료, 배당금, 재보험료[2] 차감
세율	0%, 0.5%, 2.35%, 3%, 5%[1]	0%, 1.35%, 16%, 175%[3], 4.85%
면제	공제조합 등	공제조합 등
세액공제	- Low-Income Housing Tax Credit - Collage Access Tax Credit 등	- Expenses of examinations - Historic Structure Credit 등
신고기한	매년 4월 1일	매년 3월 1일
중간예납	분기별 (4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	반기별 (3월 1일, 8월 1일)
보험세 비중 (2019년 기준)	1.4%	4.1%

주: 1) 해상보험은 보험영업이익(underwriting profit)의 5% 적용
2) HMO와 권원보험사는 재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음
3) 생명보험사와 HMO: 45만달러까지는 0.875%, 45만달러 초과 시 1.75%

자료: 본문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18) 텍사스주 감사원, "INSURANCE PREMIUM TAX(LICENSED INSURERS)," https://comptroller.texas.gov/taxes/insurance/faq.php, 검색일자: 2020. 8. 14.

3) 세수 현황

□ 보험세는 2019년 기준 주정부 세수실적에서 약 2.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세수 비중은 연도별로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남

○ 보험세 세수규모는 20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약 158억달러에서 2019년에는 약 236억달러로 48.8% 증가하였음

〈표 Ⅳ-18〉 미국 주정부 세수실적 대비 보험세 비중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세수실적	전년 대비	보험세	전년 대비	비중
2010	705,929	-	15,828	-	2.24
2011	761,837	7.9	16,439	3.9	2.16
2012	796,918	4.6	16,641	1.2	2.09
2013	855,384	7.3	17,411	4.6	2.04
2014	874,957	2.3	18,159	4.3	2.08
2015	918,540	5.0	19,109	5.2	2.08
2016	930,875	1.3	20,453	7.0	2.20
2017	957,498	2.9	21,008	2.7	2.19
2018	1,035,044	8.1	22,508	7.1	2.17
2019	1,090,242	5.3	23,556	4.7	2.16

자료: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9 Annual Survey of State Government Tax Collections by Detailed Table,” https://www.census.gov/data/tables/2019/econ/stc/2019-annual.html, 검색일자: 2020. 7. 7.

□ 주정부별로 세수실적 대비 보험세 비중은 0.6~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세 비중이 가장 낮은 주는 0.6%인 오리건주이며, 가장 높은 주는 7.7%를 차지한 루이지애나주임

〈표 Ⅳ-19〉 미국 주정부별 세수실적 대비 보험세 비중(2019년 기준)

(단위: 백만미국달러, %)

주(State)	세수실적	보험세	비중[1)]	주(State)	세수실적	보험세	비중[1)]
Alabama	11,577	414	3.6	Montana	3,169	108	3.4
Alaska	1,781	80	4.5	Nebraska	5,755	61	1.1
Arizona	18,164	591	3.3	Nevada	9,745	424	4.4
Arkansas	10,218	241	2.4	New Hampshire	2,969	114	3.8
California	188,235	2,723	1.4	New Jersey	38,844	520	1.3
Colorado	15,870	315	2.0	New Mexico	7,428	210	2.8
Connecticut	17,994	170	0.9	New York	91,621	1,866	2.0
Delaware	4,596	113	2.5	North Carolina	29,316	578	2.0
DC	8,679	121	1.4	North Dakota	4,970	69	1.4
Florida	44,800	1,178	2.6	Ohio	30,147	607	2.0
Georgia	24,713	511	2.1	Oklahoma	10,732	336	3.1
Hawaii	8,208	180	2.2	Oregon	13,960	81	0.6
Idaho	4,884	106	2.2	Pennsylvania	43,132	845	2.0
Illinois	42,501	424	1.0	Rhode Island	3,724	117	3.1
Indiana	20,171	256	1.3	South Carolina	11,221	244	2.2
Iowa	10,584	153	1.4	South Dakota	1,940	91	4.7
Kansas	10,030	406	4.0	Tennessee	14,827	995	6.7
Kentucky	12,896	173	1.3	Texas	63,330	2,599	4.1
Louisiana	11,749	901	7.7	Utah	9,968	156	1.6
Maine	4,674	94	2.0	Vermont	3,429	58	1.7
Maryland	23,606	556	2.4	Virginia	26,286	554	2.1
Massachusetts	31,805	445	1.4	Washington	27,992	640	2.3
Michigan	30,270	435	1.4	West Virginia	5,938	129	2.2
Minnesota	28,176	525	1.9	Wisconsin	20,039	217	1.1
Mississippi	8,289	354	4.3	Wyoming	2,111	26	1.2
Missouri	13,181	446	3.4	United States	1,090,242	23,556	2.2

주: 1) 세수실적 대비 보험세 비중임

자료: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9 Annual Survey of State Government Tax Collections by Detailed Table,” https://www.census.gov/data/tables/2019/econ/stc/2019-annual.html, 검색일자: 2020. 7. 7.

Ⅴ. 국제비교와 결론

1. 국제비교

□ 본문에서는 제Ⅲ장과 제Ⅳ장을 바탕으로 보험용역(유형)에 대한 우리나라와 조사국의 소비세 과세제도를 국제비교함

○ 보험용역 관련 소비세는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또는 GST)와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로 구분함

○ 그리고 각 세목별 과세단위를 중앙정부(연방정부) 단위와 주정부 단위로 구분하여 과세 규정을 국제비교함

가. 부가가치세

□ 중앙정부(연방정부) 단계에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GST)를 과세하는 조사국 중에서 호주를 제외한 우리나라, 영국, 독일은 보험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함

○ 우리나라, 영국, 독일은 보험용역에 대해 금융용역과 함께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함

○ 다만 호주는 2000년 7월 1일부터 계약이나 법률상 손실, 손해, 상해, 위험에 대한 보험(재보험)계약 등 특정 손해보험용역에 대해 10% 세율로 GST를 과세함

- 생명보험(재보험 포함), 연금보험, 보증, 제3자 배상책임보험은 GST 면세를 적용하고 민간건강보험, 여행보험, 국제운송물품 관련 보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함

□ 미국은 연방정부 단계에서 운용하는 부가가치세제는 없으며, 주정부 단계에서 운용하는 판매 및 사용세(SUT)는 보험용역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 보험용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역(insurance related service)은 일반적으로 보험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손해사정이나 보험계리와 같은 전문적 용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영국은 시장조사, 상품설계, 광고, 판촉 등의 용역이나 평가 및 검사용역, 손해사정인, 해손청산인, 자동차사정인, 부동산 감정인 등 전문가 용역에 대해서는 20%의 부가가치세 과세함

○ 독일의 경우 보험료 징수 및 영업 또는 업무지원 활동에 대해 19%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보임

○ 호주는 금융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보험계리용역 등 정보 및 자문을 포함한 전문적 용역에 대해 10%의 GST를 과세함

○ 미국 텍사스주는 클레임 조정 및 처리, 위험 또는 재산가치 관련 평가, 보험 손해 및 손실 평가, 보험조사, 보험계리 등 전문적 용역에 대해 6.25%(최대 8.25%)의 SUT를 부과함

〈표 Ⅴ-1〉 조사국별 보험용역에 대한 VAT·GST·SUT 규정

(단위: %)

구분	세목	세율	보험용역 과세 여부	과세대상 보험 관련 용역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10	면세	보험계리용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
영국	부가가치세	20	면세	시장조사, 상품설계, 광고, 판촉 등, 평가·검사, 손해사정, 해손청산, 자동차 사정, 부동산 감정 등 전문적 용역
독일	부가가치세	19	면세	보험료 징수, 영업, 업무지원
호주	GST	10	손해보험에 한해 과세	보험계리용역 등 정보·자문을 포함한 전문적 용역
미국 (텍사스주)	SUT	6.25 (최대 8.25)[1)]	면세 또는 적용배제	클레임 조정·처리, 위험·재산가치 관련 평가, 보험 손해·손실 평가, 보험조사, 보험계리, 손실방지 등 전문적 용역

주: 1) 우리나라, 영국, 독일, 호주의 부가가치세(GST)가 중앙정부(연방정부) 단계에서 부과됨. 미국의 SUT는 주정부 단계에서 부과되며 주정부별 세율이 달리 적용됨

자료: 제Ⅲ장과 제Ⅳ장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정리함

나.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1) 과세요건

□ 중앙정부 또는 연방정부 단위에서 보험(용역) 관련 소비세를 운용하는 조사국은 우리나라, 영국, 독일이 있음

○ 우리나라는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 5‰(1천분의 5)의 세율을 부과하는 교육세와 금전소비대차나 보험증서에 대해 일정 세액을 부과하는 인지세가 있음

- 교육세에서 말하는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등 금액과 수입할인료,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신탁보수, 파생상품 등 순손익과 외환 매매손익, 수입임대료, 고정자산처분익,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등을 포함함
- 인지세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해 기재금액별로 7~35만원 또는 보증보험증권에 대해 200원(통)이 부과됨

○ 영국의 보험세는 과세대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 등이 수령하는 보험 프리미엄(수입보험료 총액)에 대해 12%의 세율을 부과됨
- 특정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보험과 여행보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20%의 세율이 부과됨

○ 독일은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기초로 하여 보험사가 수령하는 모든 유형의 금액(수입보험료 총액)에 대해 19%의 표준세율(또는 3%, 22%)을 부과하는 보험세와 화재 관련 보험에 대해 19%의 표준세율(또는 22%)을 부과하는 소방세를 운용함
- 화재 관련 보험의 경우 과세표준인 수입보험료를 보험세와 소방세 간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세율을 적용함

□ 유럽연합 회원국인 독일과 영국(현재는 탈퇴)의 보험세는 EU의 「2006 VAT 지침」 제401조와 솔벤시(Solvency) Ⅱ의 제157조에 근거로 하여 설계·도입됨

○ 솔벤시 Ⅱ에 따라 보험 유형을 생명보험과 생명보험이 아닌 보험(손해보험과 실손보험 등)으로 구분하는데, 독일과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 대부분은 후자를 보험세 과세대상으로 함

〈표 Ⅴ-2〉 조사국별 보험 관련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과세 현황(중앙정부·연방정부)

구분	과세주체	보험 관련 소비세	과세표준	세율
우리나라	중앙정부	교육세	보험업자의 수익금액[1]	5‰
		인지세	금전소비대차 증서 기재금액	기재금액(5천만원 초과)별 7~35만원
			보증보험증권	200원/1통
영국	중앙정부	보험세	수입보험료[2]	12%(20%)
독일	연방정부	보험세, 소방세	수입보험료[3]	19%(3%, 22%)

주: 1) 우리나라 교육세 과세표준은 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등 수익금액으로 파생상품 등 순손익과 외환 매매손익, 수입임대료, 고정자산처분익,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등을 포함함
2) 영국의 보험세는 과세대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 등이 수령하는 보험 프리미엄을 대상으로 함
3) 독일의 보험세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기초로 하여 보험사가 수령하는 보험 프리미엄, 부담금(contribution), 선급 부담금, 추가지금금 등 모든 유형의 금액을 대상으로 함

자료: 제Ⅲ장과 제Ⅳ장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정리함

□ 주정부 단계에서 보험 관련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를 운영하는 조사국은 호주와 미국이 있음

○ 호주의 각 주정부는 보험유형별(생명보험, 손해보험 등)로 인지세(SD)를 달리 과세함[219]

- 손해보험에 대한 인지세율은 수입보험료(GST 포함)의 5~11%이며,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의 보험금액 구간별로 0.05~0.1%를 적용함[220]
-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는 인지세(SD) 외에도 주 소재 재산의 손실·손상에 대한 보험계약의 보험료에 대해 응급서비스세을 부과함

○ 미국 대부분의 주정부는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세를 부과하며 과세대상 보험,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 등은 보험유형 및 판매채널 등에 따라 주정부별로 달리 규정됨

- 오리건주는 보험료가 아닌 순소득(net income)에 대한 법인소비세(corporate excise tax)를 부과하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해상보험의 경우 보험영업이익(underwriting profit)에 대해 과세함

〈표 Ⅴ-3〉 조사국별 보험 관련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과세 현황(주정부)

구분	과세주체	보험 관련 소비세	과세표준	세율
호주	주정부	인지세	수입보험료, 보험금[2)]	주정부 별 보험유형별 세율
		응급서비스세	수입보험료[1)]	1~80%
미국	주정부	보험세	수입보험료[3)]	주정부별, 보험유형별 세율

주: 1)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는 주 소재 재산의 손실·손상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 화재 및 응급서비스세를 부과함. 응급서비스세의 과세표준인 수입보험료는 GST 및 SD를 제외한 금액임

2) 호주 인지세는 보험유형(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달리 정함. 손해보험은 수입보험료(GST 포함)이고 생명보험 과세표준의 경우 남호주(SA)주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 증서의 보험금액임

3) 미국 오리건주는 순소득(net income)에 대한 법인소비세(corporate excise tax)를 부과하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해상보험에 대하여 보험영업이익(underwriting profit)에 부과함

자료: 제Ⅲ장과 제Ⅳ장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정리함

219) 호주 수도테리토리(ACT)에서는 현재 인지세를 운용하지 않음

220) 다만 남호주(SA)의 경우 생명보험에 대한 인지세는 보험료에 대해 부과됨

2) 납세의무자

□ 중앙정부(연방정부) 단위에서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를 부과하는 우리나라(교육세), 영국(보험세), 독일(보험세)의 납세의무자를 살펴봄

○ 우리나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외국보험사임

○ 영국 보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사에 있으며, 보험사의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특정 상황에 한해 피보험자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됨

○ 독일 보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이지만 납부의무자인 보험사가 보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함

□ 주정부 단위에서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를 부과하는 호주와 미국의 소비세 납세의무자를 살펴봄

○ 호주 인지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보험브로커, 보험대리인이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의 응급서비스세는 일반적으로 보험사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함

○ 미국 보험세는 일반적으로 보험세의 납세의무를 보험사에게 부과함

- 개인(persons), 파트너십(partnerships), 협회(joint stock associations), 기업(companies and corporations)을 포함함

3) 면세대상 보험유형

□ 중앙정부 또는 연방정부 단위에서 보험세를 운용하는 영국과 독일은 생명보험이나 재보험 등 특정 보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험세를 면세함

○ 우리나라는 보험 유형과 관련 없이 모든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대상으로 교육세를 과세함

- 다만 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

는 수익금액은 교육세가 비과세됨

○ 영국과 독일 모두 유럽연합 솔벤시 Ⅱ에 따른 생명보험에 대해 보험세를 면세하며, 생명보험이 아닌 보험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면세하는 경우가 있음

- 영국은 생명보험 외 해외에 소재한 위험을 대상으로 한 보험, 국제 운송 관련 보험, 수출금융 관련 보험, 장애인용 자동차 관련 보험, 우주선 등에 대해서는 보험세 면세를 적용함
- 독일은 생명보험 외 재보험, 공법에 따른 특정 보험, 생존·질병·요양간호부양·직업능력상실·소득감소·노령·사망에 대해 수령권한을 제공한 보험(상해보험, 책임보험, 기타 손해보험 제외), 단체임금협약 관련 기금, 「보험법」에 따른 공동계약, 국제운송재화와 관련된 운송, 전쟁위험, 손해보험 등에 대해서는 보험세 면세를 적용함

〈표 Ⅴ-4〉 조사국별 부가가치세 외 보험 관련 소비세 면세 대상 현황(중앙정부·연방정부)

구분	부가가치세 외 보험 관련 소비세 면세 대상 보험
우리나라[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1)]
영국[2)]	생명보험, 국외 소재 위험, 국제운송, 수출금융, 장애인용 자동차, 우주선
독일[2)]	생명보험, 재보험, 공법에 따른 보험, 국제운송, 전쟁보험 등

주: 1) 우리나라는 보험 유형과 관련 없이 모든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 과세됨. 다만 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비과세함
2) 영국과 독일은 공통적으로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세를 면세하며, 기타 정책목적에 따라 면세대상을 규정함

자료: 제Ⅲ장과 제Ⅳ장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정리함

□ 주정부 단위에서 소비세를 운용하는 호주와 미국의 경우에 주정부별로 과세 및 면세 대상 보험유형을 달리 정함

○ 인지세를 운용하는 호주 주정부는 재보험과 민간건강보험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지세를 면세하며, 그 외 보험에 대한 주정부별 면세규정은 다음과 같음

- 연금보험: 퀸즈랜드와 태즈매니아 주정부를 제외한 모든 호주 주정부는 연금보

험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음

- 생명보험: 빅토리아, 서호주, 노던테리토리 지방정부는 생명보험에 대해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태즈매니아 주정부는 총보험금(sum insured)이 200호주달러 이하인 생명보험은 인지세를 비과세하는 과세최저한을 둠
- 산재보험: 퀸즈랜드를 제외한 모든 주정부에서는 산재보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

○ 미국 주정부 대부분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 및 건강보험에 대해 보험세를 부과하지만, 연금보험 또는 법정적격연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함

-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메인주, 네바다주, 사우스다코타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와이오밍주의 7개 주정부는 연금보험에 대해 보험세를 과세하지만, 법정적격연금에 대해서는 경감세율 또는 비과세를 적용함
- 유타주는 건강유지기구(HMOs)나 비영리 의료서비스법인 등 관련 건강보험에 대해 보험세를 부과하지 않음

〈표 Ⅴ-5〉 조사국별 부가가치세 외 보험 관련 소비세 면세 대상 현황(주정부)

구분	부가가치세 외 보험 관련 소비세 면세 대상 보험
호주	재보험과 민간건강보험(공통), 연금보험(퀸즈랜드와 태즈매니아 제외), 생명보험(빅토리아, 서호주, 노던테리토리), 산재보험(퀸즈랜드 제외)
미국	연금보험 또는 법정적격연금[1)2)]

주: 1)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메인주, 네바다주, 사우스다코타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와이오밍주는 연금보험에 대해 보험세를 과세함. 다만 법정적격연금에 대해서는 경감세율 또는 비과세함

2) 유타주는 연금보험 외 건강유지기구(HMOs), 비영리 의료서비스법인 등 관련 건강(health care)보험에 대해 보험세를 부과하지 않음

자료: 제Ⅲ장과 제Ⅳ장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정리함

다. 보험시장과 보험 관련 소비세 세수 현황

□ 보험업의 총보험료, 보험침투도, 보험밀도를 중심으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와 조사국의 보험시장(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현황을 비교함[221]

○ 총보험료 기준으로 조사국의 세계 보험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28.4%), 영국(6.5%), 독일(4.7%), 우리나라(3.5%), 호주(1.5%)의 순으로 나타남

- 총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국가 내에서의 생명보험 시장과 손해보험 시장의 우열을 가리자면 영국과 우리나라는 생명보험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고, 미국, 독일, 호주는 손해보험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음

○ 보험침투도 기준의 경우, 우리나라(11.16%), 영국(10.61%), 미국(7.14%), 독일(6.03%), 호주(5.58%)의 순서로 높음

- 다시 생명보험 시장의 경우 영국(8.32%), 우리나라(6.12%), 미국(2.88%), 독일(2.41%), 호주(2.13%)의 순으로 높고
- 손해보험 시장(non-life)의 보험침투도를 살펴보면, 한국(5.05%), 미국(4.32%), 독일(3.62%), 호주(3.46%), 영국(2.29%)의 순서임

○ 보험밀도 기준으로 조사국의 보험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영국(4,503달러), 미국(4,481달러), 우리나라(3,465달러), 호주(3,160달러), 독일(2,908달러)의 순서임

- 생명보험 시장의 보험밀도는 영국(3,532달러), 우리나라(1,898달러), 미국(1,810달러), 호주(1,203달러), 독일(1,161달러)의 순서이고
- 손해보험 시장의 보험밀도는 미국(2,672달러), 호주(1,957달러), 독일(1,747달러), 우리나라(1,567달러), 영국(971달러)의 순서임

□ 독일, 호주, 미국의 경우 2018년 현재 손해보험 시장의 규모가 생명보험시장의 그것보다 큰 반면, 우리나라와 영국은 생명보험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21) 세계 보험시장 총보험료, 보험침투도, 보험밀도에 대한 정보는 Swiss Re Institute, 2019, pp. 36~43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함

〈표 Ⅴ-6〉 조사국별 보험시장 현황(2018년 기준)

(단위: 백만달러, %, 달러)

구분	총보험료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총보험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총보험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리나라	179,024	11.16	6.12	5.05	3,465	1,898	1,567
영국	336,510	10.61	8.32	2.29	4,503	3,532	971
독일	241,485	6.03	2.41	3.62	2,908	1,161	1,747
호주	79,098	5.58	2.13	3.46	3,160	1,203	1,957
미국	1,469,375	7.14	2.88	4.32	4,481	1,810	2,672

자료: 제Ⅱ장과 Swiss Re Institute, 2019, pp. 36~43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정리함

□ 보험 관련 부가가치세나 GST의 세수 현황을 조사국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용역에 대해 GST를 과세하는 호주의 경우 총 GST 세수 중 건강 및 손해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2017~2018년 기준)은 약 2.6%임[222)]

○ 우리나라, 영국, 독일, 미국의 경우 보험용역 대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면세함

□ 부가가치세 외 보험 소비세의 조사국별 세수기여도를 살펴보면 주정부 단위에서 운용하는 호주와 연방정부 단위에서 보험세와 소방세를 운영하는 독일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그림 Ⅴ-1] 참조)

○ 호주와 독일은 전체 세수 중에서 보험세 등이 차지하는 3개년 평균 세수기여도가 각각 1.36%와 1.13%로, 다른 조사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줌

- 특히 호주는 GST 세수까지 모두 고려하면 1.62%의 세수기여도를 보여줌

○ 영국의 세수기여도는 2015년 0.54%에서 2017년 0.83%로 매년 꾸준한 상승세

222) 2017~2018년 납부세액 기준 GST 총징수액 634만 5,400만호주달러에서 건강 및 손해보험업 16만 4,900만호주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임(〈표 Ⅳ-10〉과 〈표 Ⅳ-11〉) 참조). 호주 GST는 전체 세수중 15.6%의 비중을 차지함

를 보이고 있으며 3개년 평균 0.71임

○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3개년에 대한 세수기여도가 0.23%로 조사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관찰됨

[그림 Ⅴ-8] 조사국별 부가가치세 외 보험 관련 소비세 세수기여도 현황(2015~2017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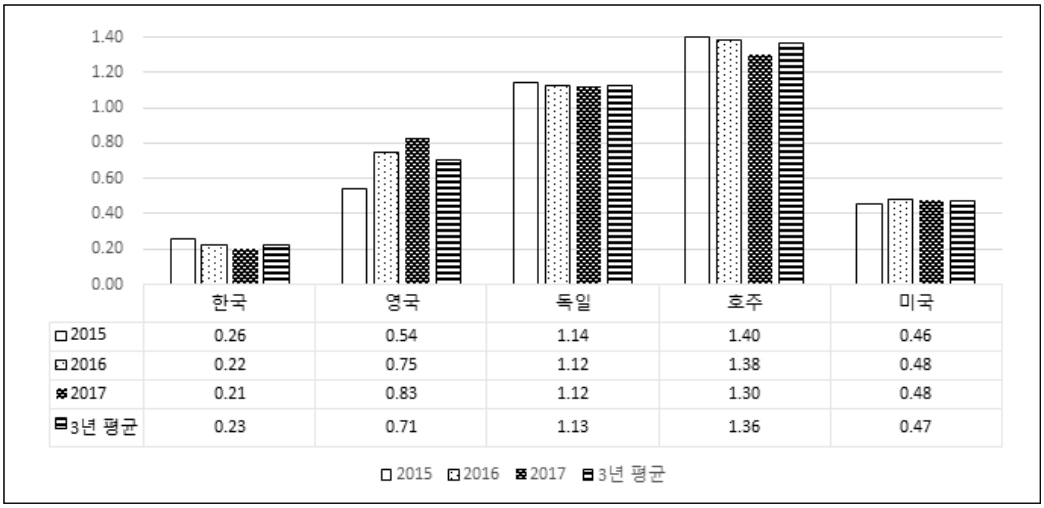

	한국	영국	독일	호주	미국
2015	0.26	0.54	1.14	1.40	0.46
2016	0.22	0.75	1.12	1.38	0.48
2017	0.21	0.83	1.12	1.30	0.48
3년 평균	0.23	0.71	1.13	1.36	0.47

주: 1. 부가가치세 외 보험 관련 소비세는 한국은 교육세, 영국은 보험세, 독일은 보험세와 소방세, 호주는 인지세와 응급 및 소방서비스세, 미국은 보험세를 반영함
2. 한국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된 교육세이고, 한국 인지세는 반영하지 않음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 검색일자: 2020. 8. 31.; 호주 보험세(SD)의 경우 호주 통계청, "Taxation Revenue,"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mf/5506.0, 검색일자: 2020. 8. 31.

2. 결론

□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한 대부분 국가는 조세행정과 관련된 이유로 인해 금융용역과 함께 보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223]

223) 금융 및 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 간에는 찬반 논의가 존재

○ 비록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데 「EU 2006 VAT 지침」 제137조 (1항) (a)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의 적용 채택이나 호주의 특정 손해보험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제를 그 예로 둘 수 있음

□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보험용역을 대상으로 조세행정 실무상 용이한 방식으로 소비세제를 운용하는데, 이는 안정된 세원으로서 보험용역의 가치를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판단됨

○ 특히 보험세는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으로 인한 업종 간 조세공평성 확립과 세수 확보를 위해 도입된 이후, 안정적인 과세기반을 바탕으로 재정수입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관찰됨

□ 보험용역에 대한 소비세라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는 조사국 사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세수기여도를 보여주고 있음

□ 부가가치세와 교육세가 도입된 초기보다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함에 따라 보험용역의 세수기여도를 제고할 여지가 있음

□ 국제비교를 통한 제고 방안은 보험용역에 대한 명시적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생명보험이 아닌 보험(non-life insurance)'을 대상으로 현행 교육세 얼개 내에서 과세표준이나 세율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과 유럽형 보험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음

□ 전자는 '생명보험이 아닌 보험'을 대상으로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수익금

하지만, 최근까지 그 방향성이 명확히 정해진 바 없음. 보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실무에 대한 찬반 논의에 대한 상세는 김무열(「유럽연합의 보험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KIPF 조세재정 브리프』, 제82호, 2019, p. 4)과 박명호·홍범교·김승래(『금융·보험 및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pp. 104~114) 참조할 것

액이 아닌 수입보험료(turnover)로 조정하거나, 보험용역의 부가가치로 볼 수 있는 보험료 수익[224]에 대해 현행 부가가치세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임

○ 다만 우리나라 교육세는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 여러 세원의 부가세(surtax) 형식으로 운영되는 목적세이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역시 그 얼개 내에서 운영되므로 보험용역만을 대상으로 세수기여도를 제고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보험용역에 대한 소비세로 구분했지만 현행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는 보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대신 부과되는 소비세로만 보기에는 소득과세의 특징[225]이 관찰되므로 위와 같은 방안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 후자는 '생명보험이 아닌 보험'을 영위하는 보험업자를 교육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새로운 유럽형 보험세 형태의 새로운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임[226]

○ 과세표준 산출방식의 단순화를 통한 납세협력의무의 경감과 함께 세수기여도 수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또 다른 방안으로 보험용역에 대한 전면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시장 중립성과 과세 간소화의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체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227]

---

224) 여기서 보험료수익은 호주 사례에서와 유사하게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을 차감한 것을 의미함

225) 보험료 수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가액은 제외하여 보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대신 부과되는 세금처럼 보이지만 투자나 재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 역시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 소득과세로도 볼 수 있음

22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은 16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보유보험료 및 원수보험료를 과세표준으로 현행 교육세 세율인 0.5%를 적용할 때 예상되는 세수규모는 2019년 기준 각각 4,030억원, 4,160억원임

227) 특정 손해보험용역에 대해 GST를 과세하는 호주의 경우 기존 지방정부의 금융과 보험에 대한 간접세 일부가 GST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조세저항이 대체로 원만했을 것이고, 호주 보험시장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측면과 같은 역사적 배경이나 보험시장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면 보험용역에 대한 소비세 과세를 위한 벤치마킹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원형을 설계한 유럽연합(EU)은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을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이 높지 않음[228)]

○ 보험업과 금융업이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장 중립성과 과세 간소화의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임

228) EC, 2019; 박명호·홍범교·김승래, 2008, pp. 132~133.

참고문헌

경쟁도평가위원회, 『보험업 경쟁도 평가』, 보험연구원, 2018.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보도자료, 2014~2019.

김두철·서병남, 『생명보험 LIFE INSURANCE』, 형설출판사, 2015.

김무열, 「유럽연합의 보험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kipf 조세재정 브리프』, 제82호, 2019.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소비세제도(I)-부가가치세 독일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김학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박정수, 『주요국의 소비세제도(I)-부가가치세 영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박명호·홍범교·김승래, 『금융·보험 및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생명보험협회, 『2020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생명보험협회, 2019.

서진욱 외, 『미국에서 사업하기: 창업, 세금, 법률가이드』, 국세청·뉴욕총영사관, 2012.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 -호주 편-』, 한국조세연구원, 2012.

안종석·박종수, 『교육재정의 구조와 재원확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6.

오병국·김동겸·이경아·왕양비, 『포커스·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2』, 보험연구원, 2013.

이만우·전형준·박기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제7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06, pp.

이상엽·박수진·이은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장연호,「현행 보험권 예금보험료 산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월간손해보험』1월호, 손해보험협회, 2019, pp. 62~71.

조석희,『국제회계기준(IFRS) 하에서의 보험회계』, 신영사. 2015.

최정희,『주요국의 소비세제도(Ⅰ)-부가가치세: 호주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A.J. van Doesum and G-J. van Norden, "Chapter 19: Financial Services in Improving VAT/GST - Designing a Simple and Fraud-Proof Tax System," (M. Lang & I. Lejeune eds., IBFD 2014), Books IBFD(accessed 12 Aug. 2020).(DOI: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vg_c19)

Australian Treasury, *Economic Roundup Spring 2000 - Article 3: GST and insurance*, 2000.12.(DOI: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19-03/4gst.pdf)

European Commission(EC), "Update on the state of play of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and their VAT treatment," Group on the future of VAT, 2019.

_____, "GUIDELINES RESULTING FROM MEETINGSOF THE VAT COMMITTEE Up until 3 November 2020," VAT Committee, 2020.(DOI: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guidelines-vat-committee-meetings_en.pdf)

EY,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20.(DOI: https://www.ey.com/en_gl/tax-guides/worldwide-vat—gst-and-sales-tax-guide-2020)

German Insurance Association(GDV), *Statistical Yearbook of German Insurance 2018*, 2018.

HM Revenue & Customs(HMRC), *Guidance Insurance(VAT Notice 701/36)*, 2019.

NAIC, *RETALIATION GUIDE*, 2019.12.

Mark Chesham, *Insurance Premium Tax a User's Guide*, Spirmus Press Ltd,

2019.

Ron Shanovich, *Taxation of Insurance Companies*, Wisconsin Legislative Fiscal Bureau 2003.

Swiss Re Institute, *sigma: World insurance the great Pivot East Countries No.3/2009*, 2019.

Tom Hivlerkus, "International Insurance Premium Tax: Trends and Recent Developments," *Derivatives & Financial Instruments*, Vol. 17, No. 5, 2015.(DOI: https://www.ibfd.org/sites/ibfd.org/files/content/pdf/dfi_2015_05_int_1.pdf, 2020. 8. 18.)

Insurance Europe, *Indirect Taxation on Insurance Contract in Europe*, 2019.

국세통계, https://stats.nts.go.kr/

통계청, http://kostat.go.kr/

한국 보험개발원, https://www.insis.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

독일 연방국세청, https://www.bzst.de/

독일 재무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

미국 보험정보원, https://www.iii.org/

미국 오리건주정부, https://www.oregon.gov

미국 조세재단, https://taxfoundation.org

미국 캘리포니아주정부, https://www.cdtfa.ca.gov/taxes-and-fees/tax-on-insurers.htm/

미국 텍사스주 감사원, https://comptroller.texas.gov/taxes/insurance/

미국 텍사스주 감사원 메뉴얼사이트, https://fmcpa.cpa.state.tx.us/

미국 통계청, https://www.census.gov/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

유럽연합 법률정보, https://eur-lex.europa.eu/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_en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
호주 남호주주 세입청, https://www.revenuesa.sa.gov.au/
호주 노던테리토리주정부, https://nt.gov.au/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법령사이트, https://legislation.nsw.gov.au/
호주 법령정보시스템, https://www.legislation.gov.au/
호주 빅토리아주 세입청, https://www.sro.vic.gov.au/
호주 사우스웨일즈주 세입청, https://www.revenue.nsw.gov.au/
호주 서호주주 세입청, https://www.wa.gov.au/
호주 수도테리토리 세입청, https://www.revenue.act.gov.au/
호주 재무부, https://treasury.gov.au/
호주 퀸즈랜드주 세입청, https://www.business.qld.gov.au/
호주 태즈매니아주 세입청, https://www.sro.tas.gov.au/
호주 통계청, https://www.abs.gov.au
Airmic 보험협회, http://www.airmic.com
OECD Revenue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세법연구 20-05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 관련 소비세에 대한 연구

발 행 2020년 10월 31일

저 자 김무열·박수진·허윤영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거목정보산업(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ISBN 979-11-6655-005-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